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2
법제
업무
편람



법제처

목차

I.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
1. 개요	2
2. 법률의 입법절차	2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5
II.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7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8
2. 법령안의 입안	9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12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18
5. 입법예고	19
가. 취지 및 연혁	19
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20
다. 입법예고의 기간 및 생략·단축	21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21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25
바. 제출의견의 처리	25
사. 확인 및 점검	26
6. 규제심사	26

III. 법제처의 심사 ————— 29

1. 개관	30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30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30
2. 법령안의 반려	32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32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32
3. 법령안의 철회	33
4. 법령안의 접수·배정	35
5. 법령안의 심사	41
가. 합의심사제	41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44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 요청	46
6. 법령심사안의 결재	47
가. 결재(결재 관련 양식은 붙임 제3호서식 참조)	47
나. 심사경과보고	55
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체계적 관리	56

IV.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 59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60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60
나. 대통령 재가	72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77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79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80
바. 공포	84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86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92
가. 총리령안	92
나. 부령안	92
다. 조약안	93

V. 법률안의 국회심의 ————— 95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97
가. 입법 준비	97
나. 법률안의 기초	97
다. 국회제출	98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98
가. 제안자	98
나. 소관 사항	98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99
라. 제안 절차	99
3.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100
가. 법률안의 접수	100
나. 본회의 보고	101
다. 위원회 회부	101
라. 위원회 심사	105
마. 법률안의 통과 형태	110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112
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14
아. 전원위원회 심사	114
자. 본회의 심의·의결	115
차. 법률안의 정부이송	115

VI.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 117

1. 정부입법계획	118
가. 개요	118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118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119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120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121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121
가. 목적	121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121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122
라. 국무회의 상정 및 재가 소요시간 단축	124
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124
가. 개요	124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125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129
5. 법제업무 평가	133
가. 개요	133
나. 주요 평가사항	134

VII.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 135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136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136
나. 문단 모양(Alt+T)	136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137
2. 표지	137
3. 의결서 부분	138
가. 의결주문	138
나. 제안이유	138

다. 주요내용	141
라. 주요토의과제	152
마. 참고사항	154
4. 법령안	162
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163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165
가. 표지	165
나. 의결서 부분	166
다. 법령안	168
라. 첨부	170

VIII.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85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186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186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187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188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188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190
3. 법령안 입안 방법	192
가. 법령정비의견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193
나. 법령안의 입안 및 공개 설정	195
다. 법령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	198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199
마. 각종 영향평가 요청 및 결과 확인	203
바. 법령안 사전심사 방법	210
사. 입법예고 실시	213
아.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등록	216
자. 법령안 심사의뢰	218
4. 법령안 심사 방법	223
가. 심사안 작성 및 공개설정	223
나. 심사정보 확인 및 등록	226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229
라. 심사안의 결재 및 부처 이송	230
마. 법령안 심사현황 및 통계 활용 방법	234
바. 지시사항 등록관리 방법	239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242
가. 차관회의 상정 및 관리	242
나. 국무회의 상정 및 관리	245
다. 국회 제출안 확인 및 국회의안정보 연계방법	246
라. 정부이송안 확인 및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47
마. 공포 법령 등 조회	249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253
가. 발령된 행정규칙의 등록	253
나. 행정규칙 접수·배정	255
다. 행정규칙 검토	255
라. 개선의견 협의	257
7. 입법현황 총괄관리	259
가. 정비대상법령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요청	259
나. 정비대상행정규칙	262
다. 정부입법계획	265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272
마. 정부입법현황	274
바. 국회입법현황	275
사.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275
8. 입법의견 총괄관리	276
가. 입법의견 등록	276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276
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277
9. 법제지식 활용	279
가. 최신법령소식	279
나. 언론보도	282
다. 입법기준/편람	283
라. 입법지식	285

IX.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 287

1. 법령안편집기 개요	288
2. 법령안편집기 설치	289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289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290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290
가. 신규 법령안 작성	290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291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292
4. 제정·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294
가. 법령안 작성	294
나. 조문편집과 검토	294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295
가. 법령안 작성	295
나. 조문의 신설 방법	295
다. 조문의 삭제 방법	296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297
마. 조문의 전부개정 방법	298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299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300
아. 법령안 반영	300
6. 연관법령의 검토	301
가. 연관법령카드의 활용	301
나. 법령안편집기의 인용 조문 등 검색 기능 활용	302
다. 인용 오류 조문 확인 기능 활용	306
7.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309
가. 스타일링	309
나. 용어검사	309
다. 조문검사	310
라. 연관정보 및 정비의견	310
마. 특수문자 입력	311

바. 환경설정 방법	312
사. 사용자정보설정	313

부록 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315**

가. 법안 내용 검토	316
나. 심사 방법 및 절차	321
다. 심사안 및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321

부록 2. 참고서식 **325**

부록 3. 참고법령 **379**

I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01 개요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법률, 대통령령), 국회 의결(법률) 및 공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법령 유형별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02 법률의 입법절차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52조).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법률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것도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정부제출 법률안이라 부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을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부른다. 여기서 우리의 1차적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제출 법률안의 구체적인 입법절차일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절차 및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V. 법률안의 국회심의(p.95 이하) 부분을 참고한다.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률안을 입안하게 된다(①). 입안된 법률안은 그 시행 과정에서 타 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등 각종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평가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률안을 확정하면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④).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판단 하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나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심사 의뢰된 법령안은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등을 거쳐 법제처장의 결재를 득하면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다(⑥).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차관회의(⑦) 및 국무회의(⑧)의 심의·의결 후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⑨)를 마치면 국회에 제출(⑩·⑪)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⑫)되면 법제처는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다시 국무회의에 상정(⑬)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⑭)된 법률 공포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대통령 재가(⑮)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⑯) 절차를 마치게 되며, 비로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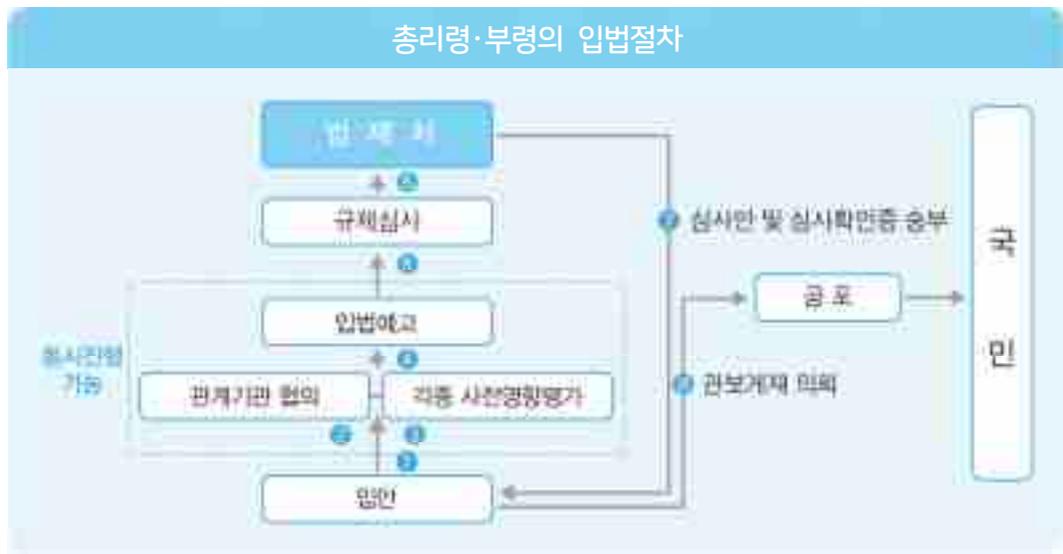


대통령령은 행정입법으로서 그 입법절차에서 국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하게 되며, 법률과 같이 국회제출, 국회에서의 심의, 정부이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다.



0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법령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로부터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송부 받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절차를 마치게 된다. 다만, 총리령의 경우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총리령을 총괄하는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해야 한다. 부령의 경우는 행정 각부의 장관이 발령하는 것이므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각부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부령 공포 번호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법령안의 입법절차는 해당 법령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부(部)·처(處)·청(廳)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¹⁾)이 포함된다.

실무사례

법령안 주관기관의 변경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에 표시된 법령안의 주관기관은 해당 법령의 제정 당시의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개편 또는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정부조직법」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정부조직법」 제12조제3항, 「국무회의 규정」 제3조제1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

1)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100조는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감사원법」)에 위임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그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의약품안전처)·청·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장관을 제안관서로 하여 국무회의에 법령안을 제출하여야 한다.2)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또한, 법령안의 내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절차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³⁾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특정 기관이 주도할 수도 있다.

02 법령안의 입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령안을 입안하게 된다. 대체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고, 법령안의 작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에 따라 조문화 작업을 거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조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여 법령안의 작성 자체만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의뢰하기도 한다.

법제처(법제지원총괄과)는 법령안의 입안과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령안 주관기관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 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의안의 제출자가 되고, 청은 부(部)의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위원인 부(部)의 장관이 제출자가 되며, 감사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이 제출자가 된다. 또한, 개별법에서 제출자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통령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와는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제출자가 된다.
- 3) 공동소관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른 공동소관 부처의 개정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정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수요를 병합하여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경우 공동소관 부처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분리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령입안지원 제도

- 부처의 입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부처에서 법령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법령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등을 지원해 주고, 부처에서 초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안이 잘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해 주는 등 효율적 입법 추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법령입안지원과 사전심사와의 구별 〉

구 분	법령입안지원	사전심사
법적 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제도 성격	부처 입안을 지원(심사 X)	법령 심사의 일환
요청 시기	부처의 입안 단계 (사전 심사나 법령심사 전)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중
법제처 역할	Counselor	Supervisor
담당 부서	법제지원총괄과	법제관실

② 지원 대상 법령

- 정부제출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
- * 제외 대상 : 의원발의 법률안,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행정규칙안, 조례안

③ 입법 지원 내용

- 법안의 제정 필요여부, 조문의 전반적인 자구 및 체계, 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특정한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적용례·경과조치 등 부칙에 관한 사항까지 법령 입안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법리적 문제에 대하여 신청 가능

④ 법령입안지원 신청 방법

1) 서면상담

- 정부입법지원센터 > 입안지원 요청함 접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로 공문 시행
- 법령입안지원 대표 메일로 송부: leg.sd@korea.kr

2) 대면상담

- 법제지원총괄과(세종청사, 7-1동 704호)
- 서울법제지원센터(서울청사, 일정 및 세부 장소는 공문 참조)

* 문의: 044-200-6833, 6836

법령안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안하게 되므로, 법령안의 입안시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률의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해야 법률의 시행이 가능하므로, 법률의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그 하위법령의 입법이 완료되어야 한다.⁴⁾ 따라서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법률의 시행일을 정할 때 하위법령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1항).

그러나 법률의 시행이 시급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등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안의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심의가 이루어질 때 하위법령의 입안 등 필요한 입법준비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실무사례

법률과 하위법령의 동시 시행

법률과 동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의 입법절차는 적어도 해당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기간의 단축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며,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시간이 촉박한 경우 차관회의 생략도 가능)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공포안과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안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⁵⁾에 따라 작성하되, 정부입법시스템⁶⁾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면 복잡한 제·개정문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4) 법제처는 이러한 하위법령 중 대통령령의 정비가 필요한 법률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으로 지정하여 그 대통령령의 정비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5)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6) 정부입법시스템은 종전 입법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까지 모든 입법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부내용은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에서 확인한다.

편리함이 있으므로, 법령안을 입안할 때는 처음부터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법령안에는 법제처 법령정비과제⁷⁾가 모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법령별 법령정비과제는 연도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또는 정부입법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국회 심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입법절차 즉 대통령재가 절차, 국회제출, 법령안의 공포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해당 법령안의 입법의도와 시행시기 등이 의도한 바와 같이 잘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03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후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협의 대상 관계 기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2013. 10. 10.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제1항)이 개정되어 해당 법령안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다.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의견회신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4항).

7)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서, 법제처는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법제업무를 통해 발굴하거나, 국민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과제로 선정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사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입법례도 있다. 그러나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필요하다.

부처협의를 관한 관계 법령

▶ 국무회의 규정

제4조(협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감사원법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① 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해당 법령안을 감사원에 보내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회계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簿記)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4.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는 경우

▶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인재개발·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폐기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②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행정기관이 선거(委託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필요적 부처협의 사항 및 관계 부처

1. 회계·감사 관련 사항: 감사원
2. 예산, 기금 등 예산수반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연, 투자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특례 등: 기획재정부
3. 벌칙, 질서위반행위벌: 법무부
4. 행정조직, 지방자치, 공유재산 특례, 위원회, 서식 등: 행정안전부
5. 경쟁제한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공무원의 인사: 인사혁신처
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명시된 법령안만 해당): 보건복지부
8.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9. 정부업무평가의 별도 실시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0. 선거(위탁선거 포함)·국민투표·정당 관련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부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그 법령안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것이지만 반드시 국무회의 참석기관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⁸⁾(예 : 처·청·위원회 등)의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도 사전에 협의를 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8)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계기관 협의대상에 서울특별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느 한 기관에서만 반대하더라도 해당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안은 의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을 철저히 조정하여야 한다.⁹⁾ 이견 조정과정에서 법리적 견해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하거나, 차관회의에 주요토의과제(작성방법 및 절차는 p152 이하 참조)를 붙여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관계 기관 협의 시에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부처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 개정내용상 정책적 이해가 현저한 관계 기관(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적 통보 및 협의과정이 필요하므로, 소관 법제관실에서는 법령안 심사 시 첨부된 합의공문 등을 통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부를 소관 법제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나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다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원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부처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요건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요건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협의 요건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재입법예고 부분(p.21)에서 후술한다.

9)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차관회의 규정」 제7조제1항)하도록 되어 있으나 역시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실무사례

관계 기관 협의 시 연관법령의 동시개정 필요성 검토

법령 상호 간에는 수직적·수평적 연관관계가 있는데 연관법령 간 개정 시차가 발생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통일성·형평성·체계정당성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안의 입안이 완료되면 ① 소관 법령안의 개정사항과 동일·유사한 규정이 다른 법령에 있는지 확인하고, ② 소관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등의 변경에 따라 다른 법령에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관계 기관 협의 시 연관법령의 동시개정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결과 동시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동시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관법령 개정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에서는 연관법령카드 및 각종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연관법령 개정 관련 법제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p.301 이하 참조)

2018년부터는 법령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법령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처협의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법제국은 온나라문서를 통해 송부된 부처협의안을 접수처리하며, 알기쉬운법령팀은 접수된 부처협의안을 검토한다. 부처협의안 검토를 통해 알기쉬운법령팀은 그 속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해당 용어의 정비안을 마련한다.

알기쉬운법령팀은 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 법제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정비안이 마련되면 소관 부처와 법제국에 통보한다. 정비안을 통보받은 법제국은 해당 정비안이 포함된 법령안 심사 시 정비안을 반영한다.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성평등이나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자치분권 원칙에 대한 적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전영향평가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약이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심사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하여 입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종 사전영향평가 담당부서

-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청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
- 자치분권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5 입법예고

가. 취지 및 연혁

법령안 주관기관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안을 확정된 후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¹⁰⁾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¹¹⁾, 1998년부터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관계기관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정부입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을

10) 입법예고의 시기에 대해 종전에는 관계 기관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대통령령 제21533호로 개정되기 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되어 있었으나, 2009. 6. 9.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11) 1983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11133호, 1983. 5. 21.)되면서 시행되었고, 이후에 제정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1995. 8. 10.)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흡수·반영되었다.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예고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또한,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이원화된 입법예고 실시로 인하여 국민이 법령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의견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의 도입 근거를 마련(「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입법예고

종전에는 각 부처에서 입법예고 공고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령안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 4월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가 개통된 후에는 관보에 입법예고 공고문¹²⁾을 게재하는 것 외에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공고문 및 법령안 전문 그 밖에 참고 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실무적으로,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공고문을 관보 게재 요청함과 동시에,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에는 입법예고안을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등록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법령안 전문 외에 규제영향분석서,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참고·설명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다만, 해당 법령안이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붙임 제2호서식)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 공고문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4항).

12) 표준 입법예고 공고문: 붙임 제1호서식

다. 입법예고의 기간 및 생략·단축

입법예고의 기간은 40일 이상이 원칙(「행정절차법」 제43조)이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6조).

기술규정 등 입법예고 시 WTO 통보의무

-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라벨링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 TBT 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WTO 사무국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가에 예고내용을 통보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또는 라벨링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WTO TBT 협정 등에 따라 WTO 사무국 등에 대한 통보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를 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또한,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도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과 협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라. 입법예고의 재실시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해당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입법예고는 정부정책을 법제화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입법예고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¹³⁾

또한, 최근 법원에서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2018누71863, '19.5.10. 서울고등법원)한 경우도 있으므로 입법예고 후에 내용이 변경된 경우 국민의 의견 제출 기회 박탈 및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입법예고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입법예고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¹⁴⁾

재입법예고 여부를 고려해야 할 사례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추가되거나 강화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 ▶ 개별행위 또는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허가·등록·신고 제도 등의 추가 및 결격사유 도입·변경
- ▶ 행정상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과태료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연체금·가산금 부과제도의 추가 또는 부과 기준 변경
- ▶ 자연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자격 제도의 추가·변경
- ▶ 토지의 수용·사용 등 재산권 제한 제도의 추가·변경
- ▶ 벌칙의 신설·변경

13) 따라서, 담당 법제관실에서는 접수된 심사의뢰안과 입법예고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 다만, 이 경우에도 모두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추가·변경된 내용과 당초에 예고된 내용 간의 관련성이 적어, 당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그 추가·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령심사 등의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의 논리적·법리적·법체적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최초 입법예고안의 수혜적인 내용을 삭제·축소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수정되는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민간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입법예고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국민의 권리 신장, 의무 경감 또는 혜택 증대 등 국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일부 국민에게는 유리하지만 제3자의 이익 또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하였으나, 18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해서 채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민사집행법」)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근로장려금의 지급 재산요건 상한 인상을 추가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되지만 국가재정부담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 그 밖에 허가기준 등을 완화하도록 변경하여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국민안전 등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등

2.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 최초 입법예고된 내용 중 대체복무자의 복학 및 복직 보장, 소집일 연기 등 일반적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병역법」)

3. 법령안의 취지·주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거나 관련성이 적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경우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재정정보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 등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내용만 있었는데, 국민참여예산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경우(「국가재정법 시행령」)

- 최초 입법예고 후 장기간 입법절차가 정지된 경우 등 입법환경의 변화 등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동일기업·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최초 입법예고를 실시 ('17.3.21. ~ 5.1.)하였는데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었다가 지연사유가 해소된 '18년 6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입법을 재추진하는 경우(「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4. 부칙의 추가·변경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 시행일, 유효기간, 규제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최초 입법예고안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시기, 기간 또는 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 ▶ 수익적 내용의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 침익적 내용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유효기간 또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수익적 사항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거나 침익적 사항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도록 변경되는 경우

- ▶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등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 및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 종전의 규정의 적용대상을 축소한 경우(「대학 설립·운영 규정」)

- 적용례, 특례,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 적용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 최초 입법예고안에는 종전에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종전에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규정으로 변경한 경우(「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 최초 입법예고안은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된 지주회사 자산요건에 대하여 기존 지주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10년 동안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법제처의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5항).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제3항).

바. 제출의견의 처리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1항). 또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특히,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제출된 의견의 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처의 담당자에게 의견이 제출된 사실을 알리는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관보 게재 시 명시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됨)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소관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입법 ☎ (통합)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관리)의 “입법의견 관리” 메뉴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등록함으로써 제출의견을 처리할 수 있다.

사. 확인 및 점검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않은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이나 입법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06 규제심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비심사)하고,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규제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하여 종결처리하며, 중요규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본 심사를 진행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규제심사 흐름도 ① 규제심사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규제조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유형(표준/간이)을 규제조정실과 협의
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통해 작성하고 중소기업 영향분석은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 활용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실한 작성 등 부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
입법(행정) 예고 (20~60일)	소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TBT 통보대상 기술규제의 경우 60일 이상 예고해야하므로 기술규제가 있는 경우 자체 검토(부록3)
비용검증 및 중기·경쟁·기술 영향평가 (20일~60일,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규제연구센터 (1차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센터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편익 분석 사항 수정·보완(소관부처) ※ 검증결과에 따라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및 2차검증 대상 확정
	비용분석위원회 (2차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비용관리제 적용대상 중 연간균등순비용 ±10억원 이상인 규제와 ②비용관리제 적용제외 중 비용상 중요규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호 및 제2호)가 대상으로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심의의견은 예비심사 前까지 검토하여 보완
검증의견 종합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규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조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지체없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되면 심사종결

(출처: 2020.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규제심사 흐름도 ② 규제심사비대상인 경우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 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Off-line) : 입법예고 7~14일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를 규제조정실과 협의
▼		
규제정보화 시스템 입력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정보화시스템에 규제심사대상여부를 정식 검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상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규제의 폐지·완화로 심사 비대상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확인증 발급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예고 종료일 다음날 규제정보화시스템에서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규제조정실에 공유

〈출처: 2020.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법제처의 심사



가. 법령안의 심사의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하여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¹⁵⁾ 따라서 법령안이 심사의뢰 되었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또는 규제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법령안을 반려하게 된다. 다만,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되어야 하는 하위법령이나 국가 중요정책의 적기시행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나. 심사 의뢰된 법령안의 처리절차

법령안의 형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1) 법률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징)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2) 대통령령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부서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¹⁶⁾(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15)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의뢰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 심사의뢰 공문내용과 첨부파일이 전송된다. 이때, 법령안 심사가 접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16)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리령안¹⁷⁾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4) 부령안¹⁸⁾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공포 후 10일 이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통보(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5) 조약안¹⁹⁾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통보(외교부)

6) 대통령훈령안²⁰⁾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대통령 재가(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훈령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발령(훈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 17) 국무총리 소속 기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데,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 18)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 19) 조약안의 경우 법제처는 국회 동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견을 외교부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그 이후의 절차(차관·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재가, 국회 제출, 공포)는 외교부가 진행한다.
- 20) 대통령훈령과 총리훈령은 법령은 아니지만, 심사절차는 유사하므로 여기에서 설명한다.

7) 총리훈령안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심사결과 통보공문에 심사안과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훈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 → 국무총리 결재(훈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훈령번호 부여(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 → 발령(훈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02

법령안의 반려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심사의뢰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에 대하여 그 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4항).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필수적인 입법절차(관계 기관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또는 각종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조약안이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안을 심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심사의뢰한 기관과의 협의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조약안,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심사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조약안과 그 밖에 입법추진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조약안 등은 심사의뢰한 기관과 협의하여 반려할 수 있다.

법령안 반려 세부사유(예시)

- ▶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과 명백히 중복되는 경우
- ▶ 1차 심사 결과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처의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협의 곤란 등을 이유로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 1차 심사 후 보완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불응한 경우
- ▶ 입법일정 수요 등의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의뢰 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법령안의 반려 결재권자

- 소관부처의 요구, 법리상 곤란 : 법제관 → 국장
- 절차 위반 등 : 법제관

03 법령안의 철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한 후 정책 변경 등으로 심사의뢰한 법령안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접수대기 또는 심사 중이거나 심사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철회할 수 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을 철회하려는 경우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법령안 철회 요청을 하고,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연계 기능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철회 요청을 받은 법제관실 담당자는 법령안 철회가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의 2가지 경로를 통해 모두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철회 요청은 이루어졌으나, 정부입법시스템의 철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철회 요청 공문을 첨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안을 반려처리하도록 한다.

특히,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제처 심사결재가 완료된 법령안을 철회하고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법령안을 심사의뢰하려는 경우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법령안이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로 정부입법시스템에 존재하므로 철회 예정 법령안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잘못 전송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시스템상의 철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을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해서는 안 되며, 법제관실 담당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정부입법시스템상의 철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을 접수받으면 안 된다.

또한, 법제관실 담당자는 정부입법시스템에 심사결재가 완료되어 차관회의제출대기 상태인 법령안 중에 철회가 예정된 법령안이 있음을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함으로써 철회 예정 법령안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잘못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법령안 철회 시 유의사항

-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2가지 경로 모두 철회 실시
-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의 연계 기능을 활용하여 일괄 처리
-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 완료 전 동일 제명의 법령안 중복 접수 금지
-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한 철회 지연 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철회 공문에 근거하여 반려 처리
- 법제처 심사결재 완료된 법령안 철회 시 법제정책총괄과와 정보 공유
- 법령안 철회 후 동일 제명의 새로운 법령안 처리하는 경우 차관회의 안건 상정 후 법령안 주관기관 및 법제관실 상정안건 확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각 법제국에 자동접수가 된다. 법령안에 대한 심사의뢰는 각부 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실무적으로는 각 부처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안을 실제로 주관하는 법령안 주관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정되므로 심사의뢰자가 곧 차관·국무회의 제안관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²¹⁾

법령안을 접수할 때에 각 법제국의 접수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법령심사가 의뢰 되었으나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편집기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안 심사 시에 정부입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령안의 제·개정문 등이 법령안편집기로 작성되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법제국의 접수 담당자는 심사의뢰된 법령안이 공동소관 법률·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법령안이 심사의뢰된 법령안과 비슷한 시기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관회의·국무회의의 심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령안을 병합하여 처리할 것을 공동소관 부처에 권고하고 부처 상호 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안의 경우 공동소관 부처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할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병합하여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의뢰된 법령안이 공동소관 부령인 경우에는 어느 한 부처에만 관련된 사항이라고

21) 예를 들어, 「특허법」의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실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특허청이므로, 법령안의 심사의뢰는 특허청장이 하지만, 차관·국무회의 상정 안건의 제안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심사의뢰를 해야 하므로 다른 공동소관 부처에서 심사의뢰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안 접수 시 확인 사항

- 정부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률의 개정안 국회 계류 여부(중복법안 여부)
-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공문 사본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사항 통지 결과 공문 사본(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만 해당)
-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 비용추계서
 - 「국회법」 제79조의2제4항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령안(미첨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실무사례

접수법안과 국회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확인 절차

1. 법안 접수 시 같은 법률의 국회 계류 여부 확인: 소관부처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
2. 계류법안이 있는 경우 접수법안과 계류법안의 중복 여부 판단
3. 접수법안이 중복법안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
4. 법제관실에서는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정책총괄과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 논의 (필요 시 국회 의안과와 사전 협의)
 - 입법기술상 중복 회피, 법안 반려, 계류법안의 철회안 또는 수정안 제출 등 법안 처리 방향 논의
5. 법안의 국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제관실은 법제처의 입장을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소관부처의 최종 방침 결정 요청



III

법제처의 심사

1. 중복법안의 의미

- 1) 국회 계류 중인 정부제출법안(A법안)에서 개정하는 조문과 같은 조문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A'법안)
 - 같은 법률인 경우에도 각각 다른 조문을 개정한다면 별개의 법안(B법안)이므로 중복법안에 해당 안 됨.
 - 원칙적으로 중복 여부는 “조” 단위로 판단하나, 내용상 분리된다면 항·호 단위로도 판단 가능
 - A법안과 A'법안 중 어느 하나라도 전부개정이면 중복에 해당
- 2) 국회 계류 중인 법안(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모두 포함)과 내용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 내용상 중복여부, 독자적인 내용인지 여부는 개정취지, 조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법제정책총괄과에 통보하여 결정함.

※ 이하에서는 1)에 해당하는 중복법안에 대해 설명함

2. 중복법안 판단 기준

1) 중복법안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개정하는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²⁾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도로교통공단-----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 교통안전공단----- --.

② 개정하는 부분이 포함된 조·항 전체를 삭제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 도로교통공단-----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삭제>

③ 개정하는 부분이 포함된 조·항 전체를 개정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은 <u>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u> 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제1종 보통연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연습면허시험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 삭제하는 조·항의 내용을 개정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⑦위원회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삭 제〉	⑦----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실무위원회---

2) 중복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독립된 항·호를 신설하거나 단순히 항·호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같은 조·항이더라도 개정하는 부분이 다른 경우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u>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u> 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 ---- <u>도로교통공단</u> ----- --.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 ----- -.

③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의 경우(순수알법, 내용알법 중 내용개정 없는 부분²³⁾)

- 삭제된 항을 개정하므로 중복[위 1)④ 해당]이지만, 계류법안 또는 제출예정법안이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이면 중복이 아닌 것으로 취급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u>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u> 이 실시한다.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삭 제〉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u>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u> 이 실시한다.

④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에 준하는 정비

명목상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은 아니나 알기 쉽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법률안이나 특별자치도 정비 등 내용 개정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이 아닌 것으로 취급

현 행	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안	제출 예정 법안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제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둔다.	제8조(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①-----도·특별자치도-- ----- -----.	〈삭 제〉

3. 중복법안의 처리

국회는 중복법안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므로, 입안하려는 법안(A'법안)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해야 함.

- 계류 중인 A법안의 처리(국회의결) 후 국회 제출
- 계류 중인 A법안을 철회하고 A'법안 제출(철회안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p.79 이하 참조)
- 계류 중인 A법안의 수정안 제출

- 22) 2014. 6. 11.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가안전처 소속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국가안전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내용이 국회 계류 중이었고, 그 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어 중복법안 여부를 국회 의안과와 협의한 결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개정된 점과 「정부조직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중복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2014. 11. 5.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다.
- 23) 내용 개정 없이 알기 쉽게만 정비한 법률안을 순수알법이라고 하며, 내용개정과 함께 법률 전체를 알기 쉽게 정비한 법률안을 내용알법이라고 한다.

가. 합의심사제

법제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합의심사제²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합동심사회와 법제합의부로 구분하고 있다.

1) 합동심사회

가) 구성원 등

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 입안·심사 기준 담당 실무자, 법령안 심사에 관하여 법제관을 보좌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합동심사회는 주 1회(통상 수요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상정대상 안건

모든 법률안은 합동심사회 상정을 원칙으로 하고, 하위법령안은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있는 경우,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관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경우 등에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적 입법예고 중인 안건을 상정하여 폭넓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회의계획 작성

주심 법제관과 실무자는 심사 중인 법령안을 합동심사회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각 법제관실로부터 상정 의뢰된 안건에 관한 회의계획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차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처 내에 공지한다.

24)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법제처예규 제72호)을 참고한다.

라) 법령안 및 주요심사사항 등의 제출

주심 법제관은 합동심사회에 상정할 법령안(부처제출안을 원칙으로 한다.) 파일을 회의 개최 전 주 금요일까지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제출받은 파일을 정리하여 처 내에 미리 공유함으로써 회의 참석 전에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

법령안 합동심사회는 차장이 주재하고, 각 국장, 법제관 및 관련 서기관·사무관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 토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심 법제관이 주요 심사사항 발표 후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그 후에 그 밖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지적 및 토론 순으로 합동심사회를 진행한다.

합동심사회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완전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공유하고, 담당법제관의 심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각 법제관은 해당 안전에 자기가 담당하는 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반드시 언급하여 심사안이 종전 법과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법령을 먼저 담당하였던 법제관이 종전의 심사 시 경험에 대하여 발언함으로써 해당 법제관의 심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합동심사회에 부처 원안을 상정함에 따른 체계·자구 등의 문제점은 주심 법제관에게 일임하여, 합동심사회가 쟁점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바) 입안 심사 기준 및 법제 지식 등의 보고

합동심사회에서는 입안 심사 기준이나 법령안 개정문 형식 등 각 법제국에 의견을 구할 사항과 최근 법령해석사례 등 법제 분야의 새로운 지식 등을 보고할 수 있다. 합동심사회는 법제심사의 쟁점 사항에 대한 법제국의 합의기능과 법제지식 등의 공유를 통한 법제심사 역량강화 기능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다.

2) 법제합의부

가) 구성 등

법제합의부는 법제국 단위로 법제국장과 법제관으로 구성하며, 법제관을 보좌하는 서기관·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은 배석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제합의부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법제합의부의 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상정 안건

법제합의부는 합동심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다) 법령안 등의 제출

주심 법제관과 실무자는 법령안 심사 시에 해당 안건을 법제합의부에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입법시스템의 회의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법제합의부에 안건을 상정한다.

해당 법제국 법제합의부 담당자는 정부입법시스템의 [입법현황>회의관리] 메뉴에서 회의를 개설하고, 국장에게 보고하며, 회의계획을 주심 법제관에게 통보한다.

라) 주요심사사항 등의 등록

주심 법제관은 해당 법령안과 주요심사사항, 토론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정부입법시스템에 개설된 회의방에 등록하고, 법제국 법제합의부 회의담당자는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합동심사회 보고 사항

법제합의부의 회의 결과 합의는 되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관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합의법제관

법제관은 법령안 심사보고 시 특정 업무 분야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법제관(이하 “합의법제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령심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합의법제관의 의견은 소관 법제국장의 검토 전에 받도록 한다.

합의법제관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합의법제관 지정 기준

관련 사항	합의법제관
- 국가행정조직 및 국가공무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조직) 담당 법제관 - 인사혁신처(인사) 담당 법제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지방행정) 담당 법제관
-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획재정부 담당 법제관
-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국토) 담당 법제관
- 벌칙에 관한 사항	- 파견검사
- 조약	- 그 내용별로 위의 각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관

나. 법제관실의 법령심사 및 심사안의 작성

1) 법령안

법령안의 접수가 끝나면 담당 법제관 및 서기관·사무관 등이 팀을 이루어 법령을 심사하게 된다. 법령안 심사 시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정책적인 설명을 듣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안의 검토 등을 통하여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법령안이 합동심사회나 법제합의부의 대상인 경우 또는 법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심사회 또는 법제합의부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안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 경우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재입법예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한다.

법령안의 내용이 정리되면,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한다. 심사안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이 되고,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경우에는 부처 송부안이 된다.

국무회의 상정안은 표지, 의결서 부분과 법령안으로 구성되며, 부처 송부안에는 표지가 없고, 의결서 부분 대신에 의결주문이 빠진 제정·개정 이유 부분이 들어간다.

비밀문서로 분류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심사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인 보안나라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법령심사안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조약안

조약안은 정부입법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조약안의 주요 내용,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을 적은 국회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붙임 제4호서식)를 첨부한다. 조약안의 검토의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²⁵⁾를 명시하여야 한다.

25)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우호통상 항해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강화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 요청

심사안 작성이 끝나면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경우 알기쉬운법령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를 거친 후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를 요청할 때 주의할 점은 법령 심사안의 담당자는 법제관이고 실무자(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주무관)는 보조자이므로, 반드시 담당 법제관의 검토가 끝난 법령심사안을 검토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이나 전부개정안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검토를 요청한 심사안에 대하여 알기쉬운법령팀에서 권고안을 등록하면 실무자는 법제관과 함께 권고안을 심사안에 반영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가. 결재(결재 관련 양식은 붙임 제3호서식 참조)

법률안·대통령령안 및 조약안의 심사안은 처장의 결재를 받고,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 및 총리훈령안의 심사안은 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총리령안 등의 심사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처장 또는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심사안의 결재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법령심사안의 결재를 진행할 때, 해당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만 해당한다)이 재정부담을 수반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법령규정상으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제처에서 결재를 진행하는 법령심사안에 첨부하여 처리되는 실무절차로 인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법제관실 담당자가 송부받아 해당 법령안건에 별첨으로 첨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을 해당 법률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회법」 제79조제4항)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때에는 추후 국회 제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률안 국회 제출 시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하여 국회(의안과)와 협의된 실무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참고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해당 법령안이 비용 발생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①비용추계서 첨부, ②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또는 ③기발생 비용 관련 참고사항 추가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련 근거

-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국회제출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첨부

*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④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비용이 소액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세 첨부기준

- (첨부대상) “지원”, “지급”, “보조”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재정수반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상 개정안을 집행하기 위해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 주요 누락 사례

연번	조문	재정수반 요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제도 위탁·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둔다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재건축부담금 면제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수입 감소 예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자료 및 정보제공, 교육 등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강우(降雨)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산망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료급여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분쟁 조정 및 법률 상담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에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삭제 	환급제도 도입에 따른 세출 증가 및 가산금 징수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研修)를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결원 보충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②(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제 	현금지원 규정의 일몰기한 삭제에 따른 재정지출 수반 예상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역항의 해상구역등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 시행을 위한 재정지출 수반 예상

○ (제외대상) 위 실질적 기준에 따라 비용이 수반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존에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하 “기발생 비용”이라 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

(예시) ① 개별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개정하는 경우

② 예산 또는 기금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경우

③ 하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던 사업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경우

- 종전에는 위 예시의 경우를 비용추계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비용”이란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의미(「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요청(2012. 5.)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기발생 비용 여부를 해당 법률안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조치 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가능(A)〉

- 위 예시 ①과 같이 해당 법률안(부칙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만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구체적 사례는 아래 참조)
 - ⇒ 별도 조치 불필요

〈법률안으로 기발생 비용 여부 확인 불가능(B)〉

- 위 예시 ②, ③과 같이 해당 법률안만으로는 기발생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법안 참고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발생 비용임을 명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

- (첨부대상과 제외대상 혼재) 하나의 법률안에 비용추계 대상과 제외대상(B만 해당)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고,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참고사항으로 적시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

3.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작성 시 자주 틀리는 형식적 사항

- 재원조달계획서 누락
- 비용수반요인 작성 시 개정안 조문번호 오기
- 추계기간(시행일 ~ 5년*)
 - *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4. 업무처리절차 요약



법률안으로 기발생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례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 기존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통합

제 정 안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58조(대한지적공사의 설립) ①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의 구축 등을 하기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부 칙

제7조(지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는 각각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로 본다.

제12조(대한지적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제 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로 본다.

[사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안으로 변경

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p> <p>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제14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부 칙
<p>제2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본다.</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장(제18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p> <p>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사례 3]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른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문화진흥원을 한국정보화 진흥원으로 통합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및 법·제도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p>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p> <p>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⑦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⑧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p>	<p>제10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과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정보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과 이에 따른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문화의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실태 조사·예방·해소 지원 8.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 9. 건강한 정보문화 확립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0.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11.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2. 정보화촉진,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13.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정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
2.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 지원
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5.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예방·해소 지원
6. 그 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공공기관은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정보화진흥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정보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보화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③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나. 심사경과보고

담당 법제관은 법령안 심사 시 문제점 중심으로 심사경과보고서(붙임 제5호서식)를 작성·보고함으로써 결재권자가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심사경과보고 사항²⁶⁾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6) 단순한 자구·체계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따로 심사경과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알기쉬운법령팀이 통보한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관련 정비안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주요 심사경과보고 사항

1. 소관부처 원안을 수정 또는 삭제한 사항 중 중요 사항
2. 사전검토 보고 시에 보고된 문제점의 조정 내용
3.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내용
4. 국무회의 등에서 쟁점의 소지가 있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체계적 관리

심사경과보고서는 법제처의 공식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제관실에서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다른 법령안의 심사 시 또는 해당 법령 해석 시 참고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8년 12월부터 심사경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제 심사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경과보고서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각 법제관실에서는 1개의 주제에 대하여 내용별 분류 및 성질별 분류를 각각 선택해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경과보고서 분류체계

내용별 분류		성질별 분류
총칙	목적	1. 헌법위반 2. 상위법 위반 3. 법령 및 조항 상호 간 중복·상충 방지 4. 위임입법 일탈방지 5. 재량권 남용 방지 6. 실효성 확보 7.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8.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9. 법리상 불합리한 규정 정비 10. 기존권리자의 권리침해방지 11. 기타
	정의	
	해석/적용범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타: 제·개정 필요성/조약의 국회동의 여부	
실체적 규정	행위의 허가/신고/등록	
	사업의 허가/등록/신고/특허/면허 등	
	인허가의 의제/협의	
	결격사유/권리·의무의 승계	
	과징금	
	부담금	
	연체금/가산금	
	행정강제	
	지원금/보조/출자/출연/용자	
	국유재산/공유재산/물품관리	
	조세법	
	재정/회계/국가계약	
	기금	
	위임입법/법령의 중복·상충	
	자격부여/시험제도/교육훈련	
	외국인	
	검사/검정/인증/시험	
	위원회	
	특수법인/영조물	
	행정지도	
	행정처분	
	행정쟁송/이의신청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유효기간/기간제한/기간계산		
공무원제도/직제/조직		
기타		
보칙규정	수수료/사용료	
	비용의 부담	
	출입검사	

내용별 분류		성질별 분류
보칙규정	출입제한	
	자료수집/자료조사/자료보관/장부비치	
	보고의무/자료제출/통보/통지	
	청문/의견청취/공청회	
	권한의 위임/위탁/대행/기관지정	
	유사명칭사용금지	
	정보공개/정보제공/정보보호	
	손실보상/손해배상	
	행위제한/원상회복	
	벌칙적용의 공무원 의제	
	기타	
벌칙규정	구성요건	
	법정형	
	과실범/미수범/공범/형의 감면/친고	
	양벌규정	
	행정질서벌(과태료)	
	기타	
부칙규정	시행일	
	유효기간/적용시한	
	다른 법령의 개정/폐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특수법인의 설립	
	적용례/특례	
	경과조치	
	종전 부칙의 개정	
	기타	
별표	별표	
	별지서식	
	기타	
기타	법령의 제명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방식	
	법령정비	
	법령의 공포방법	
	기타	

IV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0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1) 법령안의 제출자

헌법 제89조제3호에 따르면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헌법」 제88조제2항, 제89조제17호, 「정부조직법」 제12조제3항). 부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정부조직법」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행정각부와 같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면 해당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교육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국무조정실 소관)

그런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처(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인 경우에는 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경우

처(處)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기관이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대한민국헌법」 제88조제3항)으로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를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²⁷⁾,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별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된다. 이 경우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법제처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법제처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므로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나) 대통령 소속기관 등의 경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 그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인 국무위원을 제출자로 하여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담당기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제안(「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제출자가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제출자가 된다.²⁸⁾ 이 경우에도 역시 제출자 명의 아래에는 그 소관기관을 명시한다.

27)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안관서였으나, 2008. 2. 29. 법 개정 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다른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제안관서가 된다.

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4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감사원	국무회의 서무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감사원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개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다) 공동 소관 법령

둘 이상 부처의 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을 모두 제출자로 기재하되,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²⁹⁾에 따르도록 한다. 법령의 소관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관하는 부처와 이관받는 부처의 공동 제출 법령안이 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법무부와 환경부 공동 소관	법무부와 환경부의 공동소관 법령이므로 법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제출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의안 소관 부서명

법무부 ○○○과	
연 락 처	(044) ○○○ - ○○○○
환경부 ○○○과	
연 락 처	(044) ○○○ - ○○○○

29)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소관 법령안의 경우에도 해당 상정 법령안이 하나의 부처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만 표시한 사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공동 소관이지만, 법률 제7503호(2005. 5.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확인 사실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상 법무부 단독 소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무부를 단독 제출자로 하였다.

라) 일괄개정법령

일괄개정이란 하나의 큰 정책방향에 따라 여러 개의 법령에 걸쳐 유사한 개정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상·편의상, 그리고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법령안에 모아서 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괄개정의 경우, 개정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의안제출자를 정하면 될 것이나, 개정대상 법령안의 주관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의안제출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지금까지 일괄개정사례를 보면, 위원회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해당 업무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해왔으며, 한시적 규제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한 시험공고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일괄개정안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괄개정안이 ‘제정’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원칙적으로는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이 모두 제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회의 운영의 편의상 종전처럼 해당 개정사항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기관이 대표로 제출하되, 개별 법령안 주관기관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지의 제출자란에 대표 제출자 명의 아래에 “(○○○부 등 ○개 소관)”이라고 명시하고, 소관기관의 상세한 목록을 의안 맨 마지막 페이지 의안 소관부서명란에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의안 소관 기관	상 황	제출자 명의
행정안전부 등 9개 기관	일괄개정사항의 총괄 담당자인 국무총리가 제출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등 9개 소관)

의안 소관 부서명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000 - 000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000 - 0000

마) 기타사항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때 국무위원인 각 부의 장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서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석이면 국무총리가 제출³⁰⁾한다. 또한,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전에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변경된 국무위원으로 제출자를 정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안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차관회의에 제출되어 의결되었으나, 국무회의 개최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무회의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 명의로 제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국무위원 명의 아래 소관 부처를 명시한다.

의안제출자 표시 사례

차관/국무회의	상 황	제출자 명의
차관회의(2013. 9. 27.)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대통령 미수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국무회의(2013. 10. 2.)	보건복지부장관 사표 수리(9. 30.) ⇒ 서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출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 소관)

30)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로 사퇴하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법안을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한 사례와 2014. 3. 21. 안전행정부장관의 공석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정○○(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 및 2015. 4. 28. 국무총리의 공석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하여 제출된 사례가 있다.

바) 제안설명

법령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무회의 참석자(구성원 또는 배석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해외출장, 공석 등으로 참석할 수 없고 대리참석도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처나 위원회의 소관 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무조정실장이 대신하고, 그 외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신한다³¹⁾.

2) 안건의 상정

법령안의 제출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실무상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소관 법제관실에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처장 결재를 받으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안의 형식에 맞게 검토·편집하여 해당 안건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때 법령안의 기본정보 등이 기재된 법안정보카드를 함께 전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에서는 문서관리카드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통상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개별부서에서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법무 담당부서에서는 전송받은 법안정보카드와 문서관리카드가 포함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등록된 의안관리카드를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법령안건은 원칙적으로 상정하려는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의정 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무회의 규정」 제3조제4항). 다만, 법률공포안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31)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처장·차장이 모두 해외출장, 행사참석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제안설명한 사례가 있다.(2013. 6. 25. 제28회 국무회의)

통상 차관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므로, 화요일(보통 15시 30분)까지는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의 의안공유방에 그 전주(前週) 수요일(보통 12시)까지 관련 자료를 미리 게시하고, 화요일(보통 15시 30분)까지 안건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정상안건으로 상정된다.³²⁾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은 차관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부처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즉석안건의 상정은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거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되므로, 차관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입법을 추진하거나 법제처 결재를 추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정안건의 첨부문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 법령안 주관기관은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의안관리카드에는 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의 의안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안건요약서, 추진경과 첨부문서(부처협의 결과,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등), 법령안 원인(법제처 심사안)을 첨부해야 한다.³³⁾ 또한, 법안정보카드와 문서관리카드도 의안관리카드에 포함된다.

안건요약서는 해당 법령안의 추진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법령안에도 제안이유 부분이 있지만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작성한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의 조문마다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이유를 기재함으로써 법령해석이나 법령심사 그리고 쟁송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32) 안건 상정 또는 의안공유 마감시한은 차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안건 상정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3) 자세한 작성방법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공유자료실/메뉴얼 및 FAQ/국무·차관회의 일반사용자 메뉴얼 (080401) 참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제정 또는 개정하는 모든 조문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몇 개 조문이 같은 취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묶어서 작성할 수 있다.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법령안의 법제처 심사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 만일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도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안 주관기관은 당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중 법제처 심사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제관실로 보내고, 해당 법제관실에서는 심사변경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입법시스템의 “입안·심사”나의 할일”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의 상정안건 정보에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가 법령정보카드에 법령 원안과 같이 첨부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제처가 등록한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여 의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심사경과 첨부문서는 대부분 법령안 주관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첨부하지만,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정보카드에 첨부한 문서를 의안관리카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차관회의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에 앞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되고, 각 부·처의 차관³⁴⁾이 구성원이 된다. 법제처 차장은 조약안 및 법령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그 밖에 상시적인 배석자는 다음과 같다.

34)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5. 7. 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었고, 2021. 7. 8.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이들 부처의 경우에는 2명의 차관 중 1명이 차관회의에 참석한다(「차관회의 규정」 제2조).

차관회의 배석자

- 차관급 배석자(8명):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
- 고위공무원 배석자(4명): 감사원 제1사무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담당 법제관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정변경이 있거나 다른 부처에서 이견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관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안건마다 그 처리결과(원안 의결·수정의결·조건부의결·보류 등)를 확인하여 담당 법제관실에 통보(붙임 제6호서식)한다.

5)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며, 각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이 구성원이 된다. 국무회의 구성원 외의 상시적인 배석자는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 배석자

-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정부조직법」 제13조제1항, 「국무회의 규정」 제8조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담당 법제관은 차관회의 수정사항이나 그 밖에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전에 처장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가 끝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지체 없이 국무회의 의결 여부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 법제관실에 통보(붙임 제7호서식)한다.

6) 차관회의·국무회의 수정안 및 수정사항 처리방법

가) 차관회의 최종상정안

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을 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상정안”과 “원안수정 내용”(붙임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 연계를 통해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최종상정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최종상정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나) 수정원안(차관회의, 국무회의)

처장의 결재를 마친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후에 부처 이견 등으로 차관회의 개최 전에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수정원안”을 차관회의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원안”과 “수정내역”(붙임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결재를 진행³⁵⁾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는 원안(당초 결재안)을 수정한 “수정원안”만을 상정하므로, 차관회의에서 수정원안대로 의결되면 “원안 의결”로 처리한다.

한편 통상의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경우 차관회의를 거쳐 상정되므로

35) 차관회의의 안건 접수 후에는 정부입법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수정원안과 수정내역의 정부입법시스템 등록과 온-나라시스템 결재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수정안이나 수정사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정원안이 발생할 수 없지만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즉석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안건 접수 후 국무회의 개최 전에 심사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받은 심사안(원안)을 수정한 “수정원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 수정안(국무회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무회의에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회의 개최 전에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소관 부처와 담당 법제관실에서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기재한 붙임 제10호서식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처장 결재를 받은 후에 법제정책총괄과를 통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담당 법제관실은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³⁶⁾ 국무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수정사항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둘째, 국무회의에서 법령안이 보류되어 추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재상정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처리방법은 첫 번째의 경우와 같다.

셋째, 차관회의에서 관련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원안의결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수정안을 작성한다.

라) 수정사항(차관회의, 국무회의)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이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수정사항(붙임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고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처장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담당 법제관실은 “당초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36) 국무회의는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과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기재한 붙임 제10호서식의 수정안”만 상정되어 의결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법제정책총괄과는 담당 법제관실로부터 이메일로 제출받은 “당초 국무회의에 상정된 법령안에 수정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대통령 재가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수정사항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국무·차관회의 의결형식

구분	차관회의	국무회의	비 고
①	원안의결	원안의결	·차관회의: 원안대로 의결 ·국무회의: 원안대로 의결
②	원안의결	수정의결	·차관회의: 원안대로 의결 ·국무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③	수정의결	수정의결	·차관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국무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1) 차관회의 결과대로 의결 2) 차관회의 결과를 수정하여 의결
④	수정의결	원안의결	·차관회의: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 ·국무회의: 원안대로 의결(차관회의 결과를 폐기하고, 차관회의 상정 원안대로 의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서 원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결재안³⁷⁾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관회의 수정사항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의 의결형식은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이 된다³⁸⁾.

7)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철회된 안건의 처리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당초 원안이 대폭 수정되는 등 주요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정안으로 처리하기가 곤란³⁹⁾하므로, 상정이 철회⁴⁰⁾되는 즉시 법령안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법제처에 심사의뢰 되었던 종전의 법령안을 철회하도록 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법령심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37) 다만, 최종상정안 또는 수정원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본다.

38) 왜냐하면, 차관회의에 처음 상정한 안이 원안이 되기 때문이다.

39)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대체안의 형식으로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4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소방방재청 소관)이 차관회의(2005. 7. 7.)에서 다수 이견의 발생으로 보류되어 원안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관 부처가 차관회의 상정을 철회한 사례(2005. 7. 21.)가 있다.

철회하려는 원안이 차관회의에 의안으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원안을 삭제하면 되나,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 의안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안건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소관 법제관실도 소관부처로부터 심사철회 요청을 받아 해당 법령심사안을 철회로 처리하여야 한다.(법령심사안 철회의 세부적인 방법은 p.33 및 34 참조)

나. 대통령 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대통령령안과 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게 된다.

1) 재가문서의 작성

재가문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기안하는데, 문서의 제목은 법률안의 경우 “----법률안 제출”로, 법률 공포안 및 대통령령 공포안의 경우 “---법률(시행령) 공포”로 작성하고, 국무회의 일자 및 회차를 기재한 후 내부결재자 및 부서권자 등을 지정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공포문 또는 법률안 국회제출문 등의 양식은 각각 붙임 제12호서식부터 붙임 제14호 서식까지와 같다.

2)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副書)

가) 부서권자

국무총리는 법령문서(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함)에 부서하며, 법령안을 제출한 국무위원은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한다.

부서 관련 헌법 규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나) 부서 방법

부서는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한다.

공동소관 법령 및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 관계 국무위원이 여럿이어서 공동으로 부서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순서에 따라 부서하도록 한다.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 간 업무 조정, 승격, 소속청의 신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관련 사항의 변동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관계 국무위원으로서 부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부서 절차의 진행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재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국무회의 직후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국무회의 개최 전날까지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국외출장 등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붙여 재가를 진행하고 추후에 부서를 보완한다(후결). 다만, 후결도 법률안의 경우 국회 제출 전까지, 대통령령안의 경우 공포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후결 사유 작성 예

- ○ ○ 장관이 ----- 활동 차 국외출장(2022. . . - . , ○ ○ 국 및 ○ ○ 국) 중이므로 부서는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라) 특수한 경우의 부서권자

(1)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경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및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2) 국무회의 후 부서권자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제출법률안의 경우 이미 부서한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부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 제출 시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장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국무회의 후 부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 전에 경질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특이 부서 사례

1. 국무총리 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

- 정식으로 국회의 동의(2002. 10. 5.)를 받기 전에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 재가문서에 “국무총리서리”의 자격으로 부서를 하였음.

2.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부서를 한 사례

- 1984. 11. 1. 당시 진의종 국무총리가 신병으로 입원함에 따라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신병현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직무대행 부총리 신병현)의 자격으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공포안 등에 부서를 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하였음.
- 2004. 5. 25.부터 6. 29.까지 고건 총리가 사임한 후 서리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던 이현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의 자격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등 대통령령 77건, 의장법중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의 대통령재가문서에 부서를 하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법령을 공포하였음.
 - *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등 총리령 3건에 대하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던 이현재 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대행(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현재)의 자격으로 결재를 하여 공포하였음.

3. 국무총리의 부서 없이 재가를 받아 공포한 사례

- 국회에서 2002. 8. 28. 장대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당일 장대환 국무총리서리가 사임한 후 그 후임으로 김석수 국무총리서리가 임명(2002. 9. 10.)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공석이었는데, 이 때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 공포안, 같은 법 시행령 공포안,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공포안 등 3건의 법령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부서 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였음.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재의요구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

- 2008. 1. 28.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2008. 2. 12.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국무회의 직후 당시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의원면직으로 소관 국무위원이 없어 국회와 협의를 통해 박명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5.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한 사례

- 양식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석이어서 2014. 12. 30.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6. 부서 후 국무총리가 교체되어 공포문서와 관보의 부서자 명의를 다른 사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등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9. 9. 28. 부서하고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재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다음날인 9. 29.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함에 따라 2009. 10. 7.자 관보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부서자로 기재하여 공포하였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제출법률안에 대해서는 2009. 9. 30. 당초 부서자인 한승수 국무총리 명의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7. 부서 후 공석이 되어 관계 국무위원 부서를 공란으로 하여 관보게재 의뢰한 사례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4. 6.)은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 후 부서를 하고 나서 사퇴해 공석이 되어 2014. 6. 17.자 관보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부서는 공란으로 하여 공포하였음.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한 후 공포의뢰 전에 바뀐 경우 관보에는 새로운 국무위원 명의로 공포의뢰하되, 공포문서의 부서는 그대로 둔다.

또한, 공포문서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공포의뢰도 하였으나, 공포일(관보 발간일) 전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바뀌어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된 명의를 서로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공포일 당시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명의로 변경한다.

(3)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부서권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안전을 제출하고 부서권자가 되며, 그 외의 경우(국무총리가 제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권자가 된다.

☞ 부서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도 대리참석한 자의 대리부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국무위원 또는 다른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하며(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상에 대리부서가 불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다), 특히 법률안은 반드시 부서를 보완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신설기관 소관 법률 공포안 부서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부서하였으나,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3) 재가 절차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작성한 재가문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및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다만,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하더라도 기존에 종이문서로 진행하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의 부서가 끝나면,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국무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총무비서관실 및 의전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때, 법률의 시행일이 임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된 경우와 같이 긴급하게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재가안전임을 표시하고 “긴급재가사유”를 기재한 재가문서를 작성한 후 재가 절차를 진행한다.

특이 재가 사례

1.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

-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1988. 11. 9.):**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1988. 11. 3. ~ 11. 14.) 중인 11월 4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탄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예산부수법안이므로 국회의 예산심의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이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가를 하여 같은 해 11월 9일 국회에 제출함.

2.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령안을 공포한 사례

- 법률 및 대통령령 공포안 재가·공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24건의 법률과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등 69건의 대통령령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3.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례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기간(2004. 3. 12. ~ 5. 14.) 중에 사면법중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에 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재의요구안 2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으로 재가하였음.

4. 전임 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임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가 부서한 후 신임 대통령이 재가를 하여 공포한 사례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1998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1998. 2. 28. 임기만료) 주재로 위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당시 고건 국무총리(1998. 3. 2.까지 재임)와 심우영 총무처장관(1998. 3. 2.)이 부서를 한 후 신임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하였음.
- 대통령비서실직제중개정령에 대하여 2003. 2. 24.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가하여 공포하였음.

5. 대통령이 국외출장 중 현지에서 재가한 사례

- 2008. 11. 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47건, 철회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을 국외출장 중인 대통령에게 안보메일로 보내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에서 출력, 대통령이 재가하고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송부(11. 20.)되어 총리 및 국무위원이 부서함.

다. 법률안의 국회 제출

종전에는 국회제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면 법제정책총괄과는 재가문서를 발송처리를 하고, 법령안 소관부처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그 주 금요일까지 국회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법률안의 인쇄물 5부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과 국회의 e-의안시스템이 연계되어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종이문서 제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종이문서 제출은 생략하는 것으로 국회 의안과와 협의, 2021년 제18회 국무회의(2021. 4. 27.)에서 의결되는 법률안부터 종이문서 제출 없이 전자문서로만 접수하고 있다.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 ① 국무회의 의사일정 확정 이후, 법률안 이상 유무 및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 등 확인 요청(법제정책총괄과 → 해당 부처 법무담당관실)
- ② 국무회의 의결 및 재가 완료 후, 위 사항 최종 확인 및 법률안 전자문서 발송(법제정책총괄과 → 의안과), 발송 완료 사실 통지(법제정책총괄과 → 해당 부처 법무담당관실)
- ③ 전자문서 도달 및 요건 구비(접수 가능) 여부 유선전화로 확인(해당 부처 → 의안과)
- ④ 요건 확인 후 접수 또는 반송 여부 유선전화로 안내(의안과 → 법제정책총괄과 및 해당 부처)
* 보완 필요 시 반송 후 보완 완료 시 접수

당초 국무회의 상정안건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 중 주요토의과제, 관계법령, 입법예고실시 결과 등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제외한다[제안이유·주요내용,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만 표시]. 다만, 참고사항 중 국회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은 다음 예시와 같이 포함하여 제출한다.

국회제출 법률안에 기재되는 참고사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또는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항 및 제○조○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라. 국회제출법률안의 철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90조제3항).

법률안 철회 관련 규정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③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안의 철회 절차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절차와 동일하다. 즉 법률안 철회안의 심사의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철회안: 붙임 제15호서식),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실무사례

법률안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 동시 제출⁴¹⁾

철회 대상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었는지에 따라 법률안 철회의 효력발생 시기를 달리한다. 즉,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로 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철회안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철회 대상 법률안의 상태를 조회한 결과, 해당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회부되었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경우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상임위에서 검토보고가 있었거나, 법률소위에 회부된 경우에는 철회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있어야 하므로, 철회안과 대체 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할 수 없고, 철회안을 먼저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 철회한 후 대체법률안을 제출한다.

41) 2011년에는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8. 12. 31. 국회에 제출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철회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마.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의 처리

1) 선람 및 재의요구 의견 확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접수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즉시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여 재의요구 여부 및 명백한 오류 여부를 파악한다.⁴²⁾ 이때 소관 법제관실에도 이송된 법률안을 통지하여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하도록 한다.

실무사례

이송 법률안 오류 여부 확인 방법

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의 최근통과의안 메뉴에서 해당 법률안 확인



4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간에는 문구 등에서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차원에서 띄어쓰기 또는 일부 자구를 수정한 결과이며, 오탈자 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의안과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2. 의결결과(원안의결, 수정의결, 대안의결)

① 원안의결

제안번호	제안명	제안자	제안당	제안일자	제결일자	제결결과
제100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1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수정의결
제102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대안의결 (대안을 원안의결)
제103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4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5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6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7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8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09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제110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원안의결

② 수정의결

제안번호	제안명	제안자	제안당	제안일자	제결일자	제결결과
제101호	국회의원 김성환의 국회의원직정당법안	김성환	국민의힘	2023-09-01	2023-09-01	수정의결

상임위 의결결과 (수정의결) 대로 본회의 의결

③ 대안의결

기관주최업무와 및 최종의결은 최종 권위 없음 (정부조직법 제104조제1항)

심사보고서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심의결과

구분	제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결과	결정일자 및 의사내용	비고사항
	2022-00-01	2022-06-27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1차 심의(2022-06-27) 결의(7월 1일)

대안은 심사보고서 없음

구분	제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결과	결정일자 및 의사내용	비고사항
위원회 심의결과	제1차 심의(2022-06-27)	2022-06-27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1차 심의(2022-06-27) 결의(7월 1일)
	제2차 심의(2022-07-01)	2022-07-01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2차 심의(2022-07-01) 결의(7월 1일)
	제3차 심의(2022-07-01)	2022-07-01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3차 심의(2022-07-01) 결의(7월 1일)
	제4차 심의(2022-07-01)	2022-07-01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4차 심의(2022-07-01) 결의(7월 1일)

상임위 의결결과인 대안을 원안결

구분	제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결과	결정일자 및 의사내용	비고사항
위원회 심의결과	2022-00-01	2022-06-27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1차 심의(2022-06-27) 결의(7월 1일)

대안으로 통합되어 폐기된 법률안들
 - 클릭하면 각 법률안 정보로 링크됨
 - 각 법률안의 심사보고서 확인 필요

구분	제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결과	결정일자 및 의사내용	비고사항
위원회 심의결과	2022-00-01	2022-06-27	국회기획재정팀	합의	2022-07-01	제1차 심의(2022-06-27) 결의(7월 1일)

부속파일

3.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송부한 이송법률안과 심사보고서 또는 대안의 법률안을 비교하여 수정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법률공포안의 작성

법률공포안(붙임 제16호서식)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의결주문, 제안이유,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재의요구 여부, 관계법령을 작성하고,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붙여 작성한다. 법률공포안의 제출자는 국무총리(법제처 소관임을 명시)가 된다.

3) 제안설명자료의 작성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안설명을 위해 안전요약서를 만들게 되는데, 제안설명자료(붙임 제17호서식)는 제안이유, 공포대상 법률안 내역(정부제출 법률안의 건수와 원안의결·수정의결·대안의결 건수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건수 등), 중요 법률안 1~2건의 주요내용 그리고 재의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처장 결재를 받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게재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중요 법률안은 1건으로 선정하고, 공포대상 법률안의 목록과 주요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한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하므로(「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상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한다.⁴³⁾

4) 법률공포안 제안설명

국무회의 시 법률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법제처장이 한다.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절차

법률공포안·제안설명자료의 작성과 국무회의 상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의안정리 및 국회의장 결재를 받은 후 정부에 이송되며, 대략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정부로 이송된다.
2.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소관 부처(법무 담당 부서)에 이송 법률안을 통보하여 명백한 이탈자 유무, 재의요구 여부, 국회 의결내용과의 상이 여부, 하위 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 여부 등을 확인(붙임 제18호서식)하고, 각 법제관실에는 공포안

43) 15일의 공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안전의 국회 심사보고서를 입수하고, 미리 법률공포안 및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해야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법률안 등)을 배부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붙임 제19호서식)하도록 한다.

3. 법률안의 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소관 부처나 법제관실에서 통보한 경우, 법제정책총괄과는 해당 부분을 즉시 국회사무처(의안과)에 통보하여 수정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의안과에서는 즉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수정 여부에 관하여 협의한다.
4. 협의 결과 수정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정된 법률안을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로 통보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송된 법률안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국회와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난 후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바. 공포

1) 관보게재 의뢰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공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때에는 법률공포 대장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 관보시스템에서 법률공포안을 관보게재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한다.⁴⁴⁾ 통상 관보발행일로부터 3일전(평일 근무일 기준으로) 18시까지 관보등록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법령의 공포일 및 효력 발생일

법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며(「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일반적으로 법령의 부칙에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포한 날,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장래 특정 일자 등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시행일의 기간 계산을 할 때에는 「행정기본법」 제7조⁴⁵⁾에

44) 종전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에 공포안을 첨부한 공문을 송부하여 관보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2021. 3. 22.부터는 각 기관에서 관보시스템(www.gwanbo.go.kr)에 접속 후 공포안을 관보게재문으로 직접 작성하여 관보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45)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따라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이 지난 후에 공포된 경우 해당 법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칙에 시행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날짜보다 하루 전에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

공포의 지연과 시행기일의 효력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55.6.21. 4288형상95 판결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위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법률 공포 통지

법률안을 공포한 후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제2항).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 공포 목록과 공포안을 전자문서로 국회(의안과)에 통지한다.

4) 관보정정

법령이 공포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관보정정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당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안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명백하고도 경미한 사항(오타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 등)에 한정된다.

관보를 정정하려면 법령의 관보게재를 의뢰한 기관(법제처 또는 법령안 주관기관)이 관보의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발행기관인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관보시스템을 통해 정정관보등록(붙임 제20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보정정 절차

▶ 법률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관실, 국회 등)
2. 국회 관보정정 요청: 국회 사무처 의안과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3. 관보정정: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 법제정책국장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대통령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법제처 내): 법제관 ⇒ 법제국장 ⇒ 법제정책총괄과
3. 관보정정 요청(외부시행): 법제정책총괄과 ⇒ 법제정책국장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총리령·부령

1. 오류사항 발견(소관 부처, 법제관실 등)
2. 관보정정 요청사항 확인: 소관 부처 ⇒ 소관 법제관실 확인 ⇒ 법제국장
3. 관보정정 요청: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사. 법률안의 재의요구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

1) 법률안 재의요구의 처리 절차

가) 재의요구 여부 파악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접수 즉시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부처에 이송사실을 통지하고, 재의요구 여부를 파악한다.

나) 재의요구안의 심사요청

해당 부처에서 재의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의요구 이유를 명시한 재의요구안을 작성하여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법제처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재의요구안의 심사를 마친 담당 법제관은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붙임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한다.

라)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로부터 재의요구안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처에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제안자는 소관 부처의 장인 국무위원이 되며(법률공포안은 국무총리가 제안자가 되며, 실제 제안설명은 법제처장이 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공포안과 마찬가지로 차관회의 상정은 생략한다.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

-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을 모두 상정한다.
 - ② 먼저 법제처장이 각 법률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 소관부처의 재의요구가 없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하고,
 - 소관부처의 재의요구가 있는 법률공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재의요구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논의를 한 후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다.
 - ③ 이어서, 소관부처의 장이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취지를 설명한 후에 토의를 진행한다.
 - 토의 결과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공포안은 부결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다.
 - 반대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안은 부결되고, 해당 법률의 공포안이 의결된다.

마) 재의요구안의 국회제출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해당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던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재의요구 공문(붙임 제22호서식) 및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 처리 절차

순서	관 계 기 관	업 무 내 용
1	국회(의안과)	○ 법률안 정부이송
2	법제처	○ 법률안 접수·선람 ○ 접수 당일 법률안 소관 부처에 통보
3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입안 및 심사요청
4	법제처(법제관)	○ 재의요구안 심사, 처장 결재
5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의뢰
6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 국무회의 상정
7	법률안 소관 부처	○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제안 설명
8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 재의요구안 재가 상신
9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 재의요구안에 부서
10	대통령	○ 재의요구안 재가
11	법률안 소관 부처	○ 재의요구안 국회제출 - 이송일부(초일 제외) 15일 이내 제출

바) 재의요구안의 국회접수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는 지체 없이 소관 위원회·교섭단체 및 의사과 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 등에게 배부한다.

사) 본회의 심의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 재의요구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여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아) 본회의 의결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재의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4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부결되고, 의결에 부치지 않고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자) 재의결과 통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그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국회는 그 법률(재의결되어 법률로 확정되었으므로 법률안이 아님)을 정부로 이송한다.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부에 통지한다.

차) 공포

대통령은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면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재의결된 법률의 국무회의 상정 여부

- 국회에서 재의(再議) 결과 가결(可決)되어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경우 이에 대한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공포절차만 남게 되므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불요설)와 법률로 확정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대통령재가를 통한 공포라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확정된 법률에 대하여도 대통령은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제53조제6항 :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국무회의 상정 필요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필요설에 입각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재의안이 국회에서 재의결(2003. 12. 4.)되어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회의(2003. 12. 6.)를 거쳐 공포한 사례가 있다.

2) 재의요구 사례

정부수립 이후 2016. 12. 31. 현재까지 총 66건의 법률안 재의요구⁴⁶⁾가 있었다. 이 중에 「임시토지수득세법」 등 31건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법률로서 확정되었고, 「정부조직법」 등 32건은 폐기되었으며, 「탄핵심판법」 등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하였고, 제19대 국회에 재의요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2015년 재의요구)은 폐기되었다. 제17대 국회에 재의요구된 법률안 2건은 폐기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공포되었으며, 제18대 및 제20대 국회에서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없다.

법률안 재의요구 현황

구 분	거부권행사 법률안 수	처 리 결 과			철회
		법률로 확정	폐기	계류	
계	66	31	33		2
제헌 국회	14	12	2		
제2대 국회	25	18	7		
제3대 국회	3		2		1
제4대 국회	3		3		
제6대 국회	1				1
제7대 국회	3		3		
제9대 국회	1		1		
제13대 국회	7		7		
제16대 국회	4	1	3		
제17대 국회	2		2		
제18대 국회	0				
제19대 국회	3		3		
제20대 국회	0				

46) 특이 사례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후 다음 회차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제7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한 사례(20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대 국회 이후 재의요구 사례

연번	법률안 제명(재의요구일)	재의요구 사유
1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1969. 1. 20.)	- 사실상 집행 불가능
2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1969. 1. 20.)	- 법리상 곤란(법체계 부조화) - 정부정책기조와 상충
3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1970. 8. 8.)	- 법리상 곤란(판례반영)
4	국회에서의원·감정등에관한법률안(1975. 7. 25.)	- 국가안위 위협 - 법리상 곤란(법률 간 모순·상충)
5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1988. 7. 15.)	- 헌법 위반(권력분립) - 법리상 곤란(헌법상 근거 불분명)
6	국회에서의원·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1988. 7. 15.)	- 헌법 위반(권력분립) - 국가안위 위협 - 법리상 곤란(법률 간 상충, 법체계 부조화)
7	1980년해직공무원의복지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1988. 12. 30.)	- 헌법 위반(권력분립) - 사실상 집행 곤란 - 법리상 곤란(인사관계 법령과 상치, 사적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법률로 강제)
8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정부정책기조와 상충
9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사실상 집행 곤란 - 법리상 곤란(법률 간 상충)
10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1989. 3. 25.)	- 정부정책기조와 상충
11	국민의료보험법안(1989. 3. 25.)	- 헌법 위반(재산권 보장)
12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복합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003. 7. 23.)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충
13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2003. 11. 25.)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 부당한 정치적 공세
14	사면법중개정법률안(2004. 3. 25.)	- 대통령권한의 과도한 제한
15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2004. 3. 25.)	- 과도한 재정부담
16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7. 8. 3.)	- 과도한 재정부담 - 법리상 곤란(법체계 부조화)
17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2008. 1. 28.)	- 과도한 재정부담 - 법리상 곤란(소급입법)
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013. 1. 23. 재의요구)	- 법리상 곤란(법체계 부조화) - 과도한 재정부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5. 6. 25. 재의요구)	- 헌법 위반(행정입법권 침해) - 집행 곤란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16. 5. 27. 재의요구)	- 헌법 위반(권력분립) - 집행 곤란

가. 총리령안

총리령안은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난다. 법제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총리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3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총리령안에 대하여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공포(관보게재)를 의뢰한다. 총리령이 공포되면, 법령안 주관기관은 법령입안 시스템의 법안정보카드에서 공포안과 공포번호를 등록하고, 법제처에 공포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부령안

부령안도 각 법제국장의 결재로써 법제처 심사가 끝나며, 법제관실은 국장의 결재가 완료된 부령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시스템으로 부령안 심사확인증(붙임 제24호서식)을 생성한 후, 심사결과 공문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온-나라 시스템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부령안에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부령이 공포되면, 법령안 주관기관은 정부입법시스템에서 공포 안과 공포번호를 등록하여 법제처에 공포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부령(특정 부령이 둘 이상 부처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심사의뢰할 때 관련 부처가 모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는 실제 입법을 추진하는 부처를 담당하는 법제관실에서 심사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부처 모두에 심사안과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보내어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도록 한다. 공동부령의 형식과

개정방식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1년판)」(p.773)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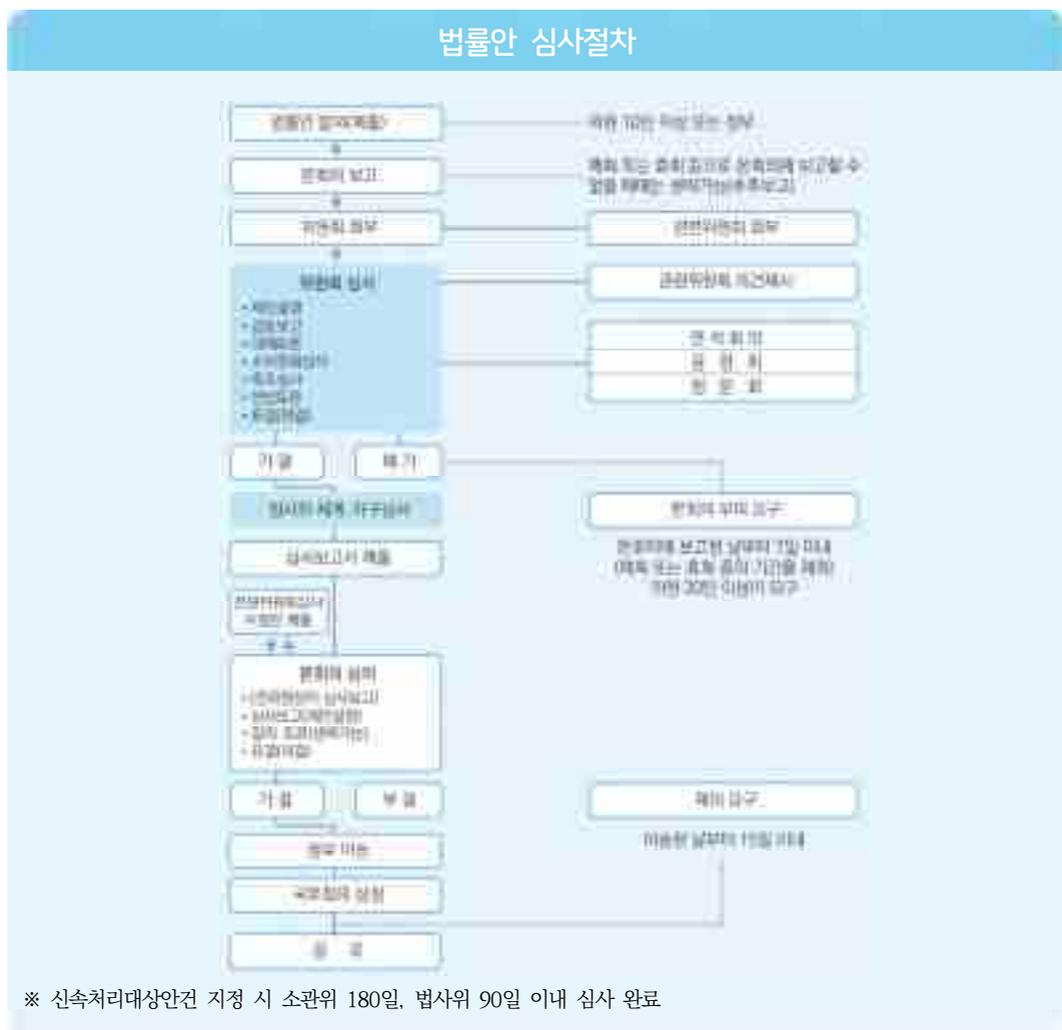
다. 조약안

법제처의 심사(처장 결재)를 마친 조약안에 대해서는 그 검토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조약안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국회동의를 요하는 경우) 등 조약의 체결, 비준 절차와 공포 절차는 외교부에서 진행한다.



법률안의 국회심의

이 장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⁴⁷⁾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수정의결 또는 대안의결 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의원입법의 제출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의결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의 처리절차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의 절차는 앞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부제출 법률안과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47) 정부제출 법률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관한 이 장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안편람』(국회사무처 의사국, 2012)을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관련 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가. 입법 준비

특정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당 안의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정책위원회 등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를 두고 있으며, 분야별로 당전문위원을 두어 정책개발에 힘쓰고 있다.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 소속으로 정책연구위원을 두어 입법정책의 심의·결정과정에 당과 국회와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관계에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한편, 2009년 11월 6일 설립된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입법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의원의 입법준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 법률안의 기초

입법을 추진하려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보좌관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제관(변호사·박사 포함)이 배치되어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 지원과 각종 입법정보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실의 입안지원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작성해서 법제실(소관 법제과)로 법률안 입안의뢰서를 제출한다.

다. 국회제출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되,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한다(「국회법」 제79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0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가. 제안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나. 소관 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⁴⁸⁾ 특정 사항에 대한

48)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37조).

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소관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소관 사항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제출 법률안의 유형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제출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위원회제출대안”은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소관 위원회가 원안을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로운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⁴⁹⁾ 즉, “대안”은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사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비하여 “위원회안”은 원안의 존재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라. 제안 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7.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항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사항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16.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 관련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
- 49)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제출 1건, 의원발의 3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한 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 때 원안이라 할 수 있는 4건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되며, 대안의 제안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조의2제1항).

위원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본회의 심의 중에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94조).

03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가. 법률안의 접수

법률안의 접수는 국회사무처 의사국(의안과)에서 담당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⁵⁰⁾ 국회에서의 안건처리는 각 안건별로 이루어지므로 2개 이상의 법률안을 1개의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서 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 미비된 문서가 있는 경우 우선 접수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실무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제출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50) 이와 관련하여 제헌국회 제1회 제57차 본회의(1948. 9. 4.)에서 「유엔총회정부대표파견에관한건」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례와 2001회계연도결산 등 대통령 명의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음을 이유로 반려(2002. 9.)된 사례 등이 있다.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⁵¹⁾ 그러나 같은 제출자가 같은 조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중복하여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삭제한 조항을 나중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서로 모순된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제출자 의사의 단일성 요구에 반하고 국회의 회의 진행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⁵²⁾한 후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⁵³⁾.

나. 본회의 보고

법률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국회법」 제81조), 추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그 때까지 접수된 법률안을 일괄 보고하게 된다.

다. 위원회 회부⁵⁴⁾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되,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1) 소관 위원회의 결정

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의 소관

51) 정부가 1993. 10. 30. 제출한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1년 이상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협상 결과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이미 제출한 법안과는 별도의 다른 내용의 법률안을 1994. 11. 28.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각각 의결한 사례가 있다.

52) 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된다(「국회법」 제90조).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2006. 7. 20. 제출하여 계류 중인 법안과 일부 규정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2007. 2. 7. 철회안을 제출하여 2007. 2. 21. 철회하고 해당 법률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54)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있어서 위원회 심사과정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을 결정하게 된다.

가)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그 법률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국가정보원이나 각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제출⁵⁵⁾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부서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지 않고,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부처가 둘 이상이어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여 제출하는 법률안은 어느 부처 업무가 법안의 중심을 이루는지, 어느 부처의 업무비중도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1개 위원회만을 소관 위원회로 결정한다. 공동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나)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 연혁을 참고하고, 제정 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내용 및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⁵⁶⁾

다) 국회의장의 소관 위원회 결정

법률안이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55) 이에 관하여는 국무위원이 아닌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부서권자 부분(p.76)을 참고

56) 「정부조직법」 상 어느 부처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⁵⁷⁾가 있는 경우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법률안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고, 그 주문에 명시된 법률안만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로 제한된다. 어떤 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칭(예 :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법률안기초 특별위원회 등)이나 주문내용(예 : ○○○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 또는 법적·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⁵⁸⁾

2) 관련 위원회 회부

의장은 1개의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3조제1항).

실무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관련 위원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법률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 법률의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시 자구 수정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 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특례, 조세특례, 부담금 설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경우

57)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제44조제1항).

58) 따라서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위원회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을 회부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사항 등을 해당 법률에서 의제·간주하는 경우

나)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한 법률안
- 정부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규정할 때 2개 이상의 부처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이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2항).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3항). 관련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사기간 지정

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하면 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관련안건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안건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한정했다(「국회법」 제85조제1항). 심사기간의 지정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한 후에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지정한다.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국회법」 제85조제2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원회 심사⁵⁹⁾

1)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한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

2)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제49조제2항).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제59조).

한편,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의안의 상정간주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따른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법」 제59조의2).

3) 제안자의 취지 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한다.

59)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① 위원회 상정 ② 제안자의 취지 설명 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④ 대체토론 ⑤ 공청회 또는 청문회 ⑥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⑦ 축조심사 ⑧ 찬반토론 ⑨ 표결의 순서로 한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정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진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쉽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한다(「국회법」 제58조제9항).

5) 대체토론(大體討論)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은 대체토론을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국회법」 제58조제1항). 위원회가 법률안을 소위원회 또는 안건조정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58조제3항, 제57조의2제1항).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을 비롯하여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6)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6항).

7)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4항).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제6항 및 제7항).

8) 축조심사(逐條審査)

축조심사는 법률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안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58조제5항).

9)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이미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은 제외)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안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안전을 심사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안전 회부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데,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로 하되,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의2제2항). 다만,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전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그 활동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9항).

▶ 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안전을 심사하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6항). 의결된 조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전을 표결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7항).

조정위원회에서 활동기한 내에 안전이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전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57조의2제8항).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소관위)

「국회법」 개정(2012. 5. 25.)을 통해 도입된 안전신속처리(Fast track)제도란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의원 또는 위원이 안건의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미종료 시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은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단계 모두에서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및 지정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1항). 의장은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제2항).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절차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는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3항).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제4항). 다만,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8항).

마. 법률안의 통과 형태

1) 원안의결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아무런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 포함)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수정안의 범위는 ① 문안의 내용 및 체계·자구의 변경 ② 문안의 추가 또는 삭제 ③ 제명의 변경 ④ 조·항 등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조·항 등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의 통합 등 형식의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대안(代案)의결

대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이 있다.⁶⁰⁾

대안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 ▶ 1개의 법률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2개 이상의 안을 각각 심사한

60) 통상 대안이라고 할 때에는 위원회제출대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는 경우⁶¹⁾

- ▶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 의원발의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 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 ▶ 한 개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안으로 하거나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
- ▶ 제명이 다른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거나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합하여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경과를 가결(원안, 수정) 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①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순수부결의 경우 ②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다.⁶²⁾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쳐지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제87조).

61)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대안이라고 하면 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62) 실무상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부결하는 경우는 소수이고, 위원회대안을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1) 법률안의 상정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⁶³⁾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의뢰된 경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59조의2).

2)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다⁶⁴⁾(「국회법」 제86조제5항).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의 지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12. 5. 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63)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 유지, 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의 용어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64)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2021. 9. 14.)되었음.

법률안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 기간 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바로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는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지체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3항).

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된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일반의결정족수)로 표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4항).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심사절차(법사위)

「국회법」 개정(2012. 5. 25.)을 통해 도입된 안전신속처리(Fast track)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단계에도 적용된다. 다만,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등 일련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리절차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그 지정일부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신속처리대상 법률안은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제3항).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제5항).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경우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66조제1항). 심사보고서는 ①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일자, 위원회 회부일자, 상정 및 의결 일자 등 주요 심사경과 ② 제안설명의 요지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④ 대체토론의 요지 ⑤ 소위원회 심사내용 ⑥ 찬반토론의 요지 ⑦ 수정된 경우 수정안의 요지 ⑧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등 심사결과 ⑨ 소수의견의 요지 ⑩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의견 요지 ⑪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⑫ 기타 사항의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⁶⁵⁾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전원위원회⁶⁶⁾ 심사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65) 그 밖에 원안가결의 경우에는 원안 및 대비표(일부개정된 경우)를 붙이고, 수정안가결의 경우에는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조문대비표와 최종안의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66) 전원위원회란 의원 전원이 위원이 되어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회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사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6대국회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으로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된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장의 심사 보고(전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질의·토론 및 표결의 순으로 처리된다.

차. 법률안의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1항).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⁶⁷⁾

1) 의안과의 법률안 확인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법률안의 조항, 자구, 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나 누락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쇄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
- 소관 위원회 수정사항과 본회의 수정 시 그 내용의 반영 여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
- 인용 법률 및 조항의 적합 여부
-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 표기, 맞춤법 등의 적합 여부
- 그 밖에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67) 예를 들면 법률안 중 본회의에서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경우 다음 조문부터 차례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한다든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지 상호 저촉됨이 없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 숫자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2)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 확인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오자·탈자·누락여부 등 유인물의 정확성과 해당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의 정확한 정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확인 시 정정하도록 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 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공포된 후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내용과 유인물의 정확성은 물론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국회법」 제97조) 또한,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 간주된 의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의 경우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국회의장의 이송 결재

의안과에서는 법률안 확인 및 교정 초안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회송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를 이송공문에 붙여 의장 결재를 받는다.

5) 법률안 이송

의안과는 의장의 이송 결재를 받은 법률안을 공문과 함께 정부(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이송한다.



VI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가. 개요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정부입법계획은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정책 등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조정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 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연구와 법안심의를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 정책의 입법수요를 종합·관리하여 정부입법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 방법, 제출 시기와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법령안에 대한 부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및 제8조제1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률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⁶⁸⁾ 또한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⁶⁹⁾

68) 입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회제출일 120일 전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안 추진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9) 해당 연도에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10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9. 2.까지 국회제출 필요, 2015년의 경우 9.12).

부처 입법계획의 내용

내 용	세 부 사 항
○ 입법의 필요성	-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 입법추진배경 -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관련단체 등의 입법의견
○ 내용요지	-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 추진일정	- 입안시기 -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 - 법제처 제출시기 - 국회 제출시기 - 시행 예정일
○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1항」.⁷⁰⁾

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입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부처입법계획 중 입법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2항).

확정된 정부입법계획⁷¹⁾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70)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므로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71)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확정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여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해당 입법계획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3항),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⁷²⁾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⁷³⁾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 사유사항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요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⁷⁴⁾ 다만,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거나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3항).

72)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3) 매년 초 정부입법계획 수립 후, 각 부처의 빈번한 수정으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입법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는 정책검토가 충분히 성숙된 법령안을 중심으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74) 또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변경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02 훈령·예규 등의 심사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사전심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사후심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0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가. 목적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으로써 법률에 담긴 정부정책의 적기시행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입법의도의 실현과 국회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소관 법제관실 및 소관 부처에 해당 법률안을 송부하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지 여부를 협의(붙임 제19호서식 참조)한다.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은 일정한 요건·기준 또는 절차 등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시행 가능한 법률을 말한다. 단순히 관련 조문 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이미 대통령령 등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 등은 하위법령 마련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을 공포할 때마다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 및 법제관실과 협의하여 확정된 하위법령 마련 대상법률 목록을 법률 공포 후 지체 없이 소관 부처(법무담당관실)와 법제국에 통보한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특별관리

-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이 국민·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신설·변경 또는 조례제정기준이거나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 또는 행정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입법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공포되어야 정부 주요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다.
- 이러한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안 국회 의결 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협의, 사전심사 등 지원을 실시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 특별관리대상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기준일은 소관부처 및 법제국과 협의하여 입안소요기간 및 최소입법필요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보다 일정기간 일찍 공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선정한다.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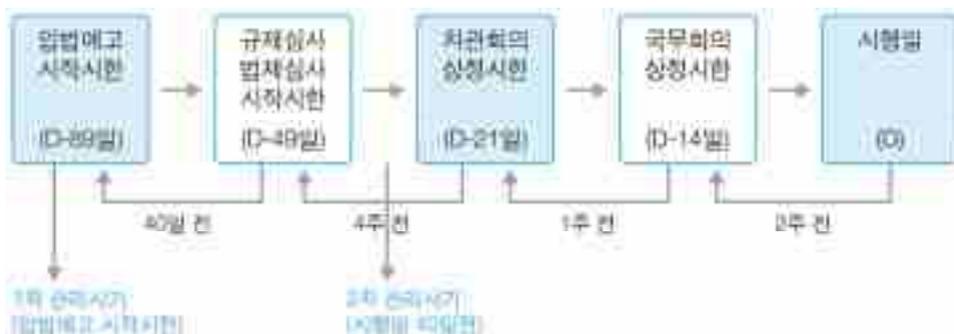
소관 부처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마치고,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3항). 이를 위하여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매해 초 해당 연도의 각 부처 소관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의 목록을 송부하며, 연도 중 공포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하위법령 마련 대상 법률 목록을 추가로 송부하고, 하위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를 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4항). 그 외에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회의, 법무담당관회의 등을 통하여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수시로 독려하도록 한다.

과거에 비해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제때 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부분의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의 입법절차 지연으로 하위법령이 시행일을 넘겨 마련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6월부터는 시행일부터 최소입법소요기간(약 90일⁷⁵⁾을 역산한 시점부터 2차례에 걸쳐 소관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즉, 시행일 전 90일이 될 때까지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1차 관리), 시행일 전 40일이 될 때까지 아직 법제처에 심사의뢰되지 않은 법령은 소관부처에 규제심사 진행상황, 부처이견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입법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한다(2차 관리).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 입법추진상황 점검·관리체계 개요도



또한, 2014년 6월부터는 입법소요 최소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 90일전부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상황의 점검을 실시하여, 입법절차 지연 시 경보·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를 정부입법시스템으로 구현해 운영하고 있다.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는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지연되는 경우 법안의 소관 부처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송부하여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75) 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1개월, 차관·국무회의 2주,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 1주를 포함한다.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 운영

- 녹색등(●) : 정상추진 중인 경우
- 황색등(●) : 시행일 90일전까지 입법예고 미 실시 또는 시행일 40일 전까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적색등(●) : 시행일을 초과하여 제때 마련되지 않은 경우

라. 국무회의 상정 및 재가 소요시간 단축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인 경우에는 정상 안건⁷⁶⁾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포 시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비서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통령 재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법률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공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0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가. 개요

정부의 입법과정에서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거나 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처협의, 규제심사 또는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나 정부부처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76) 차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등록하는 안건을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2.5일~2일 전까지 등록하는 안건은 정상안건으로 등록하고 있다.

결정하고 그 견해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조율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부처 간 및 정부·국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한 후 법리적 쟁점 및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 및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부처 간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국회 심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된 사실을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가 국회 심의과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① 헌법 위반, 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 ②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③ 조세의 감면이나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④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⑤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다.

1) 법리적 쟁점

가) 헌법 사항 위반 여부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할 때에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및 평화국가의 원리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상의 주요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

법률안과 다른 법률 상호 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순·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하나의 법률안의 조문 상호 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적 지위를 갖는 다른 법률과 모순·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을 새로운 법률의 내용과 모순·저촉 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명백하게 모순·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의문이 없도록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다른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이 개정될 경우 상호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규제 관련 쟁점

해당 법률안에 허가·인가 등의 규제가 새로 도입되거나, 등록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거나 기존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정책상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예산 관련 쟁점

가) 조세의 감면 여부

법률안에 소득세 등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므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법률안에서 정하는 정책적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 등 해당 법률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단기·중기 또는 장기적 재정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재정보화가 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금 또는 부담금의 신설·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재정정책과 회계제도, 기금 및 부담금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쟁점

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

법률안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조직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조직을 일괄하여 통합 규정하므로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도 그것이 법률사항일 때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나) 인력의 소요 여부

개별 법률안에 인력의 소요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게 되므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수반되게 되어 해당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

가)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유무

법률안에 둘 이상의 부·처·청과 관계되는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청이 국회를 상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된 의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그 법률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정책적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법률안에 경쟁제한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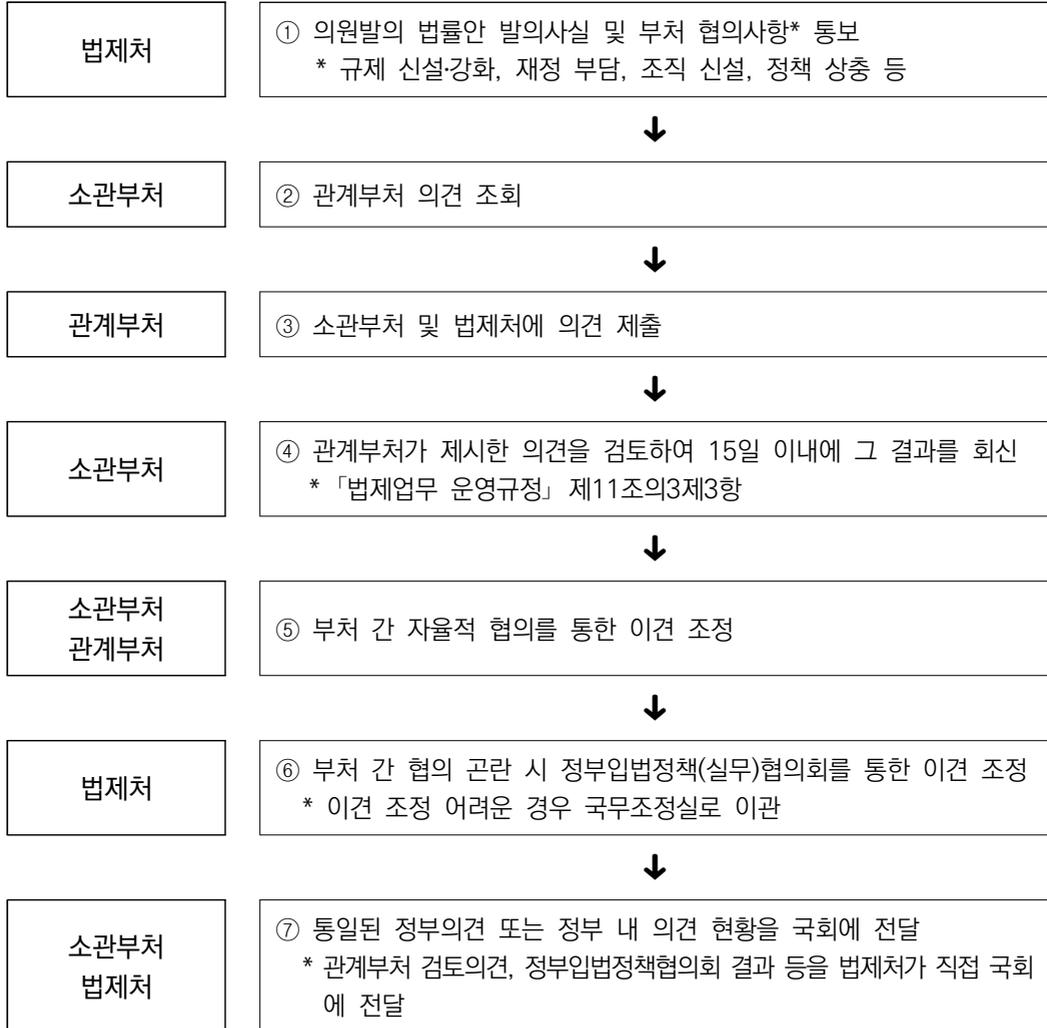
나)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법률안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정책집행 당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업무 흐름도



1)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사실 통보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에서 해당 법률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이를 접수한다)되면 국회의장(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은 그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배부(인쇄 또는 전산망에 입력)하고, 본회의에 보고(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과 연계되어 있어 발의된 법률안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확인된 발의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 통보 및 검토

가) 법률안의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리적 쟁점, 예산, 조직, 규제, 정책 상충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가 필요한 조문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나)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검토의견서에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계부처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된다.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통보한 검토의견 중에서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검토의견을 함께 보낸다.

1. 조세 및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인력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규제 관련 사항: 국무조정실
5. 다수 부처 관련 사항: 해당 법률안에 포함된 정책과 관련되는 부처

다) 법률안의 국회 심의 단계별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해당 상정 및 의결 사실을 법률안의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3) 부처 간 협의

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 또는 검토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부처는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나) 소관부처의 협의 결과 통보 등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해소되어 합의된 경우 소관부처는 그 결과를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견조정 요청은 소관부처는 물론 관계부처도 할 수 있다.

4)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이견조정

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되지 않아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한 결과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는 그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부처도 국회에서 의견조화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의견대로 국회에 대응하여야 한다.

5) 국무조정실 조정의뢰 등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제처에서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하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가. 개요

1) 평가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대상기관

- 47개 중앙행정기관(부 단위 19개, 처·청·위원회 단위 28개)

구 분	기 관 명
부 단위 (19개)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처·청·위원회 단위 (28개)	금융위원회, 산림청, 경찰청, 국가보훈처,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질병관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나. 주요 평가사항

세부 평가부문	평 가 지 표
정부입법계획	▶ 이행률(입법계획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정도), 수정률(연중 추가·철회된 정도), 연중 안배정도(제출계획 안배 정도)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준수율(법정 입법예고기간 준수 정도) 등
하위법령 제때 마련	▶ 제때 마련율(제·개정 법률안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하기 위한 신속 추진 정도) 등

VII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01 편집용지의 규격 등

법령심사안은 한글77)을 기본 워드프로세서로 하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편집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가. 편집용지의 기본 규격

- 1) 용지 크기 : A4(210mm×297mm)
- 2) 용지 방향 : 좁게
- 3) 용지 여백(F7)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16mm	16mm	25mm	25mm	12.7mm	12.7mm	0mm

나. 문단 모양(Alt+T)

1) 문단여백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2) 줄 간격

줄 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하고, 의결서 부분의 각 제목(의결주문·제안이유·주요내용·주요토의과제 및 참고사항)의 위, 법령의 제명 및 부칙의 위·아래, 편·장·절 제목의 위는 모두 460%로 한다.

3) 문단 정렬방식

법령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 밖에 의결서 부분의 제목과 내용, 법령안의 공포번호 부분 및 내용 등은 양쪽 정렬로 한다.

77) 한글 2002 버전 5.7.6.3026 이상

4) 내어 쓰기 또는 들여 쓰기 기준

법령안의 경우는 조·항·호·목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내어 쓰기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와 같다. 가운데 정렬 방식인 경우에는 내어 쓰기를 하지 아니한다.

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Alt+L)

글씨체 및 글씨크기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장평은 100%로, 자간은 0%로 설정한다.

글씨체 및 글씨크기	해당 부분
- 신명조, 14pt, 가는 글씨체	- 의결서 부분의 내용, 법령의 공포번호, 제정·개정 주문, 법령안 내용, 편·장·절의 제목, 개정지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 부칙의 내용
- 신명조, 14pt, 진한 글씨체	- 부칙의 제목
- 신명조, 15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내용(법령 제명 부분 제외), 의결서 부분의 제목
- 신명조, 16pt, 진한 글씨체	- 법령의 제명, 신·구조문대비표의 제목
- 신명조, 17pt, 진한 글씨체	- 표지의 법령 제명 부분

02 표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표지는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되,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및 제출 연월일 중 월일에 해당하는 부분과 몇 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서 부여하므로 비워둔다.

표지의 제명 부분은 법령안의 제명과 같이 쓴다. 다만,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 및 의결서 부분의 제명은 한글로 표기한다.

제출자란에는 제출 법령안과 관련된 국무위원을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는 해당 장관의 명칭을 괄호 속에 명시한다. 다만, 제출자와 법령안 주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를 명시한다.

※ 법령안 제출자에 대한 자세한 표시방법은 p.60 이하를 참고하기 바람.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의 의결서 부분은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 과제 및 참고사항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의결주문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등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표지 부분과 같이 한글로 표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은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총리령안·부령안 등의 경우에는 “제안이유”라고 하지 않고, “개정이유” 또는 “제정이유”로 표기한다.

제안이유 또는 제정·개정이유 부분은 법령을 제정·개정하게 된 동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 1~2개만 기재하되, 필요 시 내용별로 단락을 나누거나, 개정원인, 개정내용, 개정효과로 단락을 나누어 기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에서 다룰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해야 한다.

제정·개정의 주요 원인을 둘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기 위하여(개정목적) ~하고(개정내용),”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기 위하여(개정목적) ~하며(개정내용),” 등으로 작성하고, “~하여(개정내용) ~하게 하고(개정효과),”라고 시작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하여(개정내용) ~하게 하며(개정효과),” 등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한다.

제안이유 작성 예문

○ 예시 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개선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2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예시 3

우리나라의 보험규모는 총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상법」의 보험편은 1991년 일부 개정 이후 전혀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법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에 법률의 공포일 및 시행일을 명시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안의 제정·개정 근거 및 법 시행일에 맞추어 제 때에 정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법률 시행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하위법령의 위임 근거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해당

법률의 대부분(하위법령과 관계없는 부분)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있는 일부 조항이 늦게 시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시행일(위임 사항이 있는 조항의 시행일)을 기재한다.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안이유 작성 예문

○ 예시 1

유치원의 장이 유아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1769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1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연도에 공포 및 시행된 경우에는 시행일의 연도 표기 생략

○ 예시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00호, 2007. 12. 27. 공포, 2008.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의 고유가 등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시 3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 등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대사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을 하려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부(診療簿)를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사업 등 동물진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시행일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법률 공포번호 및 공포일·시행일 표기 생략

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가·나·다.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간단하여 항목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리령·부령은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목 아래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항목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 및 해당 조문(안 제○조)을 기재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틀에 따라 세부항목을 나누어 기재한다.

- 첫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배경이 되는 사항
- 둘째 세부항목: 해당 제도(정책)의 내용
- 셋째 세부항목: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만일 세부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나 내용이 간단하여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항목의 제목은 기재해야 한다.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법안의 내용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1) 주요 내용은 한 가지 주제 단위로 작성한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나누어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제도의 도입 후 변경되는 사항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예시

청사의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함.

⇒ 청사의 기준 면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하주차장 면적만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또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면적을 기준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쓴다.

문장 구조나 어순에 주의하여, 내용 전달에 혼란이 없도록 유의한다.

4) 내용 파악이 어려울 정도의 생략이나 약칭 사용을 하지 않는다.

법령의 본문에서 약칭된 용어를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예
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명인제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의 조사 등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5) 제안하는 법령 자체의 내용을 제시한다.

예
시

국방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려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함.
⇒ 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결과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함.

주요내용 작성 예문

가. “〇〇제도(정책)의 도입(안 제〇조)” 또는 “〇〇제도의 폐지(현행 제〇조 삭제)” 등으로 표현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입법수요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하도록 함.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 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등으로 표현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함.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등으로 표현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또는 통계수치나 그 밖의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함.
- 앞에 “이와 같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법도 효과적임.

나. 〇〇제도(정책)의 도입(안 제〇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목(“〇〇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해당 조문의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작성 시 해당 조문 표기방법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안

- 모든 해당 조문을 “(안 제○조)”로 표기

○ 일부개정 법령안

- 하나의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해당조문 다음에 “신설” 또는 “삭제” 등 표기
 -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경우 : (안 제○조 신설)
 - 해당 조문이 삭제되는 경우 : (현행 제○조 삭제)
 - 해당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 : (안 제○조)
-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
 - 동일하게 신설·삭제·개정되는 여러 조문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맨 앞에만 “안” 또는 “현행”을 표기하고, 맨 뒤에만 “신설”·“삭제” 등 표기
 - 제1조, 제2조 신설 : (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 제1조, 제2조 삭제 : (현행 제1조 및 제2조 삭제)
 - 제1조, 제2조 개정 : (안 제1조 및 제2조)
 - 신설·삭제·개정되는 복수의 조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신설·삭제·개정되는 각 조문이 구분되도록 “안”을 별도로 표기하며, 쉼표(,)로 구분
 - 제1조 신설, 제2조 개정 : (안 제1조 신설, 안 제2조)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 (안 제1조 신설, 현행 제2조 삭제, 안 제3조)
 - 제1조 신설, 제2조 삭제, 제3조 개정, 제4조 신설, 제5조 삭제 : (안 제1조 및 제4조 신설, 현행 제2조 및 제5조 삭제, 안 제3조)
- 종전 부칙을 개정·삭제하는 경우
 - 부칙 제2조 개정 : (안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 삭제 : (대통령령 제00000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삭제)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법령 홍보와 해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고, 개정취지를 정확히 드러내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선 TF」(‘14. 3. 21.구성)에서 개선방향 및 사례를 마련하였는데, 개선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 ① 개선지침의 목적은 현행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작성방식을 허용하려는 것임.
- ② 작성시 '합축성'보다 '명료성'에 중점을 두어, 법안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보다는, 개정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 ③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법안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함.

- ▶ 법안 전체를 아우르는 입법 목적을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안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내용에서는 정책배경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
- ▶ 반면,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각각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요내용에서 충분히 작성하고, 제안이유는 간략히 작성할 수 있음.

2. 제안이유

- ① 개조식 문장이 아닌 산문형 문장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유지

- ▶ 개조식 서술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보고서 형식에 적합한 것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보다 명확한 입법의도의 전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부적합

- ② 제·개정의 주요 동기 1~2개를 기재하되, 법안 내용을 관통하는 정책 추진배경(현황, 사회적 문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 ▶ 추상적·평면적 입법목적의 나열이 아닌,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련 통계수치, 사례 등을 언급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
- ▶ 충분한 설명을 위해, 종전의 분량 제한(7~8행)이상 작성할 수 있으나, 가급적 1면을 넘지 않도록 작성하되, 필요시 더 길게 쓰는 것도 허용
-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1개의 긴 문장으로 이어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시 2~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기재

- 다만, 주요내용에서 세부 정책별로 입법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제안이유에서는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배경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함.

○ 예시 1 (정책 추진배경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설명)

〈현 행〉	〈개 선 안〉
<p>몰수·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p>	<p>최근 5년간 약 4,747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하였음에도,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납부 회피로 인하여 추징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현행법상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등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p> <p>이에 따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지도층 등의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려는 것임.</p>

○ 예시 2 (정책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

이자제한법안(2007. 3. 29. 제정)
<p>이 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p>

③ 법령안의 용어와 표현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용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모

-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용어와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함.
- ▶ 해당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처음 1회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하며, 2회부터는 법령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작성예문

○ 예시 (생활용어 병기 및 대표적 사례 제시)

〈현 행〉	〈개 선 안〉
<p>현행법상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혼시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p>	<p>-----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을 ----- 운 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 제외). -----.</p>

④ 어려운 용어의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을 부기하거나 그림과 표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제안 이유의 간결성을 해치므로 사용하지 않음.

- ▶ 다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보충설명 문장, 그림·표 등을 제안이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① 종전의 작성방식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항목의 제목을 기재하고, 3개 항목(정책 배경·내용·기대효과)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정책 배경’에는 제도 도입의 계기를 특정사건, 현황자료, 판례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되, 제안이유와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

작성예시

○ 예시 (현황제시를 통한 정책배경 설명)

〈현 행〉	〈개선안〉
<p>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p> <p>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p>	<p>나. 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p> <p>1) 다양한 민간자격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자격의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과당 경쟁체제, 등록자격관리자의 영세성, 과도한 영리 추구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p> <p>2)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p> <p>3) 등록 민간자격의 책무성 제고 등으로 민간자격의 신뢰 및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p>

③ 법령안의 용어와 표현보다 국민에게 익숙한 생활용어와 표현이 있으면, 이를 병기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는 보충설명하는 문장을 부기하여 설명

- ▶ 이 경우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법령안의 용어와 정확히 대응될 수 있는 생활 용어와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함
- ▶ 해당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처음 1회에 한하여 병기하도록 하며, 2회부터는 법령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 보충설명을 위한 문장은 어려운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없는 경우로서, 전문적·기술적 용어 및 표현의 설명에 활용하도록 함.

작성
예문

○ 예시 (보충설명 문장의 활용)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2012. 11. 20. 시행)

나. 준산업단지의 재정지원 확대(제10조의4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

준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면적 요건을 1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함.

*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

마.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지원 확대(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 신설)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 요건을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도록 함.

* 공장입지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

- ④ ‘정책 내용’에는 변경되는 제도는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설명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로 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면 표를 활용
- 구역 표시, 동식물 종(種)의 설명, 서류의 기재 방법 등 그림을 통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경우 그림을 적극 활용

▶ 이 경우 제도 변경의 내용을 충분히 서술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그림 등의 시각적 기법은 설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함.

○ 예시 (변경제도의 내용을 표로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 1. 1. 시행)				
다.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및 임차인의 범위 확대(제10조 및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에서 9천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를 확대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				
구 분		주 택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	9,500만원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	8,0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	4,500만원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서울특별시	2,500만원	→	3,200만원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2,700만원
	광역시 등**	1,900만원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해당 금액 이하 범위에 적용				

⑤ 주요내용은 조문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도입되는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 조문은 통합하여 간략히 재구성하도록 함.

- ▶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허가 규정 및 취소·정지처분, 벌칙, 과태료 규정” 등 제도의 일체를 구성하는 조문을 통합하여 설명하도록 함.
- ▶ 이 경우, 설명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조문은 모두 “(안 제○ 조)”로 제목 옆에 표시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작성예문

○ 예시 (관계 조문을 통합하여 설명)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2015. 1. 1. 시행예정)
<p>나. 계량기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감독(안 제8조, 제11조 및 제1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 규정상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을 위한 자격기준이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불분명하고, 자체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한번 자체수리자가 되면 별도의 사후관리 없이 지속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계량기 자체수리자로 지정하고, 자체수리자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수리자로 지정된 경우 자체수리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체수리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⑥ 그 밖에 흔히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볼드(강조) 처리, 밑줄 등의 글자 모양을 변화시키는 편집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 문자를 통한 의미 전달 외에, 편집 기법의 차이를 두어 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경우,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라. 주요토의과제

주요토의과제는 국무회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1980년 8월 27일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주요토의과제는 심사의뢰된 법령안에 대하여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는 총리령안·부령안의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주요토의과제를 활용한 주요사례

1. 신용관리기금법안(최초 사례, 1982년):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수혜자의 범위에 관한 재무부 의견에 대하여 소관 법제관의 문제 제기
2. 지방세법안(1995년):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및 내무부 간 이견
3. 은행법안(1996년): 합작은행 등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간 이견
4. 출입국관리법안(1996년):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문제와 관련 재경부·법무부·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간 이견
5. 공무원수당규정안(1998년): 국가경제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기말수당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퇴직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삭감 전의 기말수당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삭감 후의 기말수당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안(2002년 12월): 국토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국가보조에 관한 규정의 강행규정화 문제에 대하여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
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2003년 7월): 시간제 근로자 및 시간강사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 여부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중등교원 봉급분에 대한 부담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특히 서울특별시) 간 이견
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7년 1월): 대국민 행정작용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리적인 문제를 법제처에서 제기
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8년 11월): 특별교부세의 지원 대상에 국가적 장려사업 등 시책 사업을 추가하는 것과 도로보전분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이견

11.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2011년 10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도입되는 경관심의 제도가 환경성평가제도와 중복되므로 환경성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간 이견

법제관은 해당 법령안 중 중요한 쟁점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결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토의과제를 붙여 국무회의·차관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법제관은 ①에 해당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 작성 기준

- ①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3개월 이상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
- ② 관련 입법절차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된 이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법령안
- ③ 국회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조약과 그 밖에 외국·국제기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입법시한이 정하여진 법률안 또는 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으로서,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이 지연되면 적기 국회제출이나 시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안
-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원안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와 법령안 주관기관 간,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 기관 간 이견이 있는 법령안
-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법령안으로서 처장이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령안

주요토의과제 작성 시에는 의결서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주요토의과제 작성방법에 따라 주요토의과제(붙임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한다.

주요토의과제가 없는 경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주요토의과제가 있는 경우

4. 주요토의과제

별첨 1(제○쪽 ~ 제○쪽)

주요토의과제 작성 방법

- ① 법제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쟁점 사항이나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 명료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② 법제관은 주요토의과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면 법제합의부 또는 법령안 합동심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③ 주요토의과제의 형식은 붙임 제25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법제관은 필요한 경우 작성항목을 변경하거나 가감할 수 있음.

마. 참고사항

이 부분에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내용, 관계부처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신·구 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등 법령안의 심의·의결에 참고가 될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1) 관계법령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재한다.

관계법령을 기재하는 경우

- ① 해당 법령안의 입법추진 배경이나 관련 업무의 처리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 해당 법령 제정·개정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조약이 있는 경우 배경이 된 법령·조약의 관련 규정, 법률 공포안에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 등에 관한 헌법 제56조 등
- ② 해당 법령의 입법형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등

- ③ 해당 법령의 제정·개정 내용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 ④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거나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 규정. 다만, 별도의 주요토의과제를 붙이는 경우 그 주요토의과제와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해당 주요토의과제에 기재한다.
- 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에서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경우 모법의 시행일 규정
- ⑥ 그 밖에 법제관이 해당 안건의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법령 규정

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하인 경우 해당 관계법령란에 기재하고, 관계법령의 기재 분량이 1/2쪽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당 쪽도 기재)하고, 관계법령을 별첨자료로 만들어 법령안건에 붙인다.

기재분량이 1/2쪽 이하인 경우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⑥ (생략)

기재분량이 1/2쪽 이상인 경우

가. 관계법령 : ○○법 등, 별첨 1(제○쪽 ~ 제○쪽)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모법의 시행일 규정이 조문별로 달라서 관계법령으로 모법의 시행일 규정과 다른 법령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법의 시행일 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법령을 기재하도록 한다.

2) 예산조치

해당 법령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별도조치 필요 없음”,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년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임” 등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련되는 예산 조치 내역을 기재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여부는 참고사항 중 “기타”에서 표기하므로, 예산조치에서는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조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예시 1

나. 예산조치

- 1) 지원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2) 지원금은 ----계획에 반영하기로 함(반영할 예정임)

라. 기 타 : 4) 비용추계서, 별첨

○ 예시 2

나. 예산조치

- 1) 이 영 시행 후 금년말까지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11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임
- 2) 2011년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에 필요한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회 심의를 받아 201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라. 기 타 : 3) 비용추계서, 별첨

※ 별첨의 비용추계서는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소관부처에서 작성

3) 합의

법령안의 내용이 특정 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합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합의된 부처를 명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다. 부처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합의 필요 사항

1. 기획재정부: 공공요금, 수수료, 그 밖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이 있는 사항, 예산 또는 조직에 관한 법률, 회계에 관한 법률
2.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정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 관계 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감사원: 「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 관계 법령안
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
5. 해당 부처: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6. 국회: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연차보고서 등)의 제출방법 변경 등 국회와 관련이 있는 사항

4) 기타

이 부분에는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가)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으로 기재하되, 별첨자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쪽 ~ 제○쪽)”으로 기재한다.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 중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정원대비표를 첨부한다.

신·구조문대비표(또는 신·구정원대비표)만 있는 경우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또는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신·구조문대비표와 신·구정원대비표가 둘 다 있는 경우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나) 입법예고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기간 및 특기사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다.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4. 1.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4. 1. ~ 4. 21.) 결과, 별첨 1(제○쪽 ~ 제○쪽)

※ 재입법예고를 한 경우, 괄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재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예시) 입법예고(2011. 4. 1. ~ 4. 21., 5. 1. ~ 5. 21.)

다) 행정규제⁷⁸⁾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기재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가 신설·강화·폐지 및 완화되는 수를 각각 기재하되, 신설·강화의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규제를 신설·강화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그 목적을 병기한다.

규제의 신설·강화·폐지 또는 완화가 없는 경우(적용제의 분야인 경우 포함)에는 행정규제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78) 종전에는 명칭을 “규제심사”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신설·강화(「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2조) 건수만 표시했으나, 법령안의 규제 관련 내용을 충실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2008년 7월부터 명칭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부터 중립적인 “행정규제”로 바꾸고, 기재대상도 신설·강화·폐지·완화되는 모든 규제로 확대하였다.

신설·강화·폐지·완화 규제가 있는 경우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된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건(대기환경보전 강화)
 - 규제 강화 ○건(국민건강 보호)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상세설명에는 규제의 내용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 기재
(예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x)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와 이견이 있는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견, 별첨
 - 규제 신설 ○건(대기환경보전 강화)
 - 규제 강화 ○건(국민건강 보호)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신설·강화 규제가 없고, 폐지·완화 규제만 있는 경우

라. 기 타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폐지 ○건
 - 규제 완화 ○건

※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 규제가 없는 경우 : 기재 안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를 하지 않는다.

규제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 국회제출 법률안의 심사참고사항

국회제출 법률안으로서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그 다른 법률이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으나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각 조문을 전부개정(대부분의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⁷⁹⁾ 등에는 참고사항의 마지막 항목으로 아래 예문을 기재하도록 한다.

다른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9)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고, 지정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동시에 심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주로 세법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용어 정의나 국회의 기준이 없어 2014년에는 세법안 외에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7. 30 제출, 기금 관련), 「지방세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건강증진법」(9. 22 제출, 담배세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의결 필요), 「국민체육진흥법」(10. 10 제출, 기금 관련)이 국회의와의 협의(국회사무처 의안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요청 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4년 11월 27일 지정되었다.

※ 만일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날짜를 명시하여 관련된 법률안을 특정해야 함.

- “이 법률안은 2010년 11월 1일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라. 기 타 :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이미 제출된 경우와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혼재된 경우**

라. 기 타 :

4)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 향후 제출 예정인 경우**

라. 기 타 :

4) 이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

라. 기 타 :

4) 이 법률안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률의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조제○항 및 제○조제○항)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

라. 기 타 :

-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000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04 법령안

법령안은 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본칙,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고, 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 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개정주문(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개정지시문”이라 한다), 본칙(개정문), 부칙, 별표 및 별지서식으로 구성되며, 폐지 법령의 경우에는 법령의 종류 및 공포번호 부분, 법령의 제명, 폐지주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종전 법령의 본칙뿐만 아니라 부칙이나 별표 또는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본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다만, 다른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개정문을 작성한다.

법령안 내용의 작성에 관하여는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다.

0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일부개정 법령안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대비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붙인다. 다만, 별표나 별지서식의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의 경우에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등 법령안에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첨부물을 둘 이상 붙일 경우의 첨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주요토의과제, ② 관계법령, ③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④ 입법예고 결과, ⑤ 비용추계서, ⑥ 그 밖의 첨부물

아울러 둘 이상의 첨부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의결서 부분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표시하고, 각각의 첨부물 좌측 상단에도 [별첨 1], [별첨 2], [별첨 3] 등의 첨부물 표시를 한다. 다른 첨부물이 없고 오직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만 첨부하는 경우에는 첨부물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주요토의과제

별첨 1(제○쪽 ~ 제○쪽)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별첨 2(제○쪽 ~ 제○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제○쪽 ~ 제○쪽)

2)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별첨 4(제○쪽 ~ 제○쪽)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건(○○보호 강화)

- 규제 완화 ○건

4) 비용추계서, 별첨 5(제○쪽 ~ 제○쪽)

가. 표지⁸⁰⁾

의안번호	제번호	의결사항
의결	20.	
연월일	(제회)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명조 17pt, 진하게, 가운데정렬, 자간 47%, 줄간격 160%, 안 여백 위아래·좌우 5mm)

제출자	국무위원 〇〇〇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신명조 15pt, 진하게, 줄간격 160%)

법제처 심사를 마침

(신명조 15pt, 진하게)

80) 법령안건 표지는 정부입법시스템의 법령안입안편집기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나. 의결서 부분

1. 의결주문 ≡ 신명조 15pt, 진하게

≡ Shift+Tap, 신명조 14pt

vv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Enter ↵

2. 제안이유 ≡ 신명조 15pt, 진하게

≡ Shift+Tap, 신명조 14pt

vv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nter ↵

3. 주요내용 ≡ 신명조 15pt, 진하게

≡ Shift+Tap, 신명조 14pt

가.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 Shift+Tap, 신명조 14pt

vv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vv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나.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vv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행위허가 등과 관련 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Enter ↵

4. 주요토의과제 ≡ 신명조 15pt, 진하게

vv 없음 ≡ 신명조 14pt

Enter ↵

5. 참고사항 ← 신명조 15pt, 진하계

가. 관계법령: 생략 ← 신명조 14pt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를: 해당기관 없음

라. 기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신명조 14pt

2) 입법예고(2011. 8. 2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Shift+Tap, 신명조 14pt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규제 신설 1건(-----)
← Shift+Tap, 신명조 14pt
← 신명조 14pt

vvvvvvvv(가)v-----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75.2pt
 -----.

vvvvvvvvvv(1)v-----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87.8pt
 -----.

vvvvvvvvvvvv(가)v-----
 ← Shift+Tap 또는 첫줄 내어 쓰기 108.8pt
 -----.

☆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경우의 내어 쓰기 기준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Shift+Tap

vv제00조를 삭제한다.

vv제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vv제00조(○○○○○)v①v-----
 ← Shift+Tap
 -----.

vvvv②v-----
 ← Shift+Tap
 -----.

vv제0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vvvv④v-----
 ← Shift+Tap
 -----.

vv제0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vvvv-----
 ← Shift+Tap
 -----.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라. 첨부

1) 주요토의과제

[별첨 1]

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 특례규정(현행 제12조제2항)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에서는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를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할 것인지 여부(안 제11조 관련)

2. 원안의 내용

- 원안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던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부담분을 폐지하되, 동 규모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현행 3.6%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10%, 기타 광역시·경기도는 5%로 인상하고 그 밖의 도는 현행대로 3.6%로 유지).

3. 원안에 대한 관련부처 의견

가. 행정안전부의 의견

- 특례규정에 따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가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는 특례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며,
- 또한 공립중학교의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의무교육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의 해당 금액만큼 시·도세 비율을 인하해줄 것을 요구(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0%를 6.3%로,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5%를 4.3%로 인하·조정요구)

나. 교육과학기술부 및 기획재정부의 의견

-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직접 부담하여 왔으나, 2005년 이후의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2001년 동법 개정 당시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하였고,

-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은 국가의 재정구조, 지방자치제도 등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로서 공립교원은 실제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교육감이 시·도전입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부담해 온 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시·도세에 반영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 및 시·도세 전입금부담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p>비의무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p> <p>시지역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전입금 (서울 100%, 부산 50%, 5개 광역시와 경기도 10%)</p> <p>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3.6%)</p>	<p style="text-align: center;">⇒ (봉급전입금 폐지 및 시·도세 비율조정)</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세 비율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부산시 : 시세 10% - 5개 광역시 및 경기도 : 시·도세 5% - 기타 도 : 도세 3.6%
<p>지방교육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도 : 지방교육세 전액)</p> <p>담배소비세 전입금 (특별시, 광역시 : 담배소비세의 45%)</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원 봉급전입금 예산 규모 : 3,932억원('04)

나. 현행규정(제12조제2항)

-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준(위의 음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별첨 2]

관 계 법 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자연재해·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별표 1의 다 및 별표 3의 다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3]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현VVVVVVVVV행	개VVV정VVV안
<p>第7條(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 納稅告知書·納付通知書·督促狀 또는 納付催告書를 送達한 경우에 到達한 날에 이미 納付期限이 경과하였거나 到達한 날로부터 7日내에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것에 대하여는 到達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告知의 경우 당해 告知書가 到達한 날에 이미 納付期限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到達한 날을 納付期限으로 하고, 당해 告知書의 到達後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때에는 그 到來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p>	<p>第7條(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 ----- ----- ----- 14일 이내 ----- ----- ----- ----- ----- ----- ----- ----- ----- -----</p>

-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법령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 3) 일괄개정 등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는 단어의 중간이 나뉘어서 줄바꿈되거나 다른 단어와 같은 줄에 쓰이지 않도록 한다.

〈예시〉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사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7]

(제목: 가운데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956	975	+19
·	·	·	
일반직 계	906	926	+20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6	55	-1
·	·	·	
·	·	·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철도공안사무관	〈신 설〉	1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1	〈삭 제〉	-1
·	·	·	
·	·	·	

- 1)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1개일 때에는 생략줄을 한 개만 표시하고, 개정사항이 없는 직급별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생략줄을 두 개로 표시한다.
- 2) 신설하는 직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 다음에” 또는 “~~ 앞에”)하는 기준이 되는 직급별란은 생략하지 않고 쓴다.
 - ※ 신설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줄은 통상 신설하는 위치 바로 앞의 직급을 인용(~~ 다음에 ~~를 신설하고)하지만, 그 직급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위치 뒤의 직급을 인용(~~ 앞에 ~~를 신설하고)한다.
- 3) 직급명칭이 두 줄 이상 넘어갈 때에는 두 번째 줄 이하는 첫 줄 첫 글자 끝에 맞추어 정렬하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변동내역(현행, 개정안, 증감 란)은 직급명칭 맨 마지막 줄에 맞추어 쓴다.

4) 입법예고 결과

[별첨 4]

[입법예고결과]

제출자	내 용	조 치 결 과
○○ 연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에 대한 규제 완화 반대(안 제38조의2)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일지라도 무분별한 매립의 방지를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 소규모의 해안도로 및 마을공동작업장 등의 축조를 위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허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규모매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필요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항만구역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지방이양 반대(안 제9조 등) -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에 관한 권한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오히려 강화 또는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반영 -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사항이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매립면허 등에 관한 권한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미 위임되어 행사되어 왔음.

5) 비용추계서

[별첨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표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합계
계	-22,268	-22,667	-22,805	-22,954	-23,116	-22,762	-113,809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제66조)	-227	-227	-227	-227	-227	-227	-1,13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8조)	-69	-69	-69	-69	-69	-69	-343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제88조의5)	-1,596	-1,724	-1,862	-2,011	-2,172	-1,873	-9,365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제89조의3)	-5,967	-6,238	-6,238	-6,238	-6,238	-6,184	-30,9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14,410	-14,410	-14,410	-14,410	-14,410	-14,410	-72,0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일몰연장 (안 제66조, 제68조 등)

□ 개정안은 농어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1조)

조특법		현행	개정안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	2015년말	2020년말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2015년말	2020년말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2015년말	2020년말
제89조의3	조합 등 예탁금 과세특례	2015년말	2020년말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2015년말	일몰폐지(향구화)

Ⅲ. 비용추계의 전제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안66조)등의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과거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안89조의3) 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따른다고 가정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안88조의5) 일몰 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 따른다고 가정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일몰연장의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Ⅳ.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제66조)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
 - 영농조합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액 및 기타소득(1,200만원×조합원 수 한도)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및 기타 배당소득(연1,200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초지의 양도소득 이월과세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억원, 2014년 227억원 (잠정)임

[표 2]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

	2012	2013	2014(잠정)
계	353	226	227
소득세	156	32	36
법인세	197	194	191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2.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8조)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
 - 농업회사 법인: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은 5년간 50% 세액감면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 면제, 그 외 양도소득은 이월 이월과세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
 -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226억 원, 2014년 227억원(잠정)임

[표 3]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

	2012	2013	2014(잠정)
계	167	88	49
소득세	-	-	-
법인세	167	88	49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3.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88조의5): 2015년말까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해 (1) 1인당 1천만원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 각 조합 사업 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 비과세 → 2018년말까지 비과세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
 -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4]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

2012	2013	2014(잠정)	2012-2014연평균 증가율
1,1721	1,328	1,368	8.0%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2~2014년 연평균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

4.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제89조의3)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감소 및 농어촌특별세의 증가가 예상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연장: 조합 등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2015년말까지 비과세, 2016년 5% 저율과세, 2017년 이후 9% 저율과세 → 비과세 일몰 2018년까지 연장, 2019년 5%, 2020년 이후 9% 저율과세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조특법 제89조의3)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

○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이자소득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7607억원, 2014년 7,835억원(잠정)임

[표 5]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

2012	2013	2014(잠정)	2012-2014연평균 증가율
6,771	7,607	7,835	7.6%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 비과세 예탁금 이자는 비과세 예탁금 규모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거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예탁금 이자 규모는 하락하는 추세임
- 예탁금 이자규모 하락은 최근 금리하락 등에 기인

[표 6] 조합 등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지급액 추계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비과세예탁금(A)	131.2	140.3	140.7
비과세예탁금 이자(B)	5.2	5.5	4.9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NABO의 국고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추정

[표 7] 금리 전망(NABO(2015.5))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3년만기 국고채 금리	2.6	2.0	2.2	2.3	2.3	2.3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수정 경제전망」, 2015.5

주: 1) 2014년은 실적, 2019~2020년은 2018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

○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의 일몰폐지(항구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과거 조세지출 실적을 기초로 추계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 1조 5,066억 원, 2014년 1조 1조 3,754억원(잠정)임

[표 8]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소득세)

(단위: 억원)

	2012	2013	2014(잠정)
계	15,237	15,066	13,754
부가가치세	4,278	4,135	3,599
교통·에너지·환경세	9,336	9,316	8,643
개별소비세	194	189	190
교육세	1,429	1,426	1,322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13~2014년 평균과 같다고 가정

6. 비용추계 결과

□ 농업관련 비과세·감면 일몰연장에 따라 2016년 2조 2,268억원, 향후 5년간 11조 3,80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표 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합계
계	-22,268	-22,667	-22,805	-22,954	-23,116	-22,762	-113,809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제66조)	-227	-227	-227	-227	-227	-227	-1,13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제68조)	-69	-69	-69	-69	-69	-69	-343
조합 등 출자금 비과세(제88조의5)	-1,596	-1,724	-1,862	-2,011	-2,172	-1,873	-9,365
조합 등 예탁금 비과세(제89조의3)	-5,967	-6,238	-6,238	-6,238	-6,238	-6,184	-30,9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14,410	-14,410	-14,410	-14,410	-14,410	-14,410	-72,0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V. 부대의견

없음.

VI.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

과 장 ○ ○ ○

경제분석관 홍길동(000-000-0000, *****@*****.**))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자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자원분담계획

〈계속성 경비(인건비·운영비·사업비) 자원분담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4년 (6개월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 중앙정부	9,750	20,084	20,686	21,306	21,946	93,772
○ 일반회계	9,750	20,084	20,686	21,306	21,946	93,772
□ 합 계	9,750	20,084	20,686	21,306	21,946	93,772

〈초기 설립비용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 중앙정부	7,812	-	-	-	-	7,812
○ 일반회계	7,812	-	-	-	-	7,812
□ 합 계	7,812	-	-	-	-	7,812

2. 자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정부의 출연금 지원 (안 제11조)
 - 국가재정업무 대행기관에 해당, 그 사업·운영 재원은 국가 지원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정보과 홍길동 사무관
연락처	000-000-0000 *****@***** **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운영(안 제9조의2),
- 공공서비스목록 관리(안 제12조의3),
-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0조의3)

2. 미첨부 근거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함

* 예상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0억원 미만

**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성공적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선언적·권고적 사항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또한, 개정안은 현재 법률에 규정된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축소 등 규제 완화 등 기존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정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개정안의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데이터 활용 공통서비스시스템 등은 정부가 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구축·운영중이므로 추가적 예산 수반 요인이 미미함.

구 분	생활정보 열람서비스 운영 (안 제9조의2)	공공서비스목록 등록시스템 (안 제12조의3)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 (안 제30조의3)
'13년	800백만원	500백만원	2,897백만원
'14년	5,000백만원	2,000백만원	5,000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홍길동 주무관
연락처	00-000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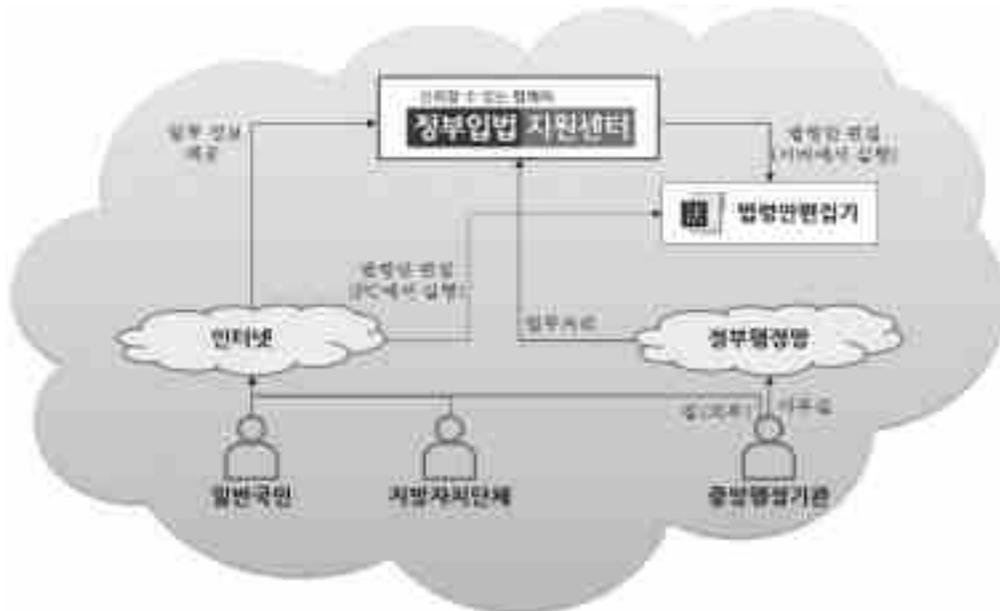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0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의원법률안 검토 등 정부입법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및 연계하여 정부입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부입법 협의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집행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의 구성

정부입법시스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부행정망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인터넷에서 입법정보를 개방·공유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 그리고 개인 PC에서 법령안이나 훈령, 조례 등을 편집할 수 있는 법령안편집기로 구성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 및 기능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주요 메뉴는 정부입법계획,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관리(국민참여 입법센터), 영향평가/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법제지식 등으로 구성되고 메뉴별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 메뉴	하부 메뉴	기능
정부 입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대상법령 • 정비대상행정규칙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정비의견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입법이 필요한 법령을 관리하고, 입법계획으로 확정요청할 수 있다. - 법제처와 합의하여 확정된 정부입법계획(법률), 법령정비계획, 하위법정비계획, 행정규칙정비계획을 관리한다. - 정부입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 입법계획 통계 등 법령총괄관리를 위한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한다.
법령안 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입안함 • 법령입안지원 요청함 • 법령안 부처협의함 • 행정규칙 입안함 • 행정규칙사후심사요청함 • 공유·공람함 • 결재/발송함 • 접수/배정함 • 완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입안함에서는 법령안별로 입안 및 사전입법지원 등 모든 정부입법 절차(입안)에 대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유/공람 메뉴에서 부서협의, 관계기관협의,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발송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입법 예고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등록·답변 • 행정예고 등록·답변 • 입법제안 관리 • 입법예고 통계 • 행정예고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현황이나, 입법예고 등에 등록된 모든 입법의견을 종합하여 조회할 수 있고, 새로운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를 조회할 수 있다.
영향 평가/ 규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함 • 영향평가 완료함 • 규제심사함 • 규제심사 완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규제심사함에서는 법령안별로 입안 시 각종 사전 영향평가를 통합 신청하고 결과를 공유 받을 수 있다. * 규제심사의 경우 시스템 간 연계 추진 중

주 메뉴	하부 메뉴	기능
법령안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심사함 • 법령입안 지원함 • 행정규칙 사후심사함 • 법령안 승인·확정함 • 법령안 심사회의회함 • 법령안 협의함 • 공유·공람함 • 결재/발송함 • 접수/배정함 • 완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심사에서는 법령안별로 심사 및 사전입법 지원 등 모든 정부입법 절차(심사)에 대한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 공유/공람 메뉴에서 부서협의, 관계기관협의,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법령소식 • 언론보도 • 입법 기준/편람 • 입법지식 • 입법 질의답변/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는 공포법령, 시행예정법령, 한시법령, 위헌결정법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법제지식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와 의견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답변 또는 토론할 수 있다. - 법령입안심사기준, 알기쉬운법령정비용어, 법제업무편람,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정보를 목차별로 확인하고 질의 및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 기타 법제지식 자료를 등록관리 할 수 있다.

0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망에서 동일한 주소(www.lawmaking.go.kr)로 접속이 가능하다.

정부행정망에서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중앙행정기관 사용자가 접속하여 입안·심사 등 입법업무를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망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일반국민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입법 추진현황 및 관련정보를 개방·공유하고 있다.

가. 정부입법지원센터(정부행정망)

1) 로그인

정부행정망으로 접근한 소관부처 담당자는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 후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할 수 있다. 로그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로그인 유지]에 체크한 이후 로그아웃 하지 않고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로그인상태는 계속 유지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비밀번호 분실인 경우 핸드폰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하므로 반드시 핸드폰번호를 사전에 기입했거나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핸드폰 번호를 추가 기입해야만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기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이 되거나, 입법담당자가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에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본인 성함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변경]을 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로그인 후 자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부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중앙행정기관은 정부행정망에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메인 화면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다. 이때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약관동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정보가 저장되어 가입이 완료되고,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공공정보입법지원센터(인터넷) 로그인

이름	이름	이름
직책	직책	직책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름	이름
직책	직책	직책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름	이름
직책	직책	직책
소속기관	소속기관	소속기관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 확인

유의사항

- 아이디 인증 시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만약 인증실패가 나타날 경우, 소속기관 정보화담당관실에 본인의 온-나라시스템 아이디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입법지원센터(인터넷)

1) 로그인

소관부처 담당자는 물론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법기관 사용자(이하 ‘일반국민 등’이라 한다)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접속할 수 있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신규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국민 아이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보안] 버튼을 선택하면 로그인 진행 시 키보드 보안을 적용하여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국민으로 새로 가입한 사용자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선택하여 휴대폰인증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 정부행정망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는 정부행정망에서만 가능하다.

2) 회원가입

일반국민 등이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 메인화면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가입은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과 개인별 SNS를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03 법령안 입안 방법

소관부처 입법담당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 접속하여 초안 작성, 관계기관 협의,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일련의 법령안 입법절차를 수행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5항).

가. 법령정비의견 등록 및 정부입법계획 확정

1) 법령정비의견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Law Revision' registr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입법정보', '입법예고', '입법입력 지원', '입법정보 지원', '입법예고', '입법정보', and '입법정보'. Below the tabs, there is a search bar and a list of registered items. The table below shows the following data:

번호	제정법령	제정일자	제정법령	제정일자	제정법령	제정일자
1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2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3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4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5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6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부동산, 임대차, 임차권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안) (제정안)	2024. 01. 27

The screenshot shows the detailed view of a registered item. The page displays the following information:

- 입법정보**: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예고**: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입력 지원**: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정보 지원**: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예고**: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정보**: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입법정보**: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상단의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비대상법령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 목록조회 화면 상·하단 [법령정비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

② 법령명,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와 추진계획, 입법사유, 주요내용 등의 입법사항을 입력

③ [저장/입법계획 확정요청] 버튼을 클릭

유의사항

- 인터넷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정부입법계획] 메뉴의 목록 및 조회만 가능하며, 정부행정망의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만 등록·변경 업무가 가능하다.

2) 정부입법계획 확정

번호	법령명	입법구분	입법사유	입법계획	입법대상	입법일
11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관련 부속 법령에 관한 법령(국회입법예고법 제10조제1항)	입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2022. 03. 21
12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관련 부속 법령에 관한 법령(국회입법예고법 제10조제1항)	입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2022. 03. 21
13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관련 부속 법령에 관한 법령(국회입법예고법 제10조제1항)	입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2022. 03. 21
14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관련 부속 법령에 관한 법령(국회입법예고법 제10조제1항)	입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2022. 03. 21
15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관련 부속 법령에 관한 법령(국회입법예고법 제10조제1항)	입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국회입법예고법(제정)	2022. 03. 21

입법계획(법제) 확정

제정구분: 정부입법계획(법제) 정부입법계획(입법) 법안제정계획 국회입법예고

특정일: 연초 중기 말기 2022. 03. 21

주제사유:

- 법제처법령정비담당자는 상단의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 > 법령(TAB)]에서 정비대상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비대상법령을 정부입법계획으로 확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 > 법령(TAB)] 목록조회 후 확정대상 법령을 선택하고 화면 상·하단 [입법계획(정비) 확정] 버튼을 클릭(단, 추진계획이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 ① [입법계획(정비) 확정] 팝업의 계획구분, 확정일, 추가사유를 입력
 - ② 팝업 내의 [입법계획 확정 요청] 버튼을 클릭

나. 법령안의 입안 및 공개 설정

1) 법령안의 입안

No.	법령명	법령분류	입안일	제정일	입안종류	제정일
1974	정부조직법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75	국립중앙도서관법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76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령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77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규칙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78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령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79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규칙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80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령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81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규칙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82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령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1983	국립중앙도서관법 시행규칙	법령	입안 2024. 01. 15	제정 2024. 01. 15	입안	제정

- 새로운 법령안을 입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입법 > 법령197안 입안 > 법령(TAB)] 목록조회 화면 상·하단의 [법안등록] 클릭하면 법령안 입안 등록페이지로 이동함
 - ② 법령명,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
 - ③ 입법계획에 있는 입법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선택

- ④ 해당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있음]을 체크
- ⑤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사실을 통지해야하거나 조례/규칙에 대한 검토요청이 필요할 경우 [필요]를 체크
- ⑥ 연관법령 확인하고 연관관계가 존재하면 [예]를 체크
- ⑦ [기본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입법안 관리' (Legislation Management)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입법안 기본정보** (Legislation Basic Information): Includes fields for '법령종류' (Legislation Type), '제안권자' (Proposer), '법제국' (Legislation Committee), and '법제(심의)관' (Legislation Review Officer). There are also checkboxes for '예산수반' (Budgetary), '일부개정' (Partial Amendment), and '일기로운법령안등기대상법령' (Subject to automatic registration of laws).
- 법령정비비의견 반영** (Reflection of Revision Opinion): Includes a checkbox for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Check for subordinate laws and regulations to be revised) and a checkbox for '연관법령 확인 여부' (Check for related laws).
- 입법추진현황** (Legislation Progress Status): A table with columns for '조안작성' (Drafting), '관계기관 협의'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영향평가' (Impact Assessment), '입법예고' (Pre-announcement), '규제심사' (Regulatory Review), and '심사의뢰' (Request for Review).

유의사항

-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법률)으로 확정된 입법계획이 있어야만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안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입법계획이 없는 경우 입법계획 확정에 관하여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법령안 공개 설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법령안은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공개된다. 해당 법령안을 미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서 등록된 법령안을 선택하여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 [공개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법령안과 첨부파일 정보는 [정부 입법현황] 메뉴에서 공개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 [공개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법령안편집기를 통한 법령안 작성

1) 초안작성

법령안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법령안편집기를 이용하여 법령안을 작성한다.



- 법령안의 정보를 저장한 후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법령안 초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안편집기가 실행되어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는 초안작성_상세 버튼을 눌러 팝업된 초안작성 등록 팝업창에서 [법령안작성] 버튼을 눌러 편집기를 실행해도 된다)
 - ① 편집기를 통해 법령안을 작성하고, 편집기 메뉴의 [저장] 버튼 우측의 ▼ 눌러 [서버저장하기] 클릭하면 법령안이 저장된다.
 - ② 만약 PC에 저장되어 있는 법령안 한글파일을 업로드 할 경우, 초안작성_상세 팝업창의 우측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면 서버저장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작성한 법령안을 수정해야할 경우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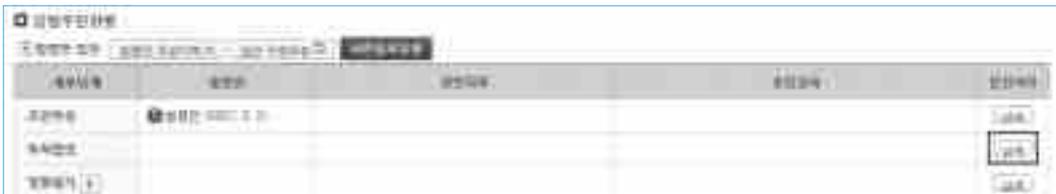
- ※ 편집기는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법령안작성 버튼 클릭 시 편집기가 미설치된 경우, 편집기 설치 필요 메시지가 팝업된다.
- ※ 법령안편집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IX.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법안의 초안 작성과 결재, 내부 협의를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관계기관 협의 단축/생략 요청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진행할 때에는 법제처와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단축/생략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기관 협의 단축/생략 요청 등록 팝업 화면이 나온다.



-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 진행할 때는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와 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작업 화면에서 [단축][생략]을 선택하고, 단축/생략 사유 입력, 단축/생략 사유서 등을 첨부한 후 [승인요청] 또는 [승인요청(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2) 관계기관 협의의 요청

단축/생략 요청과 상관없이 관계기관 협의의 요청을 등록할 수 있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 버튼을 클릭한다.



-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실행한다.
 - ① 부처협의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
 - ②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관련 첨부 문서 등을 입력
 - ③ [저장] 버튼을 클릭

관계기관을 선택하려는 경우, [수신기관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협의할 수신 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필수로 협의해야 하는 기관을 필수 협의 기관으로 지정한다. 수신 기관, 협의 기간, 관련 첨부 문서 등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하면,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저장되고 협의 수신 기관에 모두 메시지가 발송된다.

3) 지방자치단체 통보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부처협의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에 등록된 정보가 조회되고,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으로 발송되고, 온-나라시스템에서 전자문서를 발송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부처협의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
 - ② 수신기관,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
 - ③ 지방자치단체 통보

유의사항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내용은 법령안 심사의뢰 시, 부처협의 점검표에서 점검 항목으로 사용된다(심사의뢰 요청의 부처협의 점검표 참조)

4) 관계기관 협의의 의견 등록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에서는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 부처협의합] 메뉴에서 해당 법안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계기관 협의가 요청되면 대상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가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 부처협의합] 메뉴에서 법령안을 처리할 수 있다.
- 법령명을 클릭하여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기관의 공식/비공식 의견을 등록한다. 의견 등록은 공식적인 의견 등록 기능(공문 발송)이며, 댓글 등록은 비공식적으로 타 기관과 협의하는 기능이다.

등록된 전체 의견은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 ※ [공유/공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건을 부처 내에서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공람된 건은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공유·공람함] 메뉴에서 해당부처 내 모든 사용자가 열람가능하며 의견등록이 가능하다.
- ※ [의견없음] 버튼을 클릭하면 관계기관협의 공식의견란에 “의견없음”이 자동등록 처리된다.

마. 각종 영향평가 요청 및 결과 확인

1) 영향평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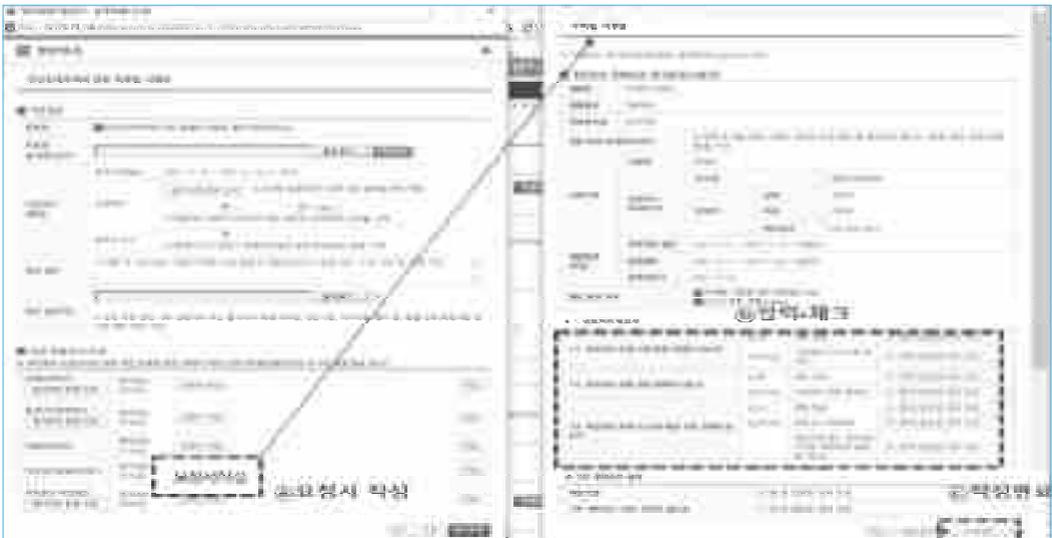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영향평가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안명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소속부처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부처장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공제심사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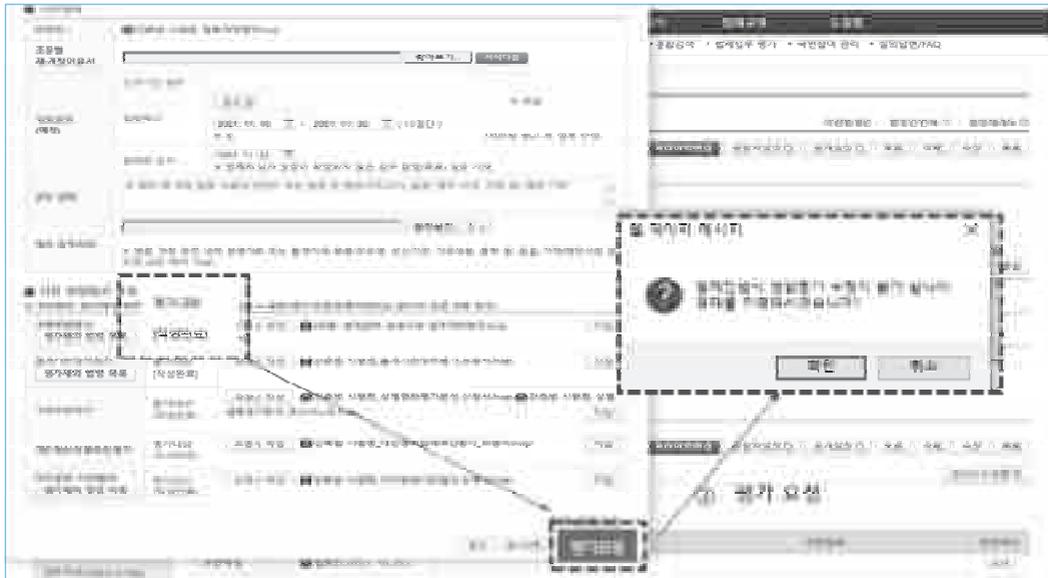
•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영향평가 [상세] 버튼 클릭
- ② 법령안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 ③ 요청하려는 영향평가별로 각각 [요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형태로 보여지는 각 영향평가 요청서를 작성·체크한 후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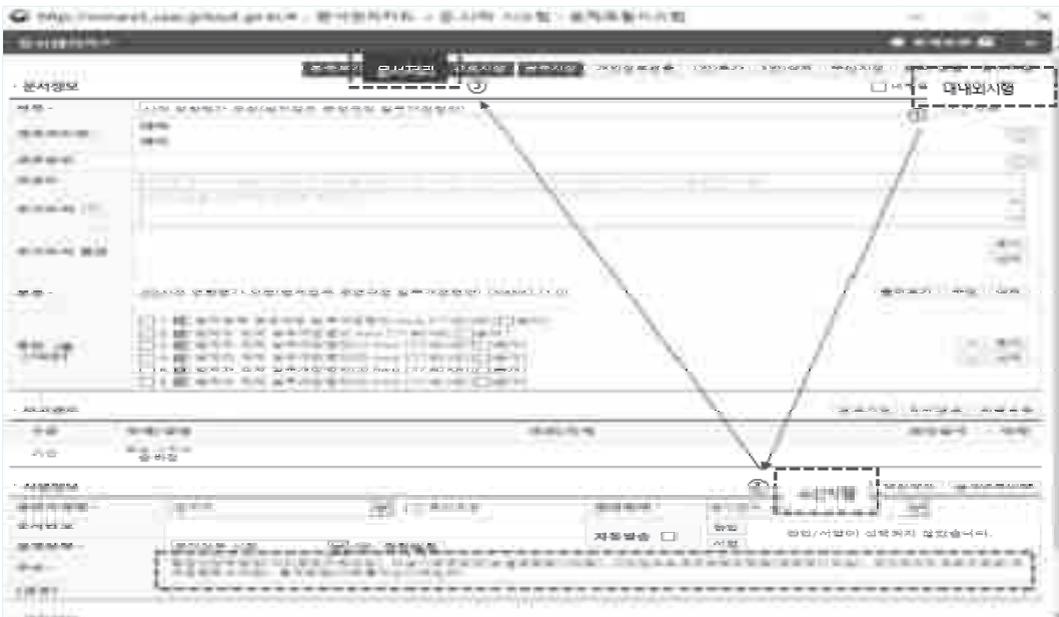
④ 작성한 한글파일 및 평가대상 여부 등 확인 후 하단의 [평가요청] 버튼 클릭



⑤ 팝업창의 영향평가 통합 요청 공문 확인 후 [온나라 결제 요청] 버튼 클릭



- ⑥ [온나라 문서 > 처리할 문서> 연계기안함] 메뉴에서 자동생성된 사전 영향평가 통합 요청 공문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각 영향평가 주관부처를 수신처로 지정하여 결재·발송(대·내외시행)



- [정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 법령안 입안] 해당 법안카드에서 법안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나라 공문이 정상적으로 결제·발송되면 추진경과란이 “영향평가 작성 중”에서 “영향평가 요청”으로 바뀐다.



2) 영향평가 결과 확인

법령안 입안부처는 [정부입법> 법령안입안> 법령안] 메뉴에서 해당 법안의 영향평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는 법제심사 요청 전까지 영향평가 결과 확인란에서 입안부처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법령안 사전심사 방법

1) 사전심사 요청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식으로 심사의뢰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제안안명	입법안	제안사유	추진현황	연락처
국회예산	법령안 2024-04-01	2024년 4월 1일 제정된 「국회예산 운영규정」 개정안 제출	안건번호: 2024-04-01-001 (제정)	
부처업무	법령안 2024-04-01		안건번호: 2024-04-01-002 (제정)	
연방업무				
입법제도	법령안 2024-04-01	입법제도 개정안 제출	안건번호: 2024-04-01-003 (제정)	
공제업무				
입법제도				

사전심사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사전심사요청

입법내용	
법령안	<input type="checkbox"/>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
관계기관 협의	<input type="checkbox"/>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협조 조항(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제정보공개서 제출부 확인서(시행령)(법) <input type="checkbox"/>
연방업무	<input type="checkbox"/>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방업무협조조항(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처정보공개서 제출부 확인서(시행령)(법) <input type="checkbox"/>
입법제도	<input type="checkbox"/>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입법제도 개편조항 <input type="checkbox"/> 분류제보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제도 조항(법) <input type="checkbox"/>
입부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파일첨가"/>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제6항)

-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법령안 입법추진현황 [사전심사요청] 버튼을 클릭하고 요청내용과 필요한 첨부파일을 등록한 후, [심사요청] 또는 [심사요청(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유의사항

※ [사전입법지원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법제처 법제지원국(법제지원총괄과)로 e-메일을 발송하여 사전입법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2) 사전심사 심사

법제처 각 법제국의 실무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심사 > 법령안심사함] 메뉴에서 사전심사 요청된 법령안을 선택한다.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고 [심사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기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3) 사전심사 완료/반려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심사함] 메뉴에서 사전심사 접수된 법령안을 선택한 후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사전심사 단계에 있는 [심사안 작성] 편집기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사안을 작성한 후 [심사결과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가 사전 심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담당 법제관과 실무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메뉴에서 사전심사 접수된 법령안을 선택
 - ② 사전심사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심사 상세 작업 화면으로 이동
 - ③ [심사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편집기에서 심사를 진행
 - ④ [심사결과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를 완료
 - ⑤ 심사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사전심사를 반려한다.

2) 게재중인 입법예고 연결



게재중인 입법예고에 연결을 하려면 입법예고 상세 팝업에서 (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선택하고 팝업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한다.

(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하려면 입법예고 상세 팝업에서 [(이미)공고한 입법예고 연결]을 선택하고 팝업에서 해당 법령을 선택한다.

민약 재입법예고 연결을 다시 원할 경우, [입법예고 > 상세 > 수정 > (이미)공고한 입법예고]에서 [취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이미 공고한 입법예고 선택 후, 입법예고 목록조회 창에서 재입법예고 법령명을 선택한다.

3) 지방자치단체 통보



-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법예고의 [상세] 버튼을 클릭
 - ② 지방자치단체 통보에 필요한 파일을 첨부, 수신기관 선택
 - ③ [통지(결재)] 버튼을 클릭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연계기안함에서 공문 발송

유의사항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내용은 법령안 심사의뢰 시, 부처협의 점검표에서 점검 항목으로 사용된다.

(심사의뢰 요청의 부처협의 점검표 참조)

아.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등록

1) 규제심사 요청

법제처에 법령안을 심사 의뢰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규제심사 단계에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한다.



- 팝업 화면에서 규제심사 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과 동시에 시스템을 통해 요청 메시지가 전달되고, [결재]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과 동시에 온-나라시스템에 연계기안함으로 발송된다.

2) 규제심사 결과등록

- 해당 법령 상세조회 화면의 규제심사 단계에서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규제심사 요청서 부분을 입력하고 나면, 하단에 규제심사 결과서 첨부란이 생성된다. 결과파일을 첨부 후 [저장]버튼을 눌러 결과를 등록한다.

자. 법령안 심사의뢰

1) 심사의뢰 요청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려면 세부단계 심사의뢰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법령번호	법령명	제정내역	제정일	제정기관
국문개정	국문개정 법령안 (2022. 04. 28.)	국문개정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국문개정 (2022. 04. 28.)
부칙개정	부칙개정 법령안 (2022. 04. 28.)	부칙개정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부칙개정 (2022. 04. 28.)
개정법률	개정법률 법령안 (2022. 04. 28.)	개정법률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개정법률 (2022. 04. 28.)
개정령구	개정령구 법령안 (2022. 04. 28.)	개정령구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개정령구 (2022. 04. 28.)
개정령부	개정령부 법령안 (2022. 04. 28.)	개정령부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개정령부 (2022. 04. 28.)
개정규칙	개정규칙 법령안 (2022. 04. 28.)	개정규칙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개정규칙 (2022. 04. 28.)
개정시행령	개정시행령 법령안 (2022. 04. 28.)	개정시행령 법령안 (2022. 04. 28.)	2022. 04. 28.	개정시행령 (2022. 04. 28.)

심사의뢰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법안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상세보기]

연계기관 정보: 181029-서민 규제심의회-건설법시행규칙(hwp) [상세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 대한 의견조회(pdf) [상세보기]

첨언사항: 부칙개정법령안-구조자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상세보기]
 입법총서(33-142)-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상세보기]
 부칙개정법령안-표준1(pdf) [상세보기]
 연계기관정보작성가 요청1(pdf) [상세보기]
 연계기관정보작성가 요청(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상세보기]
 예비평가 결과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상세보기]
 (공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pdf [상세보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 [상세보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hwp [상세보기]
 (공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pdf [상세보기]

입법예고:

규제심사: 181014-서민 규제심의회-건설법시행규칙(hwp) [상세보기]
 규제심사대상 확인중(건설법시행규칙)(hwp) [상세보기]

조문정보제청비유서: 조문별 제청할 사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상세보기] [제청신청]

첨부파일: [파일추가서 클릭할시유] [상세보기] [파일추가] [파일추가]

-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의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에서 심사의뢰 요청을 할 수 있다. 심사의뢰 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의뢰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
- ② 입안 단계를 거치면서 첨부된 파일은 자동으로 첨부되며, 심사 시 필요하지 않은 파일은 [X]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
- ③ 조문별제개정이유서는 필수 첨부파일이므로 반드시 첨부
- ④ 그 외에 기타 심사의뢰 첨부파일을 추가



-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기 전 부처협의 점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처협의 점검표 항목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와 관련된다. 각 단계에서 등록한 지자체통보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부처가 되며, 관계기관협의 단계에서 지자체통보를 하였을 경우, '부처협의시 통지'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자체통보를 하였을 경우, '입법예고시 통지'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된다. 협의대상여부가 '협의대상'일 경우, '부처협의시 통지' 및 '입법예고시 통지' 항목이 하나 이상 체크되어야 하며, 관련증빙자료(첨부파일)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심사의뢰가 가능하다.

- ⑤ 협의대상 여부를 확인
- ⑥ 협의대상인 경우 관련증빙 자료를 첨부
- ⑦ 부처협의 점검 확인 후 하단 [심사요청] 버튼을 클릭
- ⑧ 그 후 [심사요청(결재)] 버튼을 눌러 메모결재/온나라결재 중에서 선택해서 법제처로 심사요청을 한다.

2) 지자체통지 점검표 수정

심사의뢰 요청 이후, 지자체통보 신규 등록 및 재 통보해야 할 경우나, 지자체 통지와 관련된 점검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심사의뢰 요청 이후, [지자체통보] 기능이 활성화 된다.

항목	협의 부처	협의대상여부	관련증빙
예산, 기금 등 예산수입 관련 사항,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출자 후 지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설립 조직과 운영, 인사관리제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공무원의 인사 및 조직, 지방사직, 시·석	안전행정부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경찰제헌사항	경찰거래위원회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회계연세 관한 사항	감사원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법적, 질서행위등	법무부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법령상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국세청 등 4개 중 임의참기관	협의대상여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		협의대상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처합의서 통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합법제고서 통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신규등록"/> +

- ‘지자체통보’ 및 ‘심사 점검표’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심사의뢰 요청 시, ‘부처협의 점검표’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 항목을 복사하여 심사점검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며, 심사의뢰 요청 이후에는 ‘부처협의 점검표’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심사 점검표’만 수정이 가능하다).
 - ① ‘지자체통보’를 신규 등록 및 재통보해야 할 경우, [지자체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관계기관협의 지자체통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② 점검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 ‘심사 점검표’의 각 항목을 선택 및 첨부 후 [저장] 버튼을 클릭

3) 심사의뢰 수정요청 및 철회

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법령안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정요청] 버튼이 나타나게 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의뢰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제처에 심사의뢰가 접수된 이후 법령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의뢰 단계의 [상세]버튼 또는 상단의 [심사의뢰안 수정요청]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 수정을 요청한다. 법령안 수정요청 진행시, 심사의뢰수정등록 문구로 표기되며, 심사자가 수정요청 접수된 파일을 확인 시, 심사의뢰수정접수 등의 문구로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법령안 소관부처 담당자는 법령안을 철회하고자 하려는 경우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 [철회]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 철회 할 경우, 해당 법안은 법령안입안의 완료함으로 이동한다.
 - ① 차후 다시 법령안심사의뢰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명을 선택하여 우측 상단의 [철회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심사의뢰 요청화면으로 연동된다.
 - ② 심사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다시 법령안 입안함으로 이동되어 추진현황이 법안심사중 단계로 진행된다.



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법령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각 법제국별 접수 담당자와 법제(심의)관, 실무자, 알법검토자 등이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메뉴에 접속하여 심사안 작성,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검토, 심사안 결재 및 부처 이송 등 심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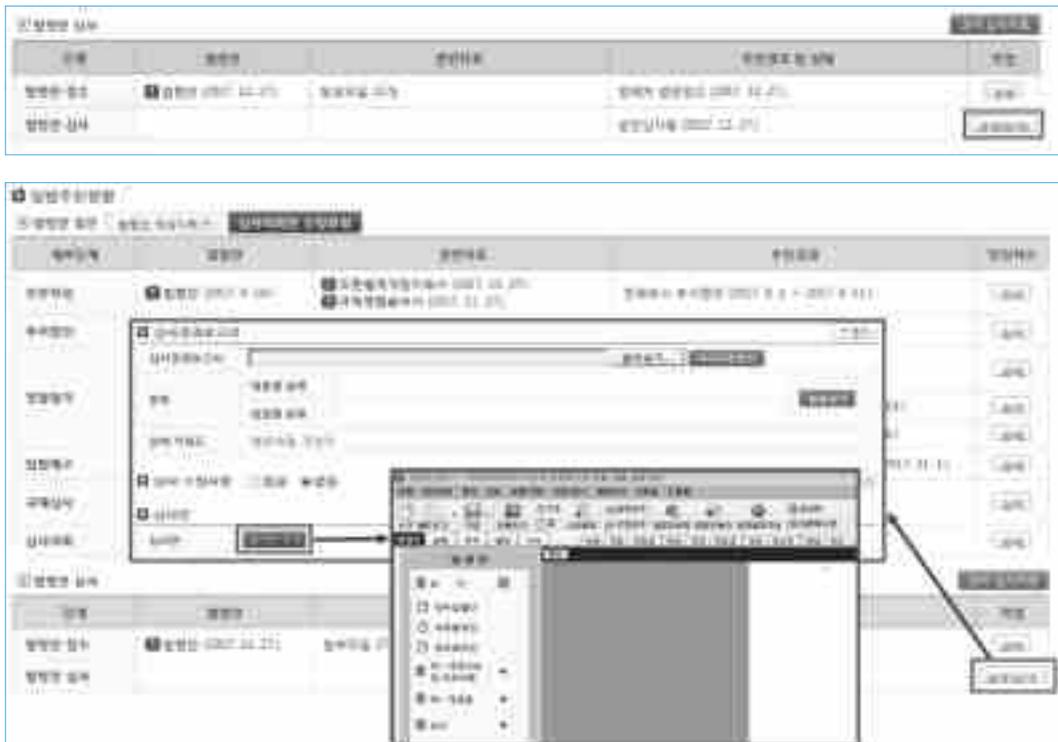
유의사항

- 인터넷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보안상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정부행정망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심사안 작성 및 공개설정

1) 심사안 작성

심사안은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다.



- 법령안 심사 화면에서 [심사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법령안편집기가 실행되고 편집기를 통해 심사안을 작성해야 한다. 법령안편집기의 활용 방법은 IX.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의 매뉴얼을 참고한다.

2) 심사안의 공개설정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심사안은 [정부입법현황] 메뉴에서 공개된다. 해당 심사안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메뉴에서 등록된 심사안을 선택하여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 [공개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심사안 공개 설정 화면에서는 작성된 심사안의 파일과 심사경과보고서 파일에 대해 각각 공개 설정할 수 있다.





3) 심사안의 반려



이 기능은 심사담당자가 법안 상세정보 화면에서 법령안 심사 반려 및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다.

심사담당자가 반려/보완요청 할 경우, 법령안 입안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 입안함]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했을 때, 위와 같은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심사정보 확인 및 등록

심사안의 작성 및 검토가 완료된 경우 심사정보를 등록한 후 결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심사담당자가 법령안편집기를 통해 심사안을 작성한 후, “입법정보 첨부문서”의 문서관리, “입법이의 반영여부 점검”, “정비대상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 정비사항 확인 및 “심사경과보고서” 등록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1) 첨부문서

- 심사정보의 첨부문서는 결재 요청 시 첨부되어 발송되는 파일이다. 최초 심사정보 작성 시 첨부문서는 접수된 파일들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필요 시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입법의견 반영여부 점검



- 심사정보의 입법의견(정부입법계획, 법령정비계획, 하위법령정비계획 등) 반영 여부 점검 항목이 있을 경우 입안담당자가 계획의 내용대로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서면보고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에 체크한다.

3)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정비대상 법령관리에서는 입안담당자가 등록한 정비사항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심사한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정비대상 법령관리 항목에서 [정비사항 있음]에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비대상 법령은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대상 법령이 등록된 경우 심사완료(부령, 총리령, 훈령, 대통령훈령) 또는 공포대기(법률, 대통령령) 상태가 되었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비대상법령으로 등록하여 입안담당자가 해당 법안을 정비하도록 자동으로 통보하게 된다.



-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항목은 심사한 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있다면, 하위법령 및 조례·규칙 항목에서 [있음]에 체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정비대상 법령은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심사경과보고서

- 심사경과보고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심사경과보고서 파일 뿐 아니라 분류 및 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

- 분류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분류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경과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별, 성질별 분류를 각각 선택한다.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검토

법령안 심사담당자가 알법 검토요청을 하면 알법 검토담당자는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심사 단계에서 알법검토 정보를 등록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 알법 검토 대상 법안의 경우 [알법검토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알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제처 알법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법령 입법추진현황에서 알법검토 요청된 법안을 확인한 후 법령안 심사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권고안을 등록하고 [발송(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알법검토를 완료한다.

라. 심사안의 결재 및 부처 이송

1) 심사안의 결재

심사안 결재 요청은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할 수 있다.



- 작성 완료된 심사안을 결재 받기 위해 온나라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이다.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 법령안 심사화면의 [결재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시스템으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결재 진행에 대한 상태 확인은 법령안 심사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심사 상세조회 팝업에서 [결재진행]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다.

2) 심사안의 최종 결재 결과 반영 방법

가) 온-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심사안이 수정된 경우



- 온-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심사안(결재안)을 반영한다. 심사안이 수정된 경우 결재안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안 심사화면에서 [결재안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정보를 조회
 - ② [파일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안으로 파일을 반영

유의사항

- ※ 온-나라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된 경우 버튼이 나타난다.
- ※ 파일 반영 후 법률, 대통령령은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된다.

나) 온-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심사안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



- 온-나라시스템 결재과정에서 심사안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 심사안을 반영한다.
 - ① 법령안 심사화면에서 [수정없음]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확인
 -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으로 파일을 반영

유의사항

- ※ 온-나라시스템에서 결재가 완료된 경우 버튼이 나타난다.
- ※ 파일 반영 후 법률, 대통령령은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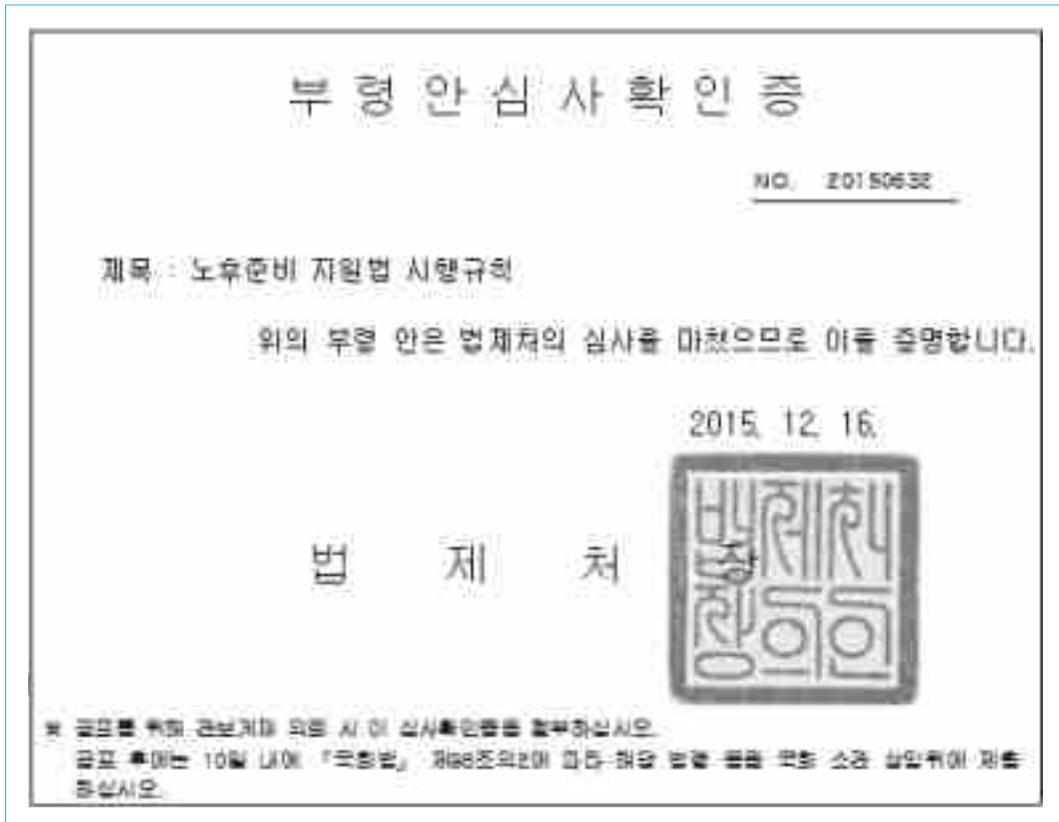
3) 부처 이송

심사완료 된 부령, 총리령, 국무총리훈령, 대통령훈령 등을 부처에 이송하는 방법은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 메뉴에서 법제(심의)관 또는 실무자에게 배정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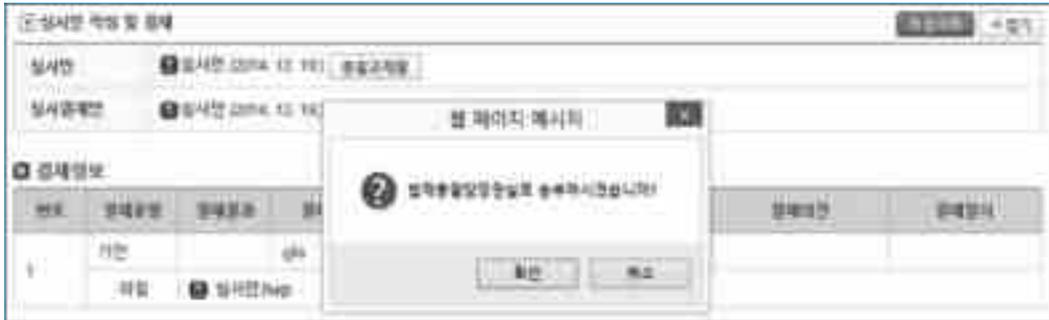
※ 심사확인증 발급

단계	계정명	담당자명	담당자담당부서	처음
법령안 심사	법제(심의)관 (2015. 12. 16)	김우진(부처)	법제처 법령실 (2015. 12. 16)	(X)
법령안 심사	법제(심의)관 (2015. 12. 16) 법제(심의)관 (2015. 12. 16)	김우진(부처) 김우진(부처) 김우진(부처)	법제처 법령실 (2015. 12. 16)	(X)

법령안 심사 단계의 [심사확인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확인증 발급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확인증이 발급된다.



4) 심사완료 후 결재안/심사안 법제총괄담당관실 송부 방법



- 최종 결재안 반영이후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한다.
 - ① 법령안 심사화면에서 [총괄과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확인
 -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으로 법제총괄담당관실로 송부

유의사항

※ 최종 결재안 파일을 반영하거나 [수정없음]을 선택한 이후, 법률, 대통령령은 자동으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 법령안 심사현황 및 통계 활용 방법

1) 법령안 심사현황

가) 법령안 심사현황 기능 실행 방법



- 법제처 사용자들이 법령안의 심사현황 및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 [정부입법 > 법제처 통합관리 > 법령안 심사현황] 메뉴를 선택하면 법제처의 심사실적현황, 심사실적현황통계, 심사현황, 심사현황통계 등을 한눈에 조회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화면이 전체화면으로 나타난다.

유의사항

※ [정부입법 > 법제처 통합관리 > 법령안 심사현황] 기능은 법제처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나) 심사 중인 법령안 현황 검색



- [심사현황] 탭에서는 현재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어 접수대기 중인 법령안과 접수이후 결재완료 이전의 심사 중인 법령안 전체를 조회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및 소관부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② 소관 법제국별, 법제관실별로 검색할 수 있다.
 - ③ “법제관(담당자)”란에 담당하는 법제(심의)관 명이나 실무자, 알법검토 담당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 ④ 접수일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 ⑤ “추진현황”에서는 심사의뢰(접수대기), 법령안심사, 법령안결재 중인 법령안들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⑥ “알법검토대상, 심사경과보고서, 법제정비대상, 하위법령제때마련”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해당 대상 법령안이 검색된다.
 - ⑦ “지연법령”란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지연일수를 숫자로 입력하면 접수일로부터 지연일수가 도과한 법령안이 검색된다.

유의사항

- ※ 여러 개의 검색 조건을 중복해서 선택하면 선택한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예) 알법검토대상과 심사경과보고서를 둘 다 선택하고 검색하면 알법검토대상이고 심사경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다) 검색결과를 선택하여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 심사현황 검색결과 중 하나의 법령안을 선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해당 법령안의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법령안에 대한 작업 권한이 있는 경우 상세조회 화면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법령안에 대한 접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이면 위 그림과 같이 심사현황 검색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사 담당자 및 알법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담당 법령안에 대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 심사실적현황

가) 결재완료 현황 조회 방법

The screenshot shows the MOLEG system's search interface for '심사실적현황' (Review Performance). The search criteria include '결재유형' (결재), '결재일자' (2019.11.01), '결재일자' (2019.11.01), and '결재일자' (2019.11.01). The search results table is as follows:

번호	법명명	결재유형	결재일자	결재일자	결재일자	결재일자	결재일자
2019-11-0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2호	결재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2호	결재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2호	결재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2호	결재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2호	결재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2019.11.01

- 심사가 완료된 법안 및 중단된 법안(반려 또는 철회)의 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기능이다.
- [정부입법 > 법제처 통합관리 > 법령안 심사현황] 메뉴의 상단 탭 중 [심사실적현황] 탭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 기본적인 검색조건은 심사안 결재일이 5년 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반려 또는 철회 안건을 검색하려는 경우에는 결재일 기간을 삭제하고 “추진현황”란에서 검색조건을 “법령안심사반려”, 또는 “철회”로 선택하여야 한다. (상세한 검색 방법은 다음 장 참조)

나) 심사실적현황



- 결재완료 현황에 대한 상세 검색을 제공한다.
 - ①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및 소관부처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 ② 소관 법제국별, 법제관실별로 검색할 수 있다. “법제관(담당자)”란에 담당하는 법제(심의)관 명이나 실무자, 알법검토 담당자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법령안이 검색된다.
 - ③ 접수일과 결재일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을 지우려는 경우 기간 옆에 위치한 [X]버튼을 선택한다.
 - ④ “차관회의결과” 및 “국무회의결과”란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국무/차관회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차관국무회의 상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 ⑤ “추진현황”란을 선택하면 심사가 종료된 법안(반려, 철회 포함)의 현재 추진현황별로 검색할 수 있다. 법령안심사반려나 철회를 선택한 경우에는 결재일이 없기 때문에 결재일을 삭제하고 접수일 기간으로 검색하여야 한다.

바. 지시사항 등록관리 방법

1) 심사 담당자의 지시사항 등록/조회



- 심사 또는 결재 중 담당 국장이나 처차장실 등(이하 “심사총괄자”라고 한다)의 지시사항의 이력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다.
- 심사담당자가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법령안 심사함]에서 심사안을 작성하여 등록하면 [지시사항] 버튼이 나타난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지시사항과 처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심사담당자는 심사총괄자가 직접 등록한 지시사항을 [지시사항] 또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등록할 수 있고, 이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 지시사항은 심사담당자와 심사총괄자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만 공개된다.

2) 심사총괄자의 지시사항 등록/조회





- 해당 법안의 처·차장실 및 국장 등 심사 총괄자는 법령안을 선택하여 심사담당자에게 지시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입법 > 법제처 통합관리 > 법령안 심사현황] 메뉴를 선택한다.
 - ② 심사현황 화면에서 검색된 심사 중인 법안을 선택한다.
 - ③ 심사 중인 법안의 입법추진현황 항목에서 “법령안 심사”란 중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 심사화면에서 지시사항을 등록한다.

유의사항

※ 심사담당자가 구두나 서면 지시사항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법률, 대통령령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결재 완료 후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정부이송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유의사항

- 법률은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 후,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외한 법령안은 심사결재 완료 후 공포정보를 관리한다.

가. 차관회의 상정 및 관리

법제정책총괄과가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차관/국무회의함] 메뉴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단계의 안건을 조회 후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여 차관회의 제출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번호	명칭 (공포정보)	승인일자 (승인일자)	공포일자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번호)	공포일자 (공포일자)	공포번호 (공포번호)	처리일자
<input type="checkbox"/>	국회 및 국회에 제출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됨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input type="checkbox"/>	국무회의로 이송된 사항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국무회의 (2022.11.10)	일시

유의사항

※ 안전상정 보고 - 법령안 입안자가 차관·국무회의 안전상정 보고를 하는 기능이다.(온나라 공문 기능)

메시지 전송 - 총괄담당관이 입안자에게 상정안건의 첨부자료 등록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차관회의 제출 - 선택된 안건을 차관회의에 일괄 제출하는 기능이다.

국무회의 제출 - 선택된 안건을 국무회의에 일괄 제출하는 기능이다.

공포함 이송 - 공포/발령/고시/공고함으로 이동하는 기능이다.

- 상세조회화면에서 [상정안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차관회의제출 팝업화면에 심사결재 완료된 심사안이 차관회의 원안으로 자동 등록되어 있다. [희망회의/회차]를 선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 차관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직접 상정할 경우 국무회의를 선택한 후 [희망회의/회차] 를 선택하여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출은 차관회의 접수 전까지 반복적으로 가능하며, 여러 번 제출했을 경우에는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서 필요 없는 안건을 폐기처리 해야 한다.



이 기능은 법령안 입안자가 안전상정 보고(결재발송) 또는 차관회의 첨부관리 파일을 저장 또는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해당 안건의 상정안을 차관회의 제출 또는 수정하는 기능이다.

법제정책총괄과(차관/ 국무회의 담당자)는 법령안 심사 완료함에서 에서 차관회의 제출대기 되어있는 해당 법안을 클릭하여 차관회의 상세(총괄)화면을 클릭하여 차관회의 제출 팝업을 띄우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차관회의에 제출한다. 파일의 수정이 필요한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 상정안 접수 전에 법제관실에서 원안수정내용이 있을 경우 최종상정안과 함께 작성하여 결재완료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최종상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제정책총괄과는 필요시 최종상정안을 등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상정안이 접수된 후 수정안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전에 법제관실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결재완료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법제관실에서 비용추계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등 첨부파일을 등록하면 법제정책총괄과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다.
 - 차관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므로 따로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지 않으며, 수정의결 된 경우 법제관실에서 차관회의수정사항을 작성하여 결재완료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수정사항을 국무회의로 제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 [회의일자/회차]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 ※ 법제관실에서는 원안수정내용, 최종상정안, 수정안, 수정사항, 첨부파일 등을 등록 및 결재할 수 있으며 법제정책총괄과(차관/국무회의 담당자)에서는 이를 차관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국무회의 상정 및 관리

법제정책총괄과는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차관/국무회의합] 메뉴에서 국무회의 단계의 법률/대통령령을 조회 후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여 국무회의 제출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국무회의 개최 전 수정안이 발생할 경우 법제관실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결재완료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국무회의 수정의결된 경우에도 법제관실에서 수정사항을 작성하고 결재완료 후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자동으로 국무회의 상정안이 공포안으로 자동 등록된 후 공포대기 상태로 변경된다.

구분	제출일	제출자명	주요내용 및 날짜	제출
초청안 제출	2015년 01월 22일	김우현(국회)	김우현 초청안(2015. 01. 26)	[초청]
초청안 철회	2015년 02월 02일	김우현(국회)	김우현 초청안(2015. 02. 02)	[초청철회]

구분	제출일	제출자명	주요내용 및 날짜	제출
초청철회	2015년 02월 02일	김우현(국회)	김우현 초청안 철회(2015. 02. 02)	[초청철회], [초청철회철회]
공문발송		김우현(국회)	공문발송(2015. 3. 4.)	[공문발송], [공문발송철회]

국무회의 제출 X

허베이 스킴리프 불법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치환 및 재영원장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출일자/회차 : 2015년 제20회 국무회의(12-29)호

원안	제출일자	
최종심판	확대취급	제출일자
수정안	결재된 수정안이 없습니다.	제출일자
수정서형	결재된 수정서형이 없습니다.	제출일자

[취급] [확대]

다. 국회 제출안 확인 및 국회의안정보 연계방법

1) 국회 제출안 확인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서 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이 진행되며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는 국회제출안 및 공문문서번호, 공문발송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회의안정보 연계방법

법제정책총괄과, 법제관실, 입안담당자는 국회제출 이후부터 공포등록 전까지 법률안의 상세조회에서 [국회제출법률안 연계] 버튼을 클릭하여 국회의안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구분	제출자	제출처	제출일자	처리
입안제출	국무회의 (2014. 12. 31)	국무회의	입안제출 (2014. 12. 31)	입안
입안제출	국무회의 (2014. 12. 31)	국무회의	입안제출 (2014. 12. 31)	입안

구분	제출자	제출처	제출일자	처리
입안제출	국무회의 (2014. 12. 31)	국무회의	입안제출 (2014. 12. 31)	입안
입안제출	국무회의 (2014. 12. 31)	국무회의	입안제출 (2014. 12. 31)	입안

국회의안 선택

입안번호: 제정일: - 제정처:

입안명:

전체 1건 (1 / 1)

입안번호	제정일	제정처	국회의안명
입안번호 (제정일)	제정일	제정처 (제정일)	국회의안명 (제정일)
입안번호 (제정일)	제정일	제정처	국회의안명 (제정일)

- 온-나라국정관리시스템에서 국회제출이 진행되면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국회제출안을 확인할 수 있다.
- 소관부처 입안담당자, 법제정책총괄과(차관/국무회의의 담당자), 법제관실에서는 대상 법령안을 선택한 후 국회제출 단계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국회의안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

라. 정부이송안 확인 및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이송안은 매일 1회 자동으로 수신되며 정부이송안, (공포안)국무회의의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정부이송안 및 정비대상 법령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이송안 파일은 국무회의 상정안으로 자동 등록되고 법제정책총괄과(차관/국무회의의 담당자)에서 확인 후 제출한다.



- 정부이송안은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정부이송/국무회의함] 메뉴에서 법정정책총괄과 (차관/국무회의 담당자)가 직접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이때, [국회제출법안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국회 제출된 법안을 직접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마. 공포 법령 등 조회

1) 법령별 공포/발령/고시/공고건 조회

법령별 공포번호담당자(총리령 이상 공포자: 법제처, 부령: 중앙부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 법령공포부서)는 해당 건을 선택하여 [정비계획등록], [번호/일자 등록]을 처리하여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 정비계획등록을 수행 할 수 있다.

번호	발령일자	공포일자	공고일자	처리	삭제
1-1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1-2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1-3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1-4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1-5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1-6	2024.01.01	2024.01.01	2024.01.01	완료	삭제

- 로그인한 사용자 별로 사용자 소관부처의 공포/발령/고시/공고 대상 건이 보인다. 추가적으로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공포처리 대상 건을 조회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처리 가능한 법률의 종류로 자동조회 되며, 처리 가능한 기능은 하단의 버튼으로 제공한다.

2) 공포번호/공포일자 등록일자 등록

공포번호 상세
✕

공포번호 정보

공포번호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관리처분번호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기관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처분	공포	제약요구번호	공포처분
공포처분일자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처분 일자	2022.10.28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일자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공포처분 일자	2022.10.28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일자	2022.10.28	공포처분 일자	2022.10.28	공포처분 일자	2022.10.28
공포처분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 일자

공포번호 정보

공포번호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번호				
기관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처분	공포	제약요구번호	공포처분
공포처분일자	제약요구를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처분 일자	2022.10.28	공포처분 일자
공포처분일자	공포처분 일자				

- 공포번호/공포일자 등록 처리 팝업에서는 관보 게재안 생성을 위해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관보시스템에 요청하고자 하는 관보 게재안을 생성 할 수 있다.

공포번호/공포일자 등록

공포번호 등록/수정

○ 대용량별	공포번호	<input type="text" value="시행조항"/>	<input type="button" value="최근공포번호 보기"/>
○ 공포일자	오늘부터	7월 이후 공포	공포일자: 2017. 12. 5
○ 시행일자	<input checked="" type="radio"/> 공표된 날부터 시행 <input type="radio"/> 확정된 날부터 시행 <input type="radio"/> <input type="text" value="개월"/> 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일자: 2017. 12. 5

- 공포번호는 해당 법령별로 시스템에서 자동부여기능이 제공되어 중복 공포번호에 대한 검증기능을 제공한다.
- 작성된 관보게재 안은 편집 및 자동생성기능으로 파일로 저장된다. 공포안에 대한 수정 시 관보게재 안은 편집 및 재생성이 필요하다.

최근공포번호 조회

전체 274 건 (1/28)

공포번호	법령명
13422	조교생 및 지체장애 학생교육을 장려한다는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3421	역사지명도 현명성이 높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 일부개정법률
13420	주택회계 개선안 및 세무대학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3419	국제교섭을 위한 기업에 자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418	직선제다당제법 일부개정법률
13417	국회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
13416	부동산등기 및 건축물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3415	전보위탁분류법 일부개정법률
13414	선형변환율 측정법 일부개정법률
13413	위키나눔인사이드 및 관리 용역 공백 법제 일부개정법률

- 공포번호 자동부여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과거 공포 번호 중 누락 처리되어 부여 가능한 번호 대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최근공포번호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3) 공포결과 등록/공포정보 수정

공포정보 상세
✕

공포관 정보

원산지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관리대상명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혹은 일부지역명칭				
주요소재	행정안전부	장소명	장소	등록일	등록일자
관리대상명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관리대상명	장소명 / 장소명	등록일	2022. 10. 18
관리대상명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일부지역명칭	관리대상명	장소명 / 장소명	등록일	2022. 11. 18
관리대상명	[관리대상] [관리대상명]				
주요소재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일부지역명칭				
주요소재	12345	관리대상명	2022. 10. 18	등록일	2022. 10. 18
주요소재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관리대상명	장소	관리대상명	관리대상명

[취소] [확인]

← 이전페이지
▶ 다음페이지

공포관 정보

관리대상명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일부지역명칭				
주요소재	행정안전부(12345)	장소명	장소	등록일	등록일자
주요소재	12345	관리대상명	2022. 10. 18	관리대상명	장소명
관리대상명	특정장소를 지칭 기입의 적용대상 지리적 장소 명칭	관리대상명	장소명 / 장소명	등록일	2022. 10. 18

[취소] [확인]

- 과거 공포자료나 이미 공포한 건에 대한 추가적인 등록/수정을 위해 [공포결과 등록] 기능과 [공포정보 수정] 기능으로 공포 자료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소관부처 입안담당자, 법제처 접수담당자, 법제(심의)관, 실무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에 접속하여 행정규칙 등록, 법제처 검토요청, 접수, 협의 등 일련의 행정규칙 사후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유의사항

- 인터넷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보안상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정부행정망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발령된 행정규칙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메뉴를 선택하고 (중앙부처)행정규칙 탭, (부처 소속기관)행정규칙 탭에서 각각 우측의 [사후심사 요청] 버튼을 선택하여 행정규칙을 등록해야 한다.

유의사항

- ※ 각 부처는 훈령·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발령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반드시 정부입법지원센터에 행정규칙 전문과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을 등록해야 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항)



유의사항

- 일몰제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개 대상 훈령·예규 등과 행정기관의 내부 운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저장 시 행정규칙정보계획(행정규칙입법사유-일몰제정비)이 자동 등록된다.



- 각 부처에서 행정규칙을 등록하면 공문 없이 법제처에 제출되어 검토된다. 법제처 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법제처 사후심사의뢰 단계의 [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결재)] 버튼을 클릭하여 공문을 발송한다.

나. 행정규칙 접수·배정

법제처 접수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접수/배정함] 메뉴에서 등록된 행정규칙을 선택하고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접수단계 [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심의)관, 담당자를 배정하여 접수한다.



다. 행정규칙 검토

법제처 행정규칙 법제 담당자는 검토 할 행정규칙을 선택하여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법추진현황 검토의 [상세] 버튼을 클릭한다. 행정규칙 검토 팝업창이 열리면 검토정보를 입력 후 [저장] 또는 [저장(결재)] 버튼을 눌러 온나라 결재를 진행한다.

유의사항

- 정비유형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저장할 경우 행정규칙은 검토완료 되고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완료함] 행정규칙 심사 목록으로 이동한다.
- 결재발송 후 결재가 완료되어야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결재/발송] 버튼을 클릭하며 결재요청하면 검토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 법제관실은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검토단계 [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정비유형, 검토안, 개선의견 수를 입력한 후 [저장] 또는 [저장(결재)]을 클릭하여 검토한다. 결재가 완료되면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검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정비유형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선택할 경우 검토 완료되어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함 > 완료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개선의견 협의

행정규칙을 등록한 담당자는 해당 행정규칙을 클릭하여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에서 입법추진현황 협의에 있는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수용여부 등록/수정 팝업창이 뜨면 수용여부에 수용, 불수용 선택을 선택 하고 정비예정일, 의견내용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한다.

1) 수용여부 등록



- 행정규칙 담당자는 행정규칙 상세조회 화면의 협의단계 [상세]버튼을 클릭한 후 수용여부, 정비 예정일, 의견내용을 등록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수용된 정비의견은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등록된다.
- 공문이 발송되면 행정규칙 검토는 종료되고 정비내용은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행정규칙정비 의견] 메뉴화면에서 입법사유-법제처검토의견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완료된 행정규칙은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 완료함] 행정규칙 심사 목록으로 이동된다.

2) 재검토 및 의견폐기

행정규칙 입안자가 일부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의견 저장을 한 경우 법제처 행정규칙 담당자는 입법추진현황의 재검토 [상세]를 클릭해 행정규칙 검토 팝업창을 띄워 해당안건의 검토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재검토 할 수 있고 의견폐기의 의견폐기사유를 작성 후 [저장]해 의견폐기 할 수 있다.



1) 정비대상법령 등록



- 정비대상법령은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입법계획 연도 및 입법사유, 주요내용 등의 입법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 법제처 각 법제국 및 해석국이 해당 정비사항이 있을 경우 정비대상법령을 통해 등록하면, 각 중앙부처는 이 대상법령을 토대로 법령안 입안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정비대상법령은 법제처에서 입법계획구분을 선택하여 입법계획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

2) 입법계획 확정 요청

중앙행정기관 입법담당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법령] 메뉴에서 등록된 정비대상법령에 대하여 법제처 입법계획 담당자에게 입법계획 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대상법령을 입법계획으로 확정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비대상법령을 법제처와 협의된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대상법령 목록조회, 정비대상법령 상세조회, 정비대상법령 등록/수정 화면에서 [입법계획 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3) 입법계획 확정



- 입법계획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 [입법계획 확정] 버튼을 클릭한다. 입법계획은 정부입법계획(법률), 법령정비계획, 하위법정비계획의 세 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연초] 또는 [추가]계획인지를 선택한다. 만약, [추가]를 선택할 경우 추가된 확정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체크된 정비대상법령이 입법계획으로 확정 처리되고, 입법계획으로 확정된 법령안은 해당 입법계획 메뉴로 이동된다.

유의사항

- 정비대상법령 메뉴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으로 인터넷에서는 조회되지 않는다.
- 입법계획 확정 요청은 소관부처 정비대상법령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나. 정비대상행정규칙



- 소관부처 입안·법령정비담당자 및 법제처 사용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행정규칙] 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건의 등록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 삭제 등의 행정규칙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대상행정규칙 등록

정비대상행정규칙은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행정규칙] 또는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입안함] 행정규칙 입안 시 행정규칙정비의견 탭 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행정규칙명, 필요여부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발굴일, 정비유형, 입법사유 등의 정비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한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administrative interface. On the left is a vertical navigation menu with various option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정비대상' (Target for Revision) and contains several input fields and sections. The '기본정보' (Basic Information) section includes fields for '행정규칙명' (Administrative Rule Name), '필요여부' (Necessity), and '발굴일' (Discovery Date). The '정비사항' (Revision Details)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정비유형' (Revision Type), '입법사유' (Legislative Reason), and '정비대상' (Target for Revision). There are also buttons for '등록' (Register) and '취소' (Cancel).

2) 정비대상행정규칙 확정

행정규칙 정비계획을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행정규칙] 메뉴에서 확정하고자 하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 [행정규칙 정비계획 확정]버튼을 클릭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으로 확정한다.



3) 삭제

정비대상행정규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비대상행정규칙] 화면에서 [삭제]를 할 수 있다.

삭제하려는 행정규칙명을 체크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정비계획 확정여부 확정일 경우엔 삭제가 불가능하다.



다. 정부입법계획

1) 정부입법계획(법률) 관리



- 입법계획 관리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메뉴의 [정부입법계획(법률)] 탭에서 입법계획 등록 및 입법계획 확정 취소, 해당 입법계획 관련자들에게 메시지 송부, 입법계획 철회, 철회취소 등의 정부입법계획(법률)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입법계획 관리자는 이곳에서 [정부입법계획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정된 입법계획을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당 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며, 입법계획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단의 [입법계획 확정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정비대상법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민약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시에는 목록 중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 하단의 [메시지 송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며, 각 담당자들은 정부입법 상단 메뉴에 있는 [메시지] 메뉴를 통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입법계획 관련 메시지 송부



- 각 소관부처 입법담당자에게 해당 계획에 대한 당부 및 추진 촉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법령을 체크하고 [메시지 송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해당하는 계획의 소관부처 입법담당자 및 지정된 심사담당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된다.

나) 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



- 정부입법계획 상세조회에서는 해당 입법계획과 연계된 정부입법 추진현황이나 국회입법현황으로 이동할 수 있다.

2) 하위법령제때마련계획



- 법제처 하위법정비계획담당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하위법제때마련계획 탭에서 하위법정비 계획 등록, 취소, 철회 등의 하위법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법령안 입안시 하위법령 등록



- 중앙부처 입안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에 관계법령 과 상하위법령의 정비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정비사항 있음에 체크를 하면 해당 관련법령, 해당 행정규칙 등을 다수 등록이 가능하다.

나) 법령안 심사시 하위법령 검사

☐ 평생교육법

법령안 검사 > **입법정보 검토**

법제전에 일부입법개화(법질) 및 법제정보의견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일부입법/제정안은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게 바랍니다. [\[법제정보주요 체크사항\]](#)

☐ 입법정보보고서

입법정보보고서

분류	내용별 분류	
	성질별 분류	
검색 키워드 <input type="text"/>		

법제 수명사항 : 없음 있음

☐ 입사연

입사연

법령안 심사이력정보 : 유효기간만 유효기간만

법령정보 일부분서

(내용이력정보분서)	2017년 입고수리, 통역, 여부, 검토서(법) (2018. 12. 8) <input type="button" value="이동하기"/>
(내용이력정보분서)	내용입법보고서(법) (2018. 12. 8) <input type="button" value="이동하기"/>
(고문정보정보분서)	고문본 개정입법정보(법) (2018. 12. 24) <input type="button" value="이동하기"/>

참여대상 관계법령 및 상충법령 없음

입법자 수명사항

수명도원서

입사연 확인 및 정보

체크지(주요)

☐ 자제사항

등록된 문건 없습니다.

- 법제처 심사 담당자는 [정부입법 > 법령안 심사] 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 법령안 상세조회에서 [상세(심사)] 버튼을 클릭하고, 열린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 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다) 공포시 하위법 검사



- 법제처 정책총괄담당자는 [정부입법 > 차관 국무회의/공포 > 정부이송/국무회의] 메뉴에서 정부부처 입안담당자가 지정한 관계법령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이송안의 목록을 선택하면 열리는 팝업창에서 기존 관련법 및 상하위법령을 확인한다.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법령들을 수정하거나 다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 이때 최종 확인된 정비대상 법령들은 정비대상법령과 행정규칙 정비계획으로 자동 등록된다.

3) 행정규칙정비계획



- 법제처 법령정비 담당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행정규칙정비계획] 탭 메뉴에서 행정규칙정비 계획 탭을 통해 정비해야 하는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정규칙정비계획 목록에서 정비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메시지송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소관부처에 정비를 촉구하는 메시지발송이 가능하다.

4) 법령정비계획



- 법제처 법령정비담당자는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법령정비계획] 메뉴에서 법령정비계획 등록 및 확정취소, 철회 등의 법령정비계획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정부입법계획(통계)

1) 정부입법계획 통계

입법계획	입법예고	제정	시행	폐지	비준
입법계획	0	0	0	0	0
입법예고	0	0	0	0	0
제정	0	0	0	0	0
시행	0	0	0	0	0
폐지	0	0	0	0	0
비준	0	0	0	0	0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 정부입법계획 통계] 탭에서 정부입법계획의 부처별, 진행단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

입법계획	입법예고	제정	시행	폐지	비준
입법계획	0	0	0	0	0
입법예고	0	0	0	0	0
제정	0	0	0	0	0
시행	0	0	0	0	0
폐지	0	0	0	0	0
비준	0	0	0	0	0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통계 탭에서 하위법령 제때마련 통계, 법령정비계획 추진현황 통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현황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3) 법제총괄관리 현황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법제총괄관리 현황탭에서 총괄관리현황을 각각의 조건별로 검색하여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4) 행정규칙 통계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행정규칙 통계 탭에서 행정규칙의 지연현황, 일반현황을 부처별로 이전부처나 연혁을 포함하여 조회 확인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 통지 통계



- [정부입법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계획(통계)] 지방자치단체 통지통계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안시, 심사시, 부처협의, 입법예고 통지 건수와 점검표 첨부 건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 정부입법현황

No.	입법종류	입법유형	제정일	시행일자	입법현황
1001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2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3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4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5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6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7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8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09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1010	제10회 국회(제1차) 국정감사 보고서	국회입법	2022.1.18	2022.1.18	입법완료

- [정부입법 > 국회/정부 입법현황 > 정부입법현황]에서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바. 국회입법현황

제안번호	제안명	제출일자	처리현황	제출기관	제출인명
국회입법안 제100호	국회입법안 제100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1호	국회입법안 제101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2호	국회입법안 제102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3호	국회입법안 제103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4호	국회입법안 제104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5호	국회입법안 제105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6호	국회입법안 제106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7호	국회입법안 제107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8호	국회입법안 제108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9호	국회입법안 제109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10호	국회입법안 제110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 [정부입법 > 국회/정부 입법현황 > 국회입법현황]에서는 국회에서 처리중인 법률안에 대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사.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제안번호	제안명	제출일자	처리현황	제출기관	제출인명
국회입법안 제100호	국회입법안 제100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1호	국회입법안 제101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2호	국회입법안 제102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3호	국회입법안 제103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4호	국회입법안 제104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5호	국회입법안 제105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6호	국회입법안 제106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7호	국회입법안 제107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8호	국회입법안 제108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09호	국회입법안 제109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국회입법안 제110호	국회입법안 제110호	2023. 1. 10.	제출	국회입법안	김영민

- [정부입법 > 국회/정부 입법현황 >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메뉴에서 국정과제이행법안담당은 국정과제 입법계획대비 입법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입법의견은 누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편법령 등 특정법령과 관계가 없는 입법의견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입법의견에서 통합하여 제공되며, 정부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담당자가 의견을 선정하여 정비대상법령을 작성할 수 있다.

가. 입법의견 등록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의 특정 법령에 대한 상세정보화면에서 입법의견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입법제안 메뉴를 통해 [불편법령 신고]와 [차별법령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법령에 대한 의견 뿐만 아니라 특정 법령에 관계없이도 의견을 등록 할 수 있다.



나. 입법의견 검색 및 입법의견 반영

중앙부처 입안담당자는 모든 입법의견에 대한 검색을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법령안 입안함] 또는 [정부입법 > 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답변]에서 해당 법령을 클릭한 후 입법의견 관리 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등록 된 입법의견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답변 및 의견별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다.



[(일괄)답변작성] 팝업 상세화면에서 [통지]는 답변 등록 시 답변 대상자에게 바로 통지를 하고, [등록]은 입법예견에 대한 답변 등록만 하는 것으로, 등록 후 입법예견 관리 탭에서 개별로 통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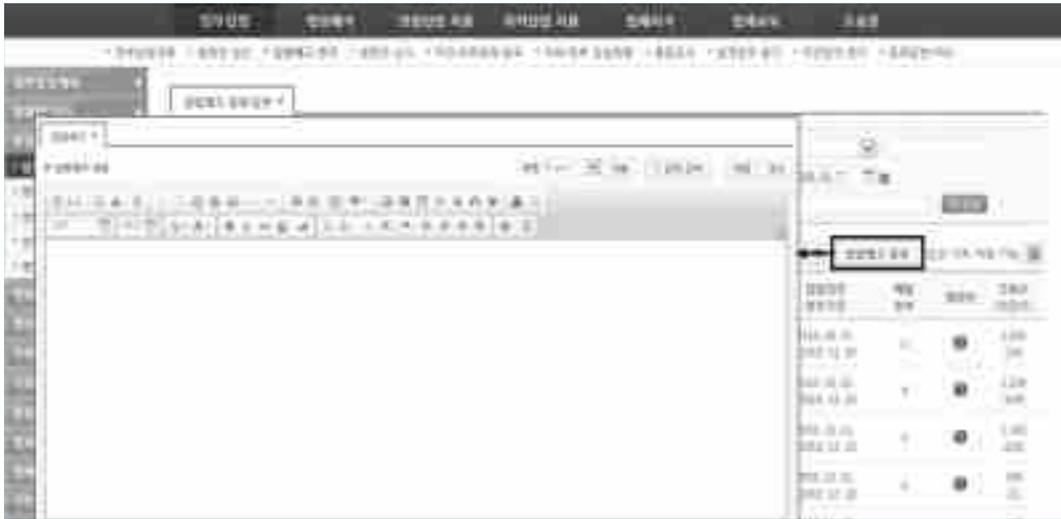


다. 관보 입법예고안 관리

관보입법예고는 관보에 등록되는 입법예고를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법제처의 입법예고 관리자가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이 정보는 정부행정망과 인터넷 모두에 입법예고 서비스로 제공된다.

1) 입법예고 등록

입법예고 등록 담당자는 [정부입법 > 차관·국무회의/공포 > 대한민국 관보]를 참고하여 [정부입법 > 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답변] 메뉴에서 [입법예고 등록] 버튼을 눌러 입법예고를 등록한다. 입법예고 내용 입력 후, [자동추출]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 추가란을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른다.



2) 입법예고 메일송부



- [정부입법 > 입법예고 관리 > 입법예고 등록·답변] 메뉴의 [메일송부]는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 센터)의 입법예고 의견접수 건에 대한 해당 법령의 입안담당자에게 답변작성유도 안내메일이다.

사용자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법제지식] 메뉴에 접속하여 최신법령소식, 언론보도, 입법 기준/편람, 입법지식 등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제 지식 정보를 보면서 질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질의/의견들은 누구나 답변할 수 있다.

가. 최신법령소식

1) 공포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발령일자	공포일자	공포일자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 및 공포에 관한 법률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 [법제지식 > 최신 법령소식 > 공포법령] 메뉴에서 공포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2) 폐지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발령일자	공포일자	공포일자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 및 공포에 관한 법률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국립중앙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2. 31	2016. 1. 1	2016. 1. 1	2016. 1. 1

- [법제지식 > 최신법령소식 > 폐지법령] 메뉴에서 폐지법령을 조회 할 수 있다.

다. 입법기준/편람

1) 법령입안심사기준



- [법제지식 > 입법 기준/편람 > 법령입안심사기준] 메뉴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2)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 [법제지식 > 입법기준/편람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메뉴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대상 용어와 정비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3) 법제업무편람



- [법제지식 > 입법기준/편람 > 법제업무편람] 메뉴에서 법제업무편람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제업무편람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4)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 [법제지식 > 입법기준/편람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메뉴에서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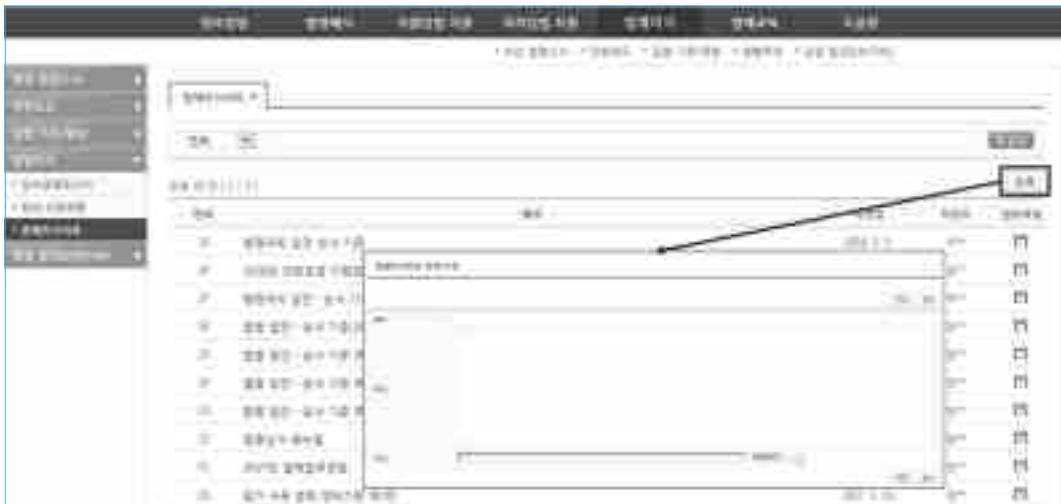
5)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 [법제지식 > 입법기준/편람 >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메뉴에서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정보를 목차 별 분류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다. 검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 상세검색” 탭을 클릭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라. 입법지식

○ 법제지식자료



- [법제지식 > 입법지식 > 법제지식자료] 메뉴를 통해 법제지식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법제지식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IX

**국가표준
법령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법령안편집기란 법령안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현행법령의 조문을 확인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조문을 작성할 수 있고, 개정조문을 작성하고 나면 현행 조문과 개정 조문을 서로 비교하여 자동으로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령안 편집 프로그램이다.



- 법령안편집기는 정부기관의 법령 및 행정규칙의 편집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의 자치법규의 편집을 모두 지원하도록 통합되어 있고, 정부행정망이나 인터넷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법령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편집하면 서버에 바로 저장될 뿐만 아니라, 개인 PC에서도 법령안을 생성·편집·저장할 수 있다.

가. 설치파일 다운로드 방법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법령안 작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법령안편집기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메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법안 3.1] 버튼을 선택하여 법령안편집기를 다운로드 한다.

나. 설치 방법 및 실행방법

법령안편집기 설치파일(법안3.1 setup.msi)을 사용자의 PC로 다운로드 하고 실행하면 법령안편집기 설치가 진행된다. 약관 확인 후 설치순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여 법령안편집기가 설치되면 바탕화면에 법령안편집기를 PC에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된다.

바탕화면에 설치된 [법령안편집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만약,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법령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법령안편집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입안·심사 > 나의 할일] 메뉴에서 대상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기가 실행된다.

0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법령안편집기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과 사용자 PC에서 각각 법령안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신규 법령안 작성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신규 법령안 작성' (New Bill Creation) pag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정부입법', '법령예석', '의원입법 지원', '자치입법 지원', '법제지식', '법제교육', and '도움말'. The left sidebar lists various functions such as '정부입법계획', '법령안 입안', '법령안 입안함', '법령안 입안지침 요청함', '법령안 부지침의람', '행정규칙 입안함', '행정규칙 사무심사 요청함', '공유/공관함', '결재/발송함', '접수/배정함', and '완료함'.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search bar for bills, a dropdown menu for '법령안' (Bill Type), and a '기본정보' (Basic Information) section. This section includes fields for '법령종류' (Bill Type), '제정구분' (Regulatory Part), '일부개정' (Amendment), '제안권자' (Proposer), '법제' (Legislation), and '법제(심의)관' (Legislation Reviewer). There are also checkboxes for '정비' (Preparation), '검토' (Review), and '승인' (Approval). The interface is designed for efficient bill creation and management.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의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에 등록된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초안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안을 작성한다. 법제처 심사담당자의 경우 심사의뢰된 법령안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심사 단계에 [심사안 작성]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안을 작성할 수 있다.
- 사용자 PC로 신규 법령안을 작성하는 경우 편집기 실행 후 편집기 실행화면의 상단 메뉴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법령선택 팝업 화면이 나타나면 팝업화면 상단의 법령정보에서 [신규작성/제정(일괄)]을 선택한 후 법령안 기본정보(법령구분,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등)를 선택하여 법령안을 생성한다.



나. 법령안 저장과 끝내기

저장의 방법은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방식과 사용자 PC에서 실행한 방식이 동일하다. 편집기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편집중인 파일이 저장된다(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실행한 경우 정부입법지원시스템 서버에 저장되고, PC에서 실행한 경우 사용자 PC에 저장된다).

편집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기 상단 메뉴의 [파일 >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본을 저장한 후에 종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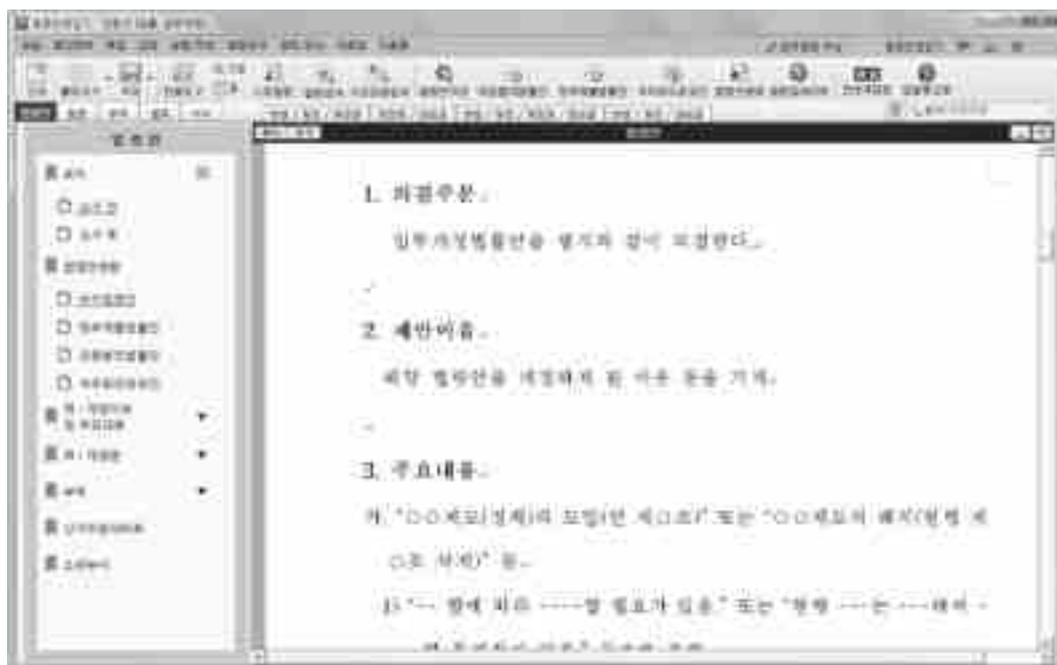
※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서 저장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지만 PC에 사본 저장을 체크하면 법령안편집기 파일(.law3)과 한글파일(.hwp)이 각각 로컬PC에도 저장되어, 사용자 PC에서도 법령안편집기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편집할 수 있다.



다. 작성된 법령안 불러오기

정부입법지원시스템에 작성된 법령안은 [정부입법 > 법령안 입안 > 법령안 입안함] 메뉴에서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여 나오는 상세조회 화면의 [법령안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불러올 수 있다.

사용자 PC에 저장된 파일은 법령안편집기 파일(.law3)을 더블클릭하거나, 최근 열어본 파일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고, 메인창 상단 메뉴의 [불러오기] 버튼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다.

나. 조문편집과 검토

본문내용 탭에서는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할 수 있다. 조문을 편집한 후, [검토/검사 > 스타일링] 버튼을 클릭하면 조문의 누락, 중복 검사가 실행될 뿐 아니라, 조문형식(들여쓰기/내어쓰기, 폰트크기 등)을 자동으로 맞춰준다.



0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일부개정 법령안을 편집할 때는 현행조문과 조문편집 비교를 통한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자동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령안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가. 법령안 작성

법령안 탭에서는 편집기에서 제공되는 표준서식에 따라 표지를 수정하거나,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칙, 별표·서식 등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법령의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을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탭 좌측의 탭들을 활용하여 편집해야 한다.

나. 조문의 신설 방법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을 직접 추가하여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이동하고 빈 조문의 위치에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설한다.



신설 조문 입력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신설에 대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다. 조문의 삭제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삭제할 조문을 지운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에 대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된 경우에도 삭제 처리된다.



※ 조문의 내용 또는 순번이 누락된 경우에도 오류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조문의 일부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일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자동 생성된 개정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직접 수정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마. 조문의 전문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문의 어절단위가 70% 이상 수정되면 전문개정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전부개정에 대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 전문개정 방식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조문 개정문 편집창에서 개정문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직접 수정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개정문의 내용이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에 반영된다.

바. 조문의 이동과 맞교환 방법

조문편집 창에서 이동(또는 맞교환)할 조문 내용을 직접 원하는 위치에 복사하여 조문의 번호를 수정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또는 맞교환)된 조문을 찾아내어 이동(또는 맞교환)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생성된다.



※ 편집기가 이동을 파악한 조·항·호 등의 문장 맨 뒷부분에 “<중전의 제○항에서 이동>”이라는 문장이 자동으로 붙게 된다.

사. 법령 제명의 개정 방법

조문편집 창의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제명 변경에 대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아. 법령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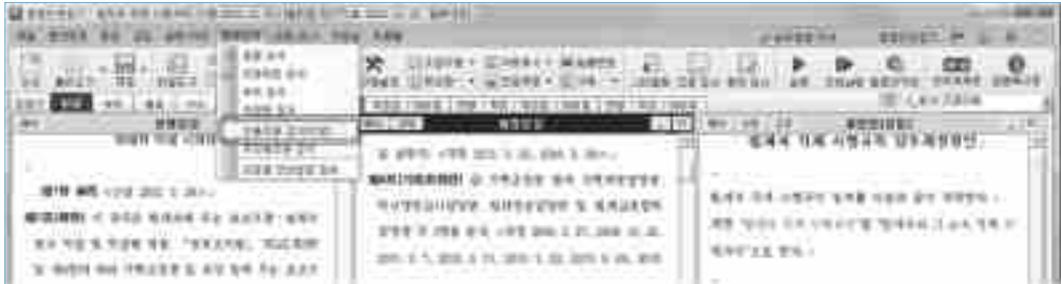
작업이 끝나면 [법령안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한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한다. 법령안 탭으로 전환되면서 각 일부개정관리 탭에서 작성한 개정문내용이 반영된다. 법령안으로 반영된 후에도 다시 탭을 전환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나. 법령안편집기의 인용 조문 등 검색 기능 활용

1) 피인용조문의 검색

법령안편집기는 법령명과 대상조문을 분리하여 검색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인용조문을 검색하는 경우보다 정확하게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다.



- 피인용조문 검색은 [법령검색 > 피인용조문 검색]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법령명]과 [대상조문]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생성되며, 목록을 클릭하면 피인용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패턴 검색

조문패턴 검색은 조문 제목, 내용, 제외어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검색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가) ~부터 ~까지 범위 검색

~부터 ~까지 범위를 검색하는 기능은 숨어 있는 인용 조문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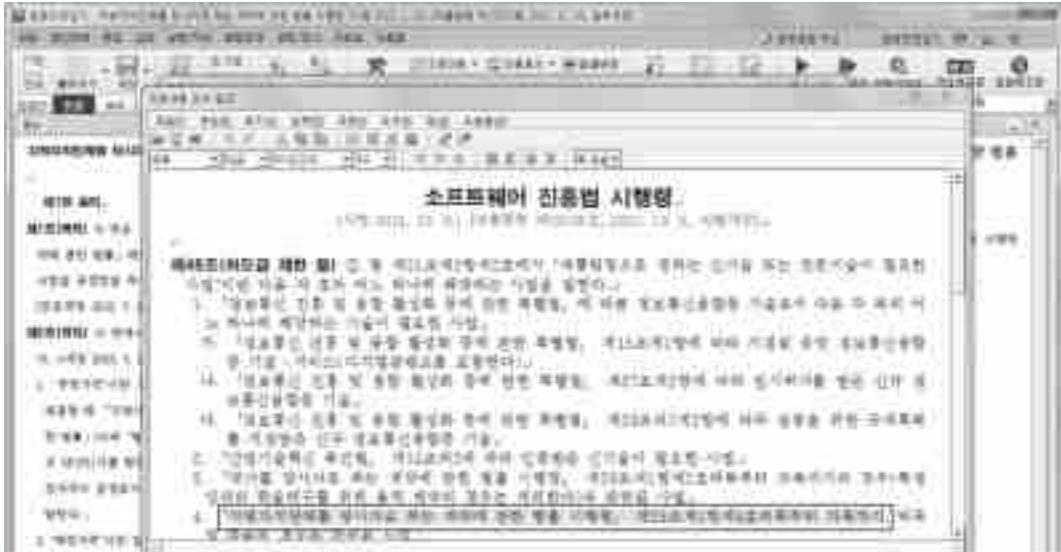


- [법령검색 > 조문패턴 검색] 메뉴를 클릭한다.



- [법령 종류]에서 검색 대상이 되는 법령 종류를 선택한 후 [조문 내용]에 찾으려는 법령의 제명(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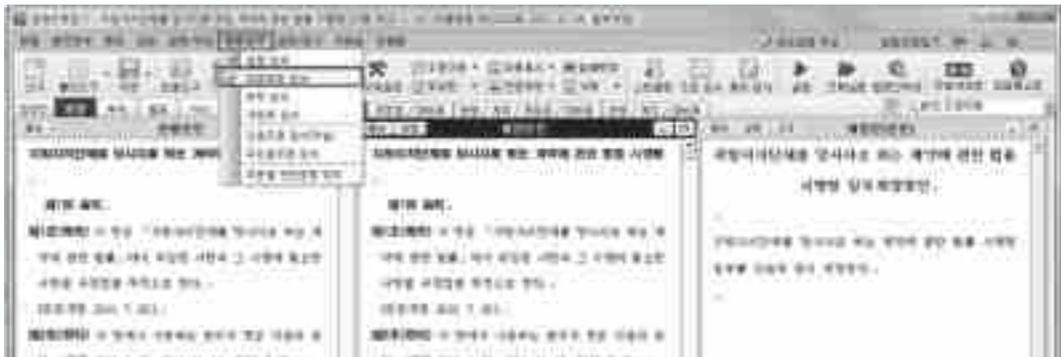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터 ~까지'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부터 제0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목록이 생성된다.



- 목록을 클릭하면 법 조문의 내용이 팝업창으로 제공되므로 검토 대상이 되는 피인용조문이 인용법령의 조문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나)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 활용

법령안편집기는 다양한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다양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조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을 보다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 [법령검색 > 조문패턴 검색] 메뉴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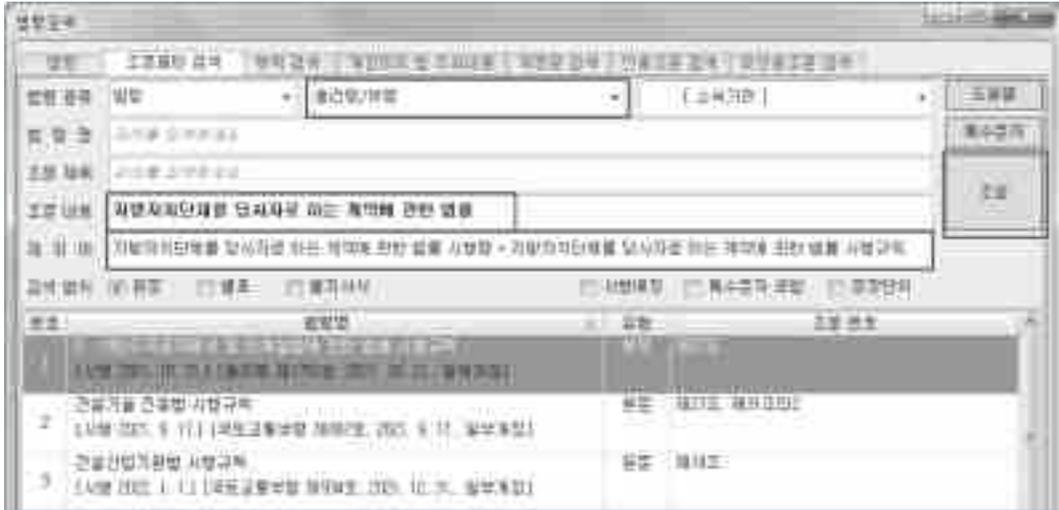
- [조문 내용에 찾으려는 키워드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 '과태료'와 '이의제기'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조문을 찾으려는 경우에는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표)를 활용하여 '과태료*이의제기'라고 키워드를 입력한다. 키워드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과태료'와 '이의제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조문 목록이 생성된다.

다) 제외어 기능의 활용

제외어 기능은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은 경우 특정한 용어를 포함한 결과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검색 결과의 범위를 축소하고, 검색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만 남도록 함으로써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이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 [법령검색 > 조문패턴 검색] 메뉴를 클릭한다.



- [법령 종류]에서 검색 대상이 되는 법령 종류를 선택한 후 [조문 내용]에 찾으려는 법령의 제명(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입력한다. 그리고 난 후 [제외어]에 제외하려는 키워드(예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이 예시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외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결과만을 추출할 수 있다.

다. 인용 오류 조문 확인 기능 활용

법령 제·개정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순한 인용 오류만을 시정할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법령의 현행 조문에 오류가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오류가 존재할 때는 이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안편집기에서는 이러한 현행 조문의 인용 오류 검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인용조문 검색(타법)' 기능을 통한 인용 오류 확인

법령안편집기의 '인용조문 검색(타법)' 기능은 현행 법령상 다른 법령의 제명이나 인용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다.

07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가. 스타일링

현행 또는 개정조문에 조문형식(들여쓰기, 내어쓰기, 폰트 서식 등)을 표준에 맞춰주고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는 기능이다.

스타일링 실행 시 조문의 중복, 누락 등 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 조문형식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며 조문편집과 스타일링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오류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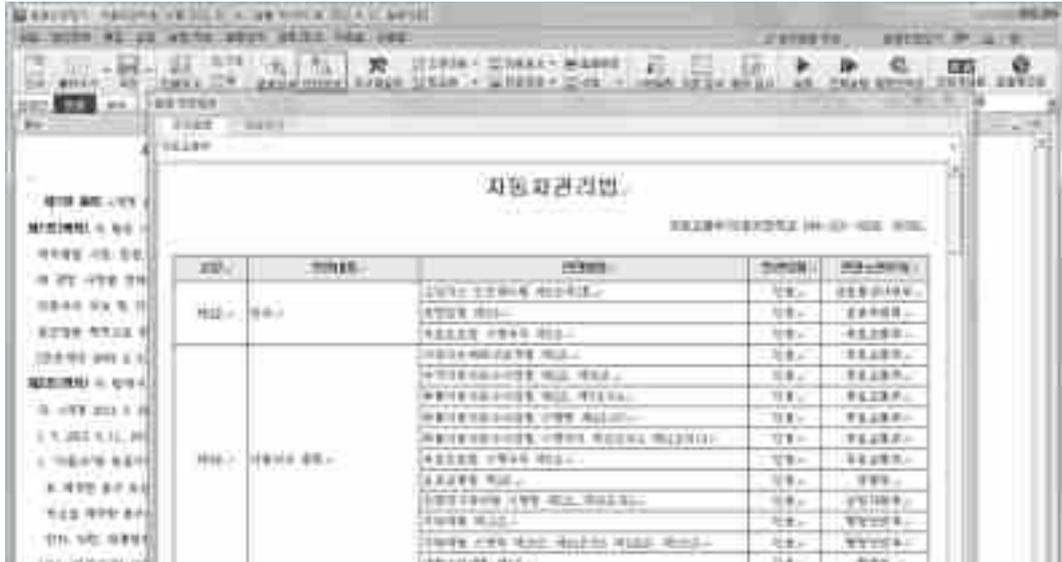


나. 용어검사

편집한 조문편집 창의 조문 내용에 대해 알법정비용어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알법정비용어 검사결과는 왼쪽 화면에 목록으로 보여지며 용어순화 탭 안의 검토용어 추출을 사용하여 알법정비용어를 추출할 수 있다. 추출 후 다음을 클릭하면 알법정비용어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제공하거나, 빠른아이콘이나 메뉴에서 연관정보 버튼을 클릭해 오픈한다.



마. 특수문자 입력

법령안 작성 중 자주 쓰이는 특수문자(항기호, 가운데점, 낫표) 등의 문자는 여러 가지 기호가 있어 문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문자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특수문자를 입력하려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기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바. 환경설정 방법

법령안편집기 사용 시 필요한 환경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1) 화면탭 관리

사용자가 법령안편집기 편집화면에 기본으로 보여질 화면탭을 설정한다.

2) 메뉴그룹 설정

법령안편집기에 표시될 메뉴를 설정한다.

부록 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1. 심사 전 단계

- 소관 부처의 입법계획을 숙지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소관 부처의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안 지원 및 이견 조정 등을 한다.
- 공약·국정과제, 하위법령 특별정비, 하위법령 제때 마련 법안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법안의 경우 사전심사를 적극 실시한다.
- 사전심사 시 중요 사항은 미리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 법령안의 심사의뢰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심사를 준비한다.

2. 심사 접수 단계

- 정부입법시스템 외에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도 심사의뢰 했는지 확인한다.
- 개정이유서 등 누락된 첨부문서가 없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입법예고, 부처협의,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통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한다.
-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첨부문서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반려·철회 처리한다.
- 시행일, 심사소요기간 등을 검토한 후 심사일정을 설계한다.

3. 법안 심사 단계

가. 법안 내용 검토

- 해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한 후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한다.
-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한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9년판) 제1편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26~42쪽)참고.

- 법안의 내용 중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추가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표준 입법례에 맞는지, 법령 정비(위헌법령정비 포함) 대상인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처장실·차장실의 반복 지적사항 등을 숙지하여 반영한다.
-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유효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 예정 법령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시행예정법령의 개정방법

1. 공포 후 시행일 도래 전 법령의 개정방법

법령 공포 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법령을 다시 개정하는 경우로서 개정하려는 내용을 더 일찍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과 함께 공포 후 시행 전 개정법령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

현 행	공포 후 시행 전 법안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2. 5. 25. 시행)	개정 법안 (2012. 5. 25.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략) 1.·2. (생략)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 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략) 1.·2. (생략) 3. 제82조의2제3항 또는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 (생략) 1.·2. (생략) 3.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가.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

<p>〈신 설〉</p>		<p>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p>
--------------	--	--

위 사례의 경우 개정문은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개정하고, 각 목을 신설하는 개정문과 법률 제10719호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개정문을 함께 작성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시행한 경우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이미 개정·시행한 경우,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일 도래 시 ① 당초 개정 시 개정 전 조문과 ② 추후 개정·시행된 조문 중 어느 것을 현행 조문으로 보아 당초 개정 조문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 사례 1 :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전 (법률 제6057호)	개정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개정 2(알법)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공포·시행)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생략) 1. ~ 3. (생략) 4. <u>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u>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생략) 1. ~ 3. (생략) 4. <u>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u>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생략) 1. ~ 3. (생략) 4. <u>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u>
	〈개정문〉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례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전 (법률 제9299호)	개정 1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	개정 2(알법) (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나. (생략)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정의) ----- -----. 1. (생략) 가·나. (생략) 다. ----- ----- 감염병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가·나. (생략)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개정문〉 제3조제1호다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개정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례 3 : 「낙농진흥법」

개정 전	개정 1 (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2009.8.7 시행)	개정 2(알법) (법률 제9660호 2009. 5. 8. 공포·시행)
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기타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제8조(원유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 1.~3. (생 략)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 -----	제8조(원유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제1항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가공업체와 그 밖에 원유를 구입하려는 자
	<개정문> 제8조제2항제4호 중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로 한다.	<개정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현행 조문의 판단

법령의 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공포 당시의 개정대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개정법령의 현행 조문은 시행일 당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례 3과 같이 시행일에 개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오류로 보아 신속히 보충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법안의 경우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적극 참고한다.
- 인용 조문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항 신설·이동·삭제, 약칭 신설·변경·이동 등의 경우 다른 규정을 고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한다.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는지 조문별로 검토한다.
- 제정안·전부개정안, 제명 변경, 조문 이동 등의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 전부개정안의 경우 종전 부칙 중 살릴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반영한다.

나. 심사 방법 및 절차

- 심사방법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되 적절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에 참고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요 사항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하도록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수정된 경우 수정심사의뢰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 심사 및 결재 진행상황을 부처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 심사과정에서 법령정비사항을 발굴한 경우 법령정비과에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인 경우 내용 심사가 끝난 후 검토를 요청한다.
-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결재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소관부처·관계부처 의견 확인을 거쳐 반영한다.
- 결재과정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전 결재자에게 중요 사항을 보고한다.
- 결재과정에서 수정된 사항 중 중요 사항은 창의지식광장 등에 게재하여 공유한다.
- 총리령·부령·대통령훈령·총리훈령안은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로 심사안을 송부 한다.

다. 심사안 및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 법령별 작성 양식에 맞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 법률·대통령령안: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 ※ 총리령·부령·대통령훈령·총리훈령안: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 제안이유(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작성한다.
 - ※ 제안이유(제·개정이유) 중 법률 공포번호·공포일·시행일이 맞는지 확인

- “~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됨에 따라”
- “「○○○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3. 0. 0. 공포, 2014. 0. 0. 시행)되어 ~함에 따라” 등

※ 제안이유(제·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일관성 있게 작성

- “~하기 위하여(개정목적) ~하고(개정내용), ~하기 위하여 ~하며,”
- “~하여(개정내용) ~하게 하고(개정효과), ~하여 ~하게 하며,” 등

※ 주요내용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도입배경, 정책내용, 기대효과 서술(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하나로 작성 가능)

※ 제안이유(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쓰기

○ 참고사항 중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 입법예고 기간은 부처 홈페이지보다는 관보, 법제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목록 또는 정부입법추진포털 입법예고 목록에서 확인해야 정확
- ※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개정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 개정문은 원칙적으로 조 단위로 작성
- ※ 개정문은 최소 단위까지(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단/후단) 작성

○ 신규조문대비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수정한다.

- ※ 수작업보다는 심사편집기를 사용하여 신규조문대비표 자동 생성
- ※ 개정문과 신규조문대비표 일치 여부 확인
- ※ 현행 조문은 종이 법령집과 일치 여부 확인
- ※ 개정부분은 현행과 개정안의 밑줄 위치가 같은지 확인
- ※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 법령안에 오타자가 없는지 어문규정에 맞는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 조항호목 등 순서가 맞는지, 쪽번호가 맞는지, 페이지 누락 여부 등 확인

○ 심사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경과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작성한다.

- ※ 심사편집기에서 향후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경과보고서 분류기준 중 적절한 항목을 지정한 후 내용 작성

○ 결재안에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내용상 오류가 없는지 확인 후 결재를 상신한다.

- ※ 법령 종류에 따라 해당 결재표지 사용
- ※ 부칙검토표, 심사경과보고서, 접수안, 개정이유서, 해당 법령(모든 부칙 포함), 상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관보자료 첨부
- ※ 다른 법령 인용 시 인용 조문 첨부
- ※ 전부개정의 경우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신규조문비교표 별도 작성 첨부
- ※ 그 밖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4. 심사 후 단계

- 차관회의·국무회의 전에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타부처가 이견을 제시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후 소관부처를 통하여 원안대로 협의할 것을 유도하고, 타부처 이견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

차관회의 최종상정안	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기 전이어서 법안을 수정하여 접수할 수 있는 경우
차관회의 수정원안	차관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국무회의 수정안	국무회의 안건으로 접수되었으나 회의 개최 전에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	차관/국무회의에서 법안 수정 관련 논의를 거쳐 수정의결 후 법안을 수정하는 경우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결과를 확인한다.
-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 소관 부처를 통하여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관 부처를 지원한다.
- 하위법령안의 경우 언제 공포됐는지,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 경우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됐는지 확인한다.

부록 2

참고서식



[붙임 제1호서식] (본문 제20쪽 관련)

표준 입법예고 공고문안

○○부(처·청) 공고 제2020-000호

「◇◇◇◇법 시행령」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월 ○○일
○○부(처장·청장)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정(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제정(개정)이유 예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〇〇제도(정책)의 도입(안 제〇조)” 또는 “〇〇제도의 폐지(현행 제〇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 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〇〇제도(정책)의 도입(안 제〇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〇〇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의3 신설)

- 1)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건축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법」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하거나 무신고·무허가로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무신고·무허가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안 제115조의4 신설)

이행강제금의 감경 사유를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임대기간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원칙적인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장관(처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동 ○○부 □□□□과(담당관실)
- 전자우편 : ○○○○○○○○@korea.kr
- 팩스 : 000-000-0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 □□□□과(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법령명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 ○. ○○.

○○○○부

□□□□과

[붙임 제3호서식] (본문 제47쪽 관련)

안 심사보고서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결 재 자	
접 수 일	20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법제(심의)관	처 장	
심 사 보 고 일	20 . . .				
보존기간	영 구				
검 토 자	차 장				
	○○법제국장				
협 조 자	합의 법제(심의)관				
제 목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관서	국무위원 ○○○(□□□□장관)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심사경과보고: 별첨</p> <p style="text-align: center;">* 법령안 기본정보⁸¹⁾</p>					
특기사항	국정과제	하위법령 제때마련	기타 법제정비	지자체 협의·통지	대상 실시
	국회 계류 법안 대비 중복 여부	공동소관 법령 확인 결과		조례 정비 필요 여부	
일 정	시행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p style="font-size: small;">* 기타 법제정비 미정비(일부정비) 사유</p> <p style="font-size: small;">* 공동소관 법령 별도 개정 추진 사유</p>					

81) 「법령안 등 심사보고·제가·공포 관련 서식규정」 별지 제1호서식은 필요 시 결재표지에 법령안 기본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령안 기본정보 양식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1. 주요 내용

이 협정안은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
-----하려는 것임.

2. 주요 검토사항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바,

이 협정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
-----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임.

1) ----- 조약 해당 여부

2) ----- 조약 해당 여부

3. 검토의견

이 협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 조약,
-----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 사 경 과 보 고 서

20

법 령 명	○○○○○○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심의)관	◎ ◎ ◎	소관부처	○○○부
담 당 자		10년 경과 시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1. -----에 관한 규정(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가. 원안의 내용

○

나. 원안의 취지

○

○

다. 문제점

○

라. 검토의견 및 심사안

○

2. ---제도의 신설(원안: 제00조, 심사안: 제00조)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

※ 세부항목의 구성은 법제(심의)관실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

[붙임 제6호서식] (본문 제68쪽 관련)

제 회 차관회의 결과

- 일시 : 20 년 월 일(목) 10:30,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 의안 : 총 ○○건 - 법률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대통령령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일반 안 : 차관회의 원안의결 ○건
 - 부 처 보 고 : 차관회의 보고 ○건

의안 번호	제출 월 일	제출 기관	의안 명	차관 회의	비고
법 률 안 (○건)					
	20 . .	교육부	○○○○○○○○○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 통 령 령 안 (○건)					
	2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의결	
	"	환경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 반 안 건 (○건)					
	20 . .	기 획 재 정부	○○○○○○○○○○○○○○○안	원안 의결	

○ 부 처 보 고 : ○건

1. ○○○○○○○○○○○○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국 무 조 정 실)
-------------------------------	---------------

[붙임 제7호서식] (본문 제69쪽 관련)

제 회 국무회의 결과

- 일시 : 2000년 0월 00일(화) 10:00,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의안 : 총 00건
 - 법률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0건
 - 대통령령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0건
 - 일반 안 : 국무회의 원안의결 0건
 - 부처보고 : 국무회의 보고 0건

○ 차관회의 심의안건 : 0건

의안 번호	제출 월일	제출 기관	의안 명	국무 회의	비고
법률안 (0건)					
	20 . .	교육부	000000000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의결	
	"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00000000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안 (0건)					
	20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0000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안 의결	
	"	환경부	0000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안건 (0건)					
	20 . .	기획 재정부	00000000000000안	원안 의결	

○ 부 처 보 고 : 0건

1. 00000000000000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	---------

[붙임 제8호서식] (본문 제69쪽 관련)

원안수정내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원안수정내용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부 소관)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원안·최종상정안대비표

원 안	최 종 상 정 안

[붙임 제9호서식] (본문 제69쪽 관련)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차관회의 상정안 수정내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칩

원안·수정원안대비표

원안	수정안

[붙임 제10호서식] (본문 제70쪽 관련)

국무회의 수정안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국무회의 수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칩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붙임 제11호서식] (본문 제70쪽 관련)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제 호, ○○부 소관)

일 자	기 안 자		국 장	차 장	처 장
	사무관 (서기관)	법 제 관 (법제심의관)			
20 . . .					

차관(국무)회의 수정사항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 호, ○○부 소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다.

안 제○조제○항 중 “-----”을 “-----”으로 한다.

안 제○조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 3. 주요내용 가목 중 “-----”을 “-----”으로 한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는 참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기재)

※ 수정이유

--- 하려는 것임.

(수정이유를 간략하게 기재)

법제처 심사를 마침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원안 및 수정안의 3단 대비표를 작성하도록 함.

[붙임 제12호서식] (본문 제72쪽 관련)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국회의원
(경유)
제 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9. 10. 1.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합니다.

첨 부 : 100부 - 끝.

대



기안책임자	최인숙	보좌관/총괄과장	최영희	보좌관	정교준
법률정책국장	한영수	차장	이강래	보좌관	김형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한민국				
사무총장	이낙연		대통령	홍재인	
서울특별시 법제정책실장	90105		(010, 10, 10)		
부 30102	서울특별시청서	도봉5로 25, 4층 401호 (의정부)			
전화 044-200-4503	전화 044-200-4556		/ rsm020@korea.kr		/ 대외민원처

[붙임 제13호서식] (본문 제72쪽 관련)

대한민국정부

수신처: 내부결재

[결재]

제 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9. 11. 1. 제371회 국회(제1차)에서 이송되어 2019. 11. 5.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거부처장관	최한욱	법무부장관	최정호	안희정	장도연
법무부차관	김원수	차관	이광선	법무차관	김형민
국정부 장관	김기주				
국무총리	이승만		대통령	윤석열	
시행: 수장처: 법무정책실(공공-002)117			(2019.11.25)		
우: 3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5로 25, 4층 401호 (이전동)					
전화: 044-200-0000	팩스: 044-200-9000	E-mail: MOE@MOL.go.kr		/ (국무인감용)	

부록
2

참고서식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을

공포한다.

대통령 봉재인



2019년 11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붙임 제14호서식] (본문 제72쪽 관련)

대한민국정부

수신자 내부결재

(결의)

과 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19. 11. 5.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기획재정부	유민석	법무부	김민준	법제처	김민준
법제처	한영수	차장	이광현	법제처장	김민준
법제처	홍영석				
각부처	이영민	대행		홍영석	
시행, 법률지	법무부법제처-402120		(2019. 11. 25)		
우 3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5동 25-4층 401호 (이관동)				
전화 044-201-4000	팩스 044-200-4008				
					www.moleg.go.kr

부록
2

참고서식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

공포한다.

대통령봉재인



2019년 11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비상수상부장관 문성혁

[붙임 제15호서식] (본문 제79쪽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법(법률)안 철회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법(법률)안 철회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 년 월 일 국회에 제출한 --- 법(법률)안을 별지와 같은 이유로 철회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법(법률)안, 별첨

○○○법(법률)안 철회안

정부가 20 년 월 일 국회에 제출한 ○○○법(법률)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유

20 년 월 일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월 일 국회에 제출한 ○○○법(법률)안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법(법률)안에 그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철회하려는 것임.

[별 첨]

○○○법(법률)안

(기 제출한 법률안 내용)

[붙임 제16호서식] (본문 제83쪽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법 (법 률) 공 포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 (법제처 소관)
제출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회 국회(정기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개정이유

-----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도의 도입

-----.

나. -----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략)

[붙임 제17호서식] (본문 제83쪽 관련)

법률공포안 제안설명자료

- 제00회 국무회의(2015. 00. 00.) -
2015. 00. 00.

결 재	기안	법제정책 총괄과장	법제정책국장	차 장	처 장

협 조	○○○ 법제심의관	행정법제국장
	○○○ 법 제 관	
	○○○ 법제심의관	경제법제국장
	○○○ 법 제 관	
	○○○ 법 제 관	사회문화법제국장
	○○○ 법 제 관	

법 제 처

제0000호 ~ 제0000호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00건 안전요약서(법제처)

제안이유

○ 제000회 임시국회 의결 후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00건 공포

※ 제000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총 000건 중 000건은 공포 완료

공포대상 주요 법률안

구 분		법 률 안
정부제출 (00건)	대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수정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원안의결(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원발의(00건)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대안·수정의결 등 상세내용은 별첨 1의 목록과 별첨 2의 주요내용 참조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 「○○○○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도 도입
- ~~~~~ 근거 마련

재의요구 여부: 없음

[별첨 1]

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목록

★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법안이며, 음영은 하위법령 마련 필요 법안임.

의안번호	법률제명	관계부처	제안 구분	의결 구분	시행일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법률안 목록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소관부처의 순서로 하고, 소관부처의 법률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률제명 순서로 한다.

[별첨 2]

공포대상 법률안(00건)의 주요내용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중 -----를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결과정에서 -----를 허용하는 등의 의원발의 법률안 0건이 포함되어 대안 의결되었음.

의안 제0000호 :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붙임 제18호서식] (본문 제83쪽 관련)

수신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담당자 : 주무관)

(FAX : 0000-0000, TEL : 0000-0000, e-mail:)

○○○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

위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의결 내용을 확인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검토하였고 재의요구의견, 명백한 오탈자 또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개정 필요 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송부합니다.

법률안 소관부처 및 부서명 :

확 인

○ 담당자 : (Tel :)

○ 확인자

직위 : 성명 :

일 시 : 20 . . .

① 재의요구의견 유무		② 오·탈자 유무		③ 국회 의결 내용과의 상이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일치
④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시행일	대통령령 위임조문	총리령·부령 위임조문	향후 추진일정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기재

※ 이송된 법률안은 의결후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거친 것이므로 본회의 의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붙임 제19호서식] (본문 제84쪽, 제121쪽 관련)

0000법 일부개정법률 확인

일 자	서기관 (사무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법제국장
2017. . . .			

위 법률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함.

1. 제개정 법률안의 이상 유무

① 오탈자 등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②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조문 미정비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③ 인용법률 및 조항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④ 그 밖의 오류 유무

-

2.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확인 결과 이상 유무[의원발의법안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통보 사항을 확인하신 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의 검토자(실무자)확인자(법제관) 및 통보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 이상 유무(이상 없음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아래에 기재해 주십시오)

-

4.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제·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V”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 작성요망

- 대통령령, 부령 제·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5. 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필요 여부(필요 여부 “V”표시. 필요의 경우에는 관련 조문과 시행일도 기재해 주십시오) ★ 뒷면 첨부한 양식에 맞춰 작성요망

- 조례 제·개정 필요()/불필요()

- 관련 조문 및 해당 조문 시행일

※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선정기준

-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이 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 경우에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안으로 선정
- 다만,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되지 않더라도 ① 국정공백 우려가 없고 ② 집행상 문제가 없으며 ③ 하위법령 위임사항이 경미한 정비사항으로서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
 - ① **세법**: 공포후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과세연도 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법적 공백이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② **선택적 정비사항일 경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드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처의 판단에 맡겨놓은 경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
※ 실제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으로 선정
 - ③ **규율 내용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지만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상 규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
 - ④ **기관미설치, 예산미확보 관련 법령**: 기관, 시설 등의 설치,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마련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 기관, 시설 등이 물리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설치 또는 예산확보시까지만 하위법령을 마련하면 되는 경우
 - ⑤ **경미한 정비사항일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법률의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정비사항인 경우(단순한 용어 변경, 시험관련 법령에서 시험 시행에 부가적인 경미사항의 변경, 위원회 설치 규정에서 경미한 구성·운영 사항 등을 위임한 경우 등)
 - ⑥ **그 밖에 위 유형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의 주무부처, 소관 법제관실, 법제정책총괄과가 협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제때 마련 대상 제외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때 마련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경우(①·②)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해당 법제관실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는 문서를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

[붙임 제20호서식] (본문 제86쪽 관련)

관보정정사항

○ 대통령령 제0000호 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 . . .자 관보 제17198호]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p>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로 한정한다)을 말한다.</p>	<p>----- -----.</p> <p>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 ----- ----- -- 제3호에----- ----- -----.</p>	<p>관보 제0000호 제27 1쪽 오른쪽란 제12행</p>

[붙임 제21호서식] (본문 제87쪽 관련)

법률안 재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결 재 자
접 수 일	20	서기관 (또는 사무관, 주무관)	법제(심의)관	처 장
심 사 보 고 일	20			
보존기간	영 구			
검 토 자	차 장			
	○○법제국장			
협 조 자	합의 법제(심의)관			
제 목	법률안 재의요구안			
제안관서	국무위원 ○○○(○○○ 장관) 또는 국무총리 ○○○(○○○ 소관)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심사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심사경과보고: 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p>				

1. 의결주문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년 월 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타 : ○○○법률안, 별첨

○○○법률안 재의요구안

20 년 월 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

2. -----

3. 결 론

○ -----

○ ----- 점에서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신처: 국회의장
[붙임]
제 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의요구

2013년 1월 1일 제312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1월 11일 정부에 이송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별자외 같은 이유로 의의가 있어 2013년 1월 22일 국무회의의 승의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환부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의요구서 100부 권



기관명칭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토교통부	홍성훈	이정	부정부	02-970-1121	02-970-1121
국토교통부청과	24-353	이정			
국무총리					
시청	02-110-27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30호			
전화	02-110-2770	팩스	02-110-2775	02-110-2775	02-110-2775

[붙임 제23호서식] (본문 제92쪽)

총리령안심사확인증

NO. 20130370

제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의 총리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2013.08.23

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4호서식] (본문 제92쪽 관련)

부 령 안 심 사 확 인 증

NO. 20130428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위의 부령 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기에 이를 증명함.

2013.09.24

법 제 처 장



※ 공포를 위해 관보게재 의뢰 시 이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십시오.
공포 후에는 10일 내에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해당 법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붙임 제25호서식] (본문 제153쪽 및 제154쪽 관련)

주요토의과제

1. 토의과제

○-----의 타당성 여부 (안 제○조 관련)

※ 국무회의 토의사항을 주요 논점별로 나누어 정리

2. 원안의 내용

○-----

3. 관계부처 의견

○ ○ ○ 부 의견

○ 법제처 심사의견

※ 필요한 경우 법령안 또는 부처의견에 대한 법제심의관(법제관)의 심사의견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 제시 가능한 대안, 종전의 입법례, 판례, 관계법령 등 논의에 필요한 자료 제시

부록 3

참고법령

[참고 법령]

[법률]

정부조직법	38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39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396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401
국무회의 규정	427
차관회의 규정	430
관보규정	43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5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441
----------------------	-----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45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452

[총리훈령]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457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462

[법제처 훈령·예규]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	464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469

정부조직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

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외교부: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국장 및 이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해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장 대통령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일 : 2024. 1. 1.] 제17조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 11. 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신설 2014. 11. 19.>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제22조의2(국가보훈처)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② 국가보훈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24조 삭제 <2017. 7. 26.>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1., 2021. 7. 8.>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⑩ 통계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 11. 19.>]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 11. 19.>]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1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제목개정 2017. 7. 26.]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개정 2017. 7. 26.>

⑤ 특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7. 26.>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0. 8. 11.]

제39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6. 8.>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18.>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 7. 26.]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약칭: 법령공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전문) 헌법개정·법률·조약 및 대통령령의 공포문과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4조(헌법개정)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6조(조약)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7조(대통령령)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8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9조(총리령 등) ①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②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해당 부(部)의 장관이 서명한 후 그 장관인(長官印)을 찍는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0조(법령 번호) 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0. 16.>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0. 3. 12.]

제12조(공포일·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2.]

제14조 삭제 <2010. 3. 1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약칭: 법령정보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8호, 2020. 6. 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헌법(이하“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4. “법령정보 생산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체계
 3.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방법
 4. 그 밖에 체계적·효율적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

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1. 법제처장이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2.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정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법령정보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제공) 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現行) 헌법, 법령 및 조약

2. 헌법, 법령 및 조약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혁(沿革) 헌법, 법령 및 조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 활

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① 법제처장은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헌법 및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 및 그 추록(追錄)(이하“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보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라 대규모의 법령이 한꺼번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록할 사항의 범위와 수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행법령집 발행·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행자의 지정)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이하“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발행자로 지정된 자가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기준 등 발행자 지정 및 지정취

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수집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를 재분류·가공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법령정보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절차 등 수탁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법제처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5.]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0. 10. 5.]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 제출 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안의 연간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 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0. 5.]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수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0조의2(중·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17. 12. 29., 2021. 12. 16.>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 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13. 10. 10., 2017. 5. 8., 2019. 3. 12., 2021. 12. 1., 2021. 12. 1.6〉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전문개정 2010. 10. 5.]

[제목개정 2014. 11. 19.]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이하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중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1. 1. 5.〉]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1. 1. 5.>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19. 8. 13.>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1. 1. 5.>]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9.]

[제11조의3에서 이동 <2021. 1. 5.>]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률안의 국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상호 협조하여 정부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2021. 1. 5.>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10. 5.]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21. 1. 5.>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1. 1. 5.>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5. 8.>

[전문개정 2010. 10. 5.]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붙여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및 이유를 심사·검토하고, 부처 간 협조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4장 국민의 입법예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③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2021. 12. 1.>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2017. 5. 8.>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6.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0. 20., 2017. 5. 8.>

⑤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내용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제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0.〉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전문개정 2010. 10. 5.]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①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②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도 보내야 한다. 다만,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한 법령안과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낸 법령안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조약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조약안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이 심사 요청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절차 또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 또는 조약안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령안
3.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4. 정부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심사 요청된 법령안의 내용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5. 그 밖에 입법 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법령안 또는 조약안

⑤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전문개정 2010. 10. 5.]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 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 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0. 5.]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① 법제처장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대통령령을 공포하거나 총리령안·부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포 또는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7.]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 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21. 12. 1.>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의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비 대상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령의 일괄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

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⑥ 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과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⑦ 법제처장은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5.]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하 “제도개선사항”이라 한다) 중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법령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 법령과 그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③ 국무조정실 등 제도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발굴·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제처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1.>

④ 제3항에 따라 일괄정비를 요청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7.]

[제목개정 2021. 12. 1.]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1. 17.>

[본조신설 2018. 8. 28.]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개정하거나 검토·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기준·방법·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

제25조(훈령·예규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8. 28.]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본조신설 2018. 8. 28.]

제7장 법령해석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별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석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요청을 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
- ⑧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령해석기관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해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2021. 12. 1.>

⑪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 <신설 2019. 8. 13., 2021. 12. 1.>

1. 법령해석 요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

제2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기관에 소관 훈령·예규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② 훈령·예규등의 해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을 해석할 때 법령해석에 관한 정부 견해의 통일을 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조사·확인할 것
3.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법령해석기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할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령해석기관은 제26조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령해석 요청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하며,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청을 의뢰한 법령 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법령해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해석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2.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3. 법령해석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쟁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
4.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 그 이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해석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7.>

③ 위원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 지명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명위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1.>

1. 제2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법령해석사안에 대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와 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3. 제2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의 해석 요청 의뢰를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 사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법령해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해석을 하려는 경우
- ⑥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건축, 세제, 환경 및 노동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7.>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4(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 5. 8.]

[중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의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5에서 이동, 중전 제27조의6은 제27조의7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6에서 이동, 중전 제27조의7은 제27조의8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5.]

[제27조의7에서 이동, 중전 제27조의8은 제27조의9로 이동 <2017. 5. 8.>]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6. 9.]

[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 5. 8.>]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전문개정 2018. 8. 28.]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등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1. 1. 5.>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1. 19.]

[제목개정 2018. 8. 28.]

제29조의2(법제교육)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해석, 자치법규 입안·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자치입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③ 법제처장은 우수한 자치입법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1.>

1.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조언·권고·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관한 자문 등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3., 2021. 1. 5.>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를 지원,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4. 11. 19.]

제29조의4(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①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을 조정·협의를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이하 “자치입법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입법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제처차장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 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실장, 국장, 본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 나. 시, 군 및 자치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④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자치입법조정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조정협의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입법 또는 자치입법안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

[중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21. 12. 1.>]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19.]

[제29조의4에서 이동 <2021. 12. 1.>]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 5.〉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 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 법령안·대통령훈령안·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 훈령·예규등에 관한 입안·심사·해석
 6.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 법령정보(훈령·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 ②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5. 8., 2021. 1. 5.〉
-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8.〉
- ④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1. 1. 5.〉

[전문개정 2010. 10. 5.]

[제목개정 2017. 5. 8.]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5.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전문개정 2011.11.7.]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차관회의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장) ① 차관회의에 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의장은 차관회의의 사무를 총괄하며,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차관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법제처 차장은 법령안 및 조약안이 상정되는 차관회의에 배석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5조(회의 소집) 차관회의는 정례(定例)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의안의 처리) ①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

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7.]

제8조(대리 출석) ① 차관이 차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의안 배부) 행정안전부는 차관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차관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10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제11조(간사) ① 차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관보규정

[시행 2019. 9. 1] [대통령령 제30028호, 2019. 8. 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보의 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보 게재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국가인권위원회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상훈란
19. 기타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보급 및 전자관보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2.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3.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한정한다)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물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한국법제연구원

제3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소관 법령정보 현황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법령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②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등을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현황
2. 소관 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주기 및 방식에 관한 자료
3. 소관 법령정보의 국내외 기관과의 공유 현황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4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공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는 방법

②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령등
2.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령관련정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이하 “행정규칙”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
2.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

④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회) ①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법령정보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법령정보책임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제처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협조와 조정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 간사는 법제처에서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령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법령정보 생산기관이 관련된 법령정보 연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제6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말한다.

1. 현행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현행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4.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

②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이하 “연관법령정보”라 한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관법령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
2. 연관법령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 연관법령정보에 대한 주기적 정확성 검사
4. 연관법령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표준 연구 및 지정

③ 법제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정기적 구조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3.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4. 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제7조(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법제처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령정보 번역 및 보급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보(이하 “외국법령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번역
3.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령정보의 전자적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기술 연구 및 개발
5.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제협력
6.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전수
7. 법제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외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등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에 관한 교육·훈련
9. 그 밖에 법제처장이 정하는 법령정보·외국법령정보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사업

제8조(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현행법령집(이하 “현행법령집”이라 한다)을 보급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세종도서관

② 법제처장은 현행법령집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집의 추록(追錄)을 정기적으로 발간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집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거나 경제·사회·행정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령집을 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현행법령집을 제작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행자(이하 “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법제처장은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자로 지정된 자는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아 현행법령 집 가격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제처장은 발행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발행자 지정취소 등) ①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2. 제7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7조제6호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등의 국외 보급·전수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법제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위탁받을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탁업무의 내용을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 [총리령 제1754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14.]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2021. 12. 1.>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가.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14.]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전문개정 2010. 10. 14.]

[제목개정 2017. 5. 15.]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의 결과
 -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10. 10. 14.]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전문개정 2010. 10. 14.]

제3장의2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신설 2004. 2. 13.>

제8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회부 사실을 영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명백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특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본문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 2021. 1. 5.>

1. 헌법 위반 또는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상호 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2.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3.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4.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
5.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6. 해당 법률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삭제 <2021. 1. 5.>

④ 영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⑤ 법제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17.]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수렴

제9조 삭제 <2013. 1. 22.>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7. 5. 15., 2019. 6. 28., 2021. 12. 1.>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3조의3 삭제 <2012. 10. 4.>

제6장 법제의 정비·개선 등 <개정 2007. 2. 2.>

제14조(법제정비의 추진절차)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정비의 추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 정비 희망 법령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체적으로 법령정비 대상을 조사·발굴하고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법령정비계획과 자체적으로 발굴한 법령정비안 및 영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 의견을 취합하여 전체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 법령정비 실적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4.]

제15조(국민법제관) ① 법제처장은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정비·개선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국민법제관의 분야별 구성 및 운영, 국민법제관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4.]

제16조 삭제 <2012. 10. 4.>

제17조(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① 법제처장은 효율적인 법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관계 공무원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법제정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분석, 정비 대상 법령의 정비안 마련 및 법제정비실무협의회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본부·실·국의 주무과 또는 팀의 장 및 법무·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팀의 장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18조 삭제 <2010. 10. 14.>

제19조 삭제 <2018. 8. 29.>

제20조(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법제처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을 검토하는 경우 그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29.]

제7장 법령해석

제21조 삭제 <2005. 7. 1.>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2021. 12. 1.>

[전문개정 2010. 10. 14.]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5.>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전문개정 2010. 10. 14.]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 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7., 2018. 8. 29., 2019. 6. 28.>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4.]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 2000. 7. 21.] [대통령훈령 제90호, 2000. 7. 2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시 훈령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에 규정된 내용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제3조 (입안)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훈령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훈령안의 심사요청 등)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대통령이 재가)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령번호부여 및 관보게재 등) ①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훈령집의 발간·관리) 법제처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원본관리)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2. 5.] [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

2.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공고

3.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제4조(다른 훈령·예규등과의 관계) 이 훈령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훈령·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8. 11. 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2018. 11. 6.>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은 해당 훈령·예규등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1.2.5>

제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제6조의3 삭제 <2018. 11. 6.>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위법령과 다른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조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훈령·예규등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3년 이내로 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1.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존속기한을 개정하거나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재발령
 - 나. 재검토키한이 설정된 경우: 재검토키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개정

2.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되지 아니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2. 보직·승진·기록관리·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예규등

제8조(존속기한 등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까지) 법제처장에게 그 발령안을 송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의 설정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등을 긴급히 발령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안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과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훈령·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8. 11. 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경우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1.2.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예규등의 점검 등)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키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만료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의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현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수정된 법률안(이하 “적용대상법률안”이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공포 등 입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원발의법률안의 통보 등) ①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이 제안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법률안 소관부처(이하 “소관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등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부처(이하 “관련부처”라 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③ 소관부처의 장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리적 쟁점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 그 주요내용의 수정에 관한 논의가 있거나 수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예상되는 쟁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④ 소관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안이나 제3항에 따른 수정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장에게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과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1. 헌법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법률과의 상충이 명백한 경우
2.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출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
3. 조직의 신설·폐지 및 변경이 있거나 인원의 소요가 있는 경우

4. 규제를 신설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제4조(적용대상법률안의 검토 및 의견통보) ①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소관부처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1.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2.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3. 조세의 감면 여부
4.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5.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6.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7.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유무 여부

② 제1항제4호에서 “재정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7. 10.>

1. 국가의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
2. 기금의 신설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3. 부담금의 신설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 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증가

③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항제5호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그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정 2008. 7. 10.,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④ 법제처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부처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5조(관련부처의 장의 의견 청취 등) ① 소관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의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인원의 소요, 규제의 신설·강화,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 중 그 관장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제시된 의견을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제처와 관련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6조(의견의 사전조정 등) ①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장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소관부처의 장은 관련부처의 장과 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③ 제1항에 의한 협의에 불구하고 의견조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의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은 협의회의 의장에게 부처간 협의를 위한 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장도 협의회의 의장에게 협의회 소집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 또는 관련부처의 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라 한다)에 협의·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2017. 10. 25.〉

⑤ 협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등을 원인으로 부처간 의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⑥ 법제처장은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안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과 협의를 거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협의·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4., 2013. 4. 15., 2017. 10. 25.〉

⑦ 소관부처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부처의 의견에 반영하거나 반영여부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⑧ 법제처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처가 이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협의회에 이를 상정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7조(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

른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법률안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협의
2. 적용대상법률안에 조세감면의 필요,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그 밖에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대응방안 협의
3. 의원발의법률안의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소관부처 협의
4. 그 밖에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한 협의

[전문개정 2010. 6. 4.]

제8조(협의회의 소집) ①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집된 실무협의회에서도 부처간 의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6조제8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4.]

제9조(전담인력) 법제처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둔다.
<개정 2010. 6. 4.>

제10조(협의결과보고) 법제처장은 제6조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협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그 협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1조(소관부처의 장의 국회의견제출 등) ① 적용대상법률안의 소관부처의 장은 당해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거나 발언함으로써 당해 법률안에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3조에 의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기관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의 장 및 관련부처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입

법반영을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8.>

제13조(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용대상법률안의 입법 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4조(중앙행정기관평가 자료 활용) ① 국무총리는 적용대상법률안에 대한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 및 제11조제1항 등에 따른 소관부처 및 관련부처의 대응노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평가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0. 6. 4.>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처나 관련부처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6. 4.>

[제목개정 2010. 6. 4.]

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25.] [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무총리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 입안 시의 유의사항) 국무총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 시 훈령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제3조(입안)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 경우 해당 훈령안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4. 15.>

② 제1항에 따른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훈령안의 심사 요청 등)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훈령번호 부여 및 관보 게재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른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훈령안의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2014. 12. 31., 2017. 10. 25.>

② 국무조정실장은 비밀유지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 없이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8조(훈령집의 발간·관리)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9조(원본 관리)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10조(비밀 등의 훈령의 관리) ①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이나 그 밖의 보안업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에 따라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11조(훈령의 적기 정비) 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

[시행 2017. 7. 12.] [법제처예규 제72호, 2017. 7. 12., 타법개정.]

I. 목적

이 요강은 법제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기본사항

1. 합의심사에 대한 책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각각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구성원의 지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지위에서 법령안에 대한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갖는다.

3.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지정

심사할 법령안마다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을 두되,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법제처 직제」 또는 처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안건의 담당자로 결정된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된다.

4. 중점 심사 사항

법령안 합의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5. 합의결정 사항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

합의심사를 거쳐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정리한 안건에 대하여 주무 법제국장은 합의심사에서 결정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Ⅲ. 합의심사제의 운영

1. 합의심사제의 종별

합의심사제는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법제합의부와 합동심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법제합의부

가. 구성

- (1) 법제합의부는 법제국 단위로 법제국장,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으로 구성하며, 당해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 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은 배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합의부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해당 법제국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상정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한 직원은 법제합의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 (1)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시기는 해당 법제국장이 정한다.
- (2) 회의는 해당 법제국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법제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전

법제합의부는 전체 합동심사회의 상정대상 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주요 쟁점사항이 있다고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판단한 하위법령안을 심사한다.

라. 합동심사회에의 보고

법령심사의 전체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합의부의 회의결과 합의는 되었지만 여러 부처가 관여되거나 법제업무 수행상 모든 법제심의관실·법제관실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제국 소속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1인이 이를 전체 합동심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마.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1) 주심 법제심의관·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참석자에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각 법제국의 서무는 법제합의부의 회의운영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 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지난 분기 운영상황을 법제정책총괄과에 제출한다.

3. 합동심사회

가. 구성

- (1) 합동심사회는 기획조정관, 각 국장, 법제심의관·법제관과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안입안심사기준 담당 실무자, 법제국 소속 심사보조인력인 서기관·행정사무관 그 밖의 직원이 배석한다. 이 경우 합동심사회에 배석하는 직원도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 그 밖에 법령안 합동심사에 관심이 있는 법제처 직원은 합동심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나. 회의 개최 및 주재

- (1)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회의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조정관도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장 또는 차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상정대상 안건

합동심사회는 다음의 법령안을 심사한다.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는 법률안
-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특별히 주요한 쟁점사안이 있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법률안

- 법제국장 이상이 결재과정에서 전체 합동심사회에서 토론할 것을 지정한 법률안
- 각 법제국별 법제합의부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쟁점이 있는 법률안 및 하위 법령안
- 법리적 측면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전체 합동심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하위법령안

라. 지정토론자 제도

- (1) 합동심사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안전별로 법제국 소속 행정사무관 이상의 직원을 토론자로 지정한다.
- (2) 토론자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안전 소관 법제국 외의 법제국 직원을 대상으로 순번제로 지정·통보하고,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은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 합동심사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마. 법령정보 등의 정례적 소개 및 발표

(1) 목 적

합동심사회시에 매월 1회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신지식 등을 정례적으로 소개·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합동심사회가 법령안의 합의심사의 기능 뿐만 아니라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에 관한 학습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발표내용

- 분야별 법령체계나 개괄적인 내용
- 법령안입안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내용
-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를 거친 안건의 최종적인 심사결과
-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법령안 중 정보공유가 필요한 법령안의 주요내용
- 그 밖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정보 및 법제분야의 지식

(3) 발표자 선정

매월 각 법제국에서 순번제로 발표자를 추천하여 선정한다.

바. 회의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1) 주심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은 당해 법령안(심사의뢰된 주무부처의 원안 또는 수정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심사사항(주요심사사항에는 가급적 안전의 쟁점사항에 대한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의 선택가능한 심사대안이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을 기재한 서면을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2) 토론자로 지정된 자와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로 선정된 자는 토론자료 및 발표자료를 법제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이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3) 합동심사회의 서무는 법제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한다.

IV. 지식공유를 위한 조치사항

1. 주심 법제심의관·법제관, 지정토론자, 법령정보 등의 발표자 등은 상정안건, 주요 심사사항, 토론자료, 발표자료 등을 처내 내부 전자업무처리통신망에 마련된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2. 법제합의부 또는 합동심사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법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국과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내용인 회의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을 위 합동심사회의 관련 자료방에 게시하도록 한다.

법령심사에 따른 합의법제심의관·법제관 결정기준

[시행 2021. 6. 9.] [법제처예규 제8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령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안의 심사를 주관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합의하여야 하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하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① 합의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지정은 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차장·법제국장의 순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파견검사를 포함한다)의 합의를 받는다.

1.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 1의2. 국가공무원의 인사·보수 등에 관한 법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결산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4. 예산 및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5. 토지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법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 법령의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6. 벌칙에 관한 법령: 파견검사
7. 조약: 그 내용별로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법제업무편람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TEL : 044-200-6562

디자인·인쇄 디자인크레파스(02-2267-0663)